

국민이 함께하는 참여재판 이야기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당선작 수기집

차례

1. 배심원 이야기

- 들어가며 | 006
- 사법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현장을 지켜본 행운의 주인공이 되다 | 010
2016년 최우수상
- 법학도로서 경험한 국민참여재판... 그리고 나를 돌아보다 | 023
2016년 우수상
- 국민의 권리아자 의무, 배심원이여 영원하라 | 030
2016년 장려상
- 소년의 꿈을 40년 만에 이루게 해준 배심원 경험 | 038
2017년 대상
- 배심원이 된다는 것은 복권 당첨의 행운과 맞먹는 일! | 045
2017년 최우수상
- 일상 밖으로의 특별한 시간 - 나의 배심원 체험기 | 053
2017년 우수상
- 결국 사법 정의는 사람이 만든다 | 059
2017년 우수상
- 나는 이제 국민참여재판 알리미로 다시 태어났다~~! | 066
2017년 우수상
- 평범한 공대생이 난생 처음 겪었던 법정의 기억 | 071
2017년 우수상
- 평생 겪어보기 힘든 자부심과 자랑스러운 시간을 만나다 | 079
2018년 대상
- 배심원을 통해 깨닫게 된 아버지로서의 역할 | 092
2018년 최우수상
-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꽃 피울 국민참여재판 | 098
2018년 우수상
-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 104
2018년 장려상
- 국민참여재판 소개 | 109

2. 예비배심원, 그림자배심원, 배심원후보자 이야기

- 잃어버린 꿈을 찾다
2016년 우수상 | 112
- 재판은 끝났지만, 참여는 끝나지 않았다
2016년 장려상 | 120
- 국민참여재판, 국민과 사법의 연결고리
2018년 우수상 | 128
- 세상이 민주적으로 변했음을 명확히 느끼고 온 하루
2018년 우수상 | 136
- 멀기만 했던 법원이 성큼 내 곁으로 다가왔던 국민참여재판
2018년 장려상 | 141
- 국민참여재판의 '암행어사', '그림자배심원' 출도야!
2018년 장려상 | 147
- 국민참여재판 참여방법 | 153

3. 변호인, 방청객 이야기

- 나의 첫 국민참여재판, 17시간의 기록
2016년 우수상 | 156
- 배심원, 너의 목소리가 들려
2016년 우수상 | 166
- 이제 시작이지만 희망이 가득한 국민참여재판
2016년 우수상 | 175
-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신뢰를 갖게 해준 배심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7년 최우수상 | 188
- 국적과 편견을 넘은 국민참여재판
2017년 우수상 | 193
- 사법 정의가 준 용기
2018년 최우수상 | 203
- 국민 참여로 사법의 신뢰를 높이는 국민참여재판
2018년 우수상 | 209
-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바라며 보내는 제언
2018년 우수상 | 216
- 국민참여재판 진행과정 | 221

4. 국민참여재판 Q&A

- 배심원을 위한 Q&A | 222
- 피고인을 위한 Q&A | 224
- 자주 등장하는 법률용어 | 225



들어가며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에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배심원, 변호인, 피고인은 물론 그림자배심원과 방청객까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생생한 체험 내용과 특별한 경험, 소감 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의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 중 특별히 국민들에게 소개할 만한 의미가 있는 작품 27편을 선별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기집에 실린 27편의 글에는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참여하느라 불편했던 마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된 것이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으로 느껴질 만큼 기뻐했던 마음, 더 나은 국민참여재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각계각층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본 수기집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수기집 발간을 위해 여러모로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과 수상작 활용에 동의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배심원 이야기

사법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현장을 지켜본 행운의 주인공이 되다

2016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최우수상



법원의 서류 봉투가 배달되었다. 낫설지 않았다. 거래은행들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으로 밥상처럼 받아들였던 법원 봉투. 남편의 사업 부도가 원인이었다.

“5년도 더 지난 일이라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또 무슨 일이지?”

자세히 보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어쨌거나 지은 죄가 없었기에 편한 마음으로 개봉하여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배심원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호기심도 생겼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민참여재판의 심리절차와 피고인의

유·무죄 등 판단과정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니. 특히 배심원으로 선정된 자는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절한 형을 토의한다고 쓰여 있었다. 한마디로 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이었다. 특별한 지식이나 학력도 갖추지 못한 내가 어떻게 배심원이 되었는지 궁금하였지만 이내 의문이 풀렸다.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은 자격을 제한한다는 것. 나는 직장을 다니는 입장이라 잠시 고민을 했지만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직장에서도 배심원으로 출석하는 것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라는 내용은 반가웠다. 나는 곧 참여 의사를 묻는 서류에 답을 작성해 동봉된 봉투에 넣어 보냈다. 출석기일이 한 달 넘게 남아있어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가까스로 배심원석에 앉다

묘하게 설레던 날이 드디어 왔다. 회사에서 특별휴가를 받았고 그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 인터넷을 통해 법원의 위치를 확인하니 대중교통으로 집에서 한 시간이면 닿는 거리였다. 출석 시간이 9시 30분으로 되어 있었지만, 법원에 8시 45분까지 도착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며칠 전에 받았다. 평소 출근하는 시간보다 준비를 더 서둘러 법원에 도착하자 먼저 온 배심원 후보자가 줄을 서 번호표를 받아 가슴에 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 역시 안내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법정으로 들어가 받은 번호표를 잘 보이도록 달았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엄숙했다. 가슴에 번호표를 단, 오늘 출석한 배심원후보자 30여 명은 긴장감에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할 정도였다. 나 또한 법정이 처음은 아니었고 재판을 지켜본 경험도 있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선 동영상을 10여 분간 시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이며 배심원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시청이 끝나자 법원직원, 검사와 변호인 그리고 재판부가 입장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가 있었다. 경직된 분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듯했다. 이윽고 네모난 통 속에서 번호표를 무작위로 뽑았다. 열 명의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이었다. 오늘 출석한 서른 명의 배심원후보자 중 배심원은 열 명이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 열 명에서 제외되었다. ‘차라리 잘됐다, 얼른 집에 가야지...’ 그것도 잠깐,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질문을 통해 배심원후보자 중에서 부적격자를 골라내기 시작했다. 부적격 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도 몸이 안 좋아서, 어머니가 입원하신 병원을 지켜야 해서, 다른 급한 사정이 있어서 등 불참 사유들을 인정받아 세 명은 돌아갔다. 새로운 공으로 번호를 뽑아 같은 과정을 거치기를 세 번. 그 세 번째에 내 가슴에 붙은 번호가 호출되었다. 뒷자리에 앉아 구경만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심장이 방망이질을 시작했다. 방금 전에 불러 나가 검사 측, 변호인 측 질문에 열심히 대답하다 탈락한 중년여성이 흥당무가 되어 나왔다. 나는 그쪽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긴장했다. 그럴수록 최대한 느긋한 걸음으로 걸어갔다. 같은 질문들이 반복되기도 했다. 다행히 변호인의 질문은 간략하고 알아듣기 좋았다. 그들은 간단명료한 대답을 원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긴 답변을 늘어놓았고 조금이라도 아는 척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대부분의 배심원후보자들이 그 자리에 나오면서 다짐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어렵게 시간을 냈으니 헛걸음은 할 수 없다는 다짐 말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법정에서 반영되게 하려면 자기의 분명한 주관이나 법률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선입견이 작용했을 것이다. 후보자들의 입에서는, 얼마 전 일어났던 살인사건의 판결이 적절치 않다거나 유사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형량이 미흡하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나는 아주 간단하

게 대답을 했다. 어설픈 지식을 자랑해봐야 속만 들여다보이리라. 나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겠지. 탈락자 변호를 부를 판사의 입을 유심히 보았다. 그러나 나는 불리지 않았고,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지정적으로 이동했다. 보폭이 넓어졌다. 가슴에 단 번호표가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졌다. 좀처럼 느껴보지 못한 승리감이었다. 배심원으로 결정되기 전과는 아주 다른 마음이었다. 대한민국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 자격이 있다는 말은 ‘지식이나 학벌과는 무관하다’라는 말로 다가왔다.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 많이 배우지 못한 내겐 뿌듯한 순간이었다. 나는 박사학위라도 받은 양 들떴다. 배심원은 민심, 바로 그것을 반영하는 사람이었다.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는 화장실도 내부로 연결된 것만을 이용하라고 한다.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철저한 비밀과 보안을 지켜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졌다.

잠시의 휴식이 지나가고,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성명을 부르고 사건관계인의 출석부터 확인했다. 배심원과 대표 배심원의 선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위한 재판장의 설명이 이어졌고,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검사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 또는 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의견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설명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다. 다행히 내가 못 알아들을 부분은 거의 없었다.

극복하고 나면,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에 나쁜 건 없다던가. 우리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난 뒤로 민사재판에 어지간히도 시달렸다. 그 와중에 나는 남편을 따라 억지 춘향식으로 법에 관한 기초적인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그 힘들었던 일이 까막눈과 귀를 뚫어줘서 이런 데서 도움이 되다니.’

서글픈 기억들이 잠시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묘한 기분이었다. 여기서 선정된 열 명 중 아

홉 명만이 배심원이고 한 사람은 예비배심원이라고 했다. 그 한 명도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데, 누구인지는 비밀에 부쳐졌다. 그 자신도 모르는 예비배심원은 나중에 평의, 판결, 양형에 관한 토의에서 의결권이 없었다. 그렇다면 예비배심원은 왜 두는가?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중 누군가에게 갑자기 직무를 수행 못 할 사정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로 선정된 사람이다. 예비배심원은 평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다른 배심원과 다를 게 없으나 평의와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참여가 제한되었다. 그러므로 배심원으로 모든 재판과정을 집중하고 토의에 최선을 다하면 예비배심원이 들어올 일이 없는 것이다. 웃음 나오는 일이지만 아무도 웃을 수 없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바로 그 예비배심원일 수도 있으므로.

삶을 다시 살게 하는 판결을 내리기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오늘의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사건이었다. 특히 우리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존속살인 사건이라서 기억에 남았다. 경찰은 데려온 피고인의 포승과 수갑을 법정 뒤쪽에서 풀어주었다. 죄수복을 입은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법정에 들어왔다. 그는 앉아있는 내내 한 번도 앞을 바라보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그는 175cm 가량의 키에 건장한 청년이었다. 하얀 피부에 곱상하게 생긴 게 평범한 가정의 귀한 아들로만 보였다. 배심원석에서는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고 어떤 배심원들은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동정심인지도 몰랐다. 세상에 태어나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사랑받고 사랑할 권리조차 포기한 그가 서른을 넘긴 나이에 죄를 짓고 법정에 섰기에 느낀 측은함 같은 것일 테다. 그는 순한 얼굴을 가졌다.

검사의 최초 진술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짝 돋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었다. 자신의 친부를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키가 아담한 여검사의 퐁퐁하고 차분한 목소리에

마음이 더욱 숙연해졌다. 술에 취해 귀가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취지도 안 하고 놓고 있다며 욕을 했고, 병든 어머니에게 바가지로 물을 끼얹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머리를 때리자 아들이 순간적인 분노로 과도를 들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칼에 일곱 번이나 찔려 사망에 이르게 된 반인륜적 사건이었다.

다음으로 국선변호인 차례. 그는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변호인은 정당방위를 언급했다. 아버지를 그대로 놓아두었다면 어머니가 무방비로 거친 폭력을 당했을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피고인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상참작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었다. 본인이 직접 자수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어머니를 통해 112에 신고하게 했으며,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게 범행을 자백했음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국선변호인에 대한 선입견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릴 적 기억이 닿을 수 있는 순간부터 어머니를 때리는 악마로 각인되었다. 늘 어머니가 불쌍하고 어머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온 힘을 다 쏟아내고 있었다. 국선변호인은 돈 없고 힘없는 자들의 변호를 무료로 맡아주는, 그리하여 그저 형식적인 변호나 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의 죄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남은 삶을 충실히 살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변호를 맡아준 그에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증인으로 나온 꺾마른 모습에 핏기조차 없는, 피해자의 아내이자 피고인의 어머니. 그녀 또한 기구한 운명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아들 손에 보내고 그 아들을 위해 자신의 온몸을 찢듯 살아온 삶을 어눌하게 풀어놓고 있었다. 고난의 삶을 되뇌며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그 작아진 모습이 삶 전체의 왜소함으로 비쳤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자라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 때의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가 형과 본인에게 자전거를 사주셨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고 아버지가 좋았었다고 대답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제 자식 귀한 줄은 알거든. 자기 자식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그때의 아버지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도 그때 이후로는 행복한 시간이 더 없었을까?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의 직장동료가 증언했다. 예상 밖이었다. 밖에서는 다정한 형님이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었던단다. 동료들의 생일까지도 잊지 않고 챙겨줄 만큼 다정다감했으므로 그는 피해자에게 그런 가정사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다. 술도 과하게 마시지 않았고 늘 경우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여기까지 들은 나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그렇다면 그의 이중성은 어디서 나온 걸까.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며 누구의 책임인가? 군대를 제대하고도 이렇다 할 직장 없이 빈둥거리는 아들이 택배 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아버지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었다. 간경화로 일을 못 하는 아내의 병원비는 가장에게 큰 짐이었을 터. 아버지에게도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의 행동에서도 반지하 주택의 가난 속에서 처자식을 건사하는 고단함을 엿볼 수 있었다. 가장들은 매일 일을 하고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적을 잊고 사는 것 같다. 일하며 얻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셨다면 스트레스는 무엇을 위해 날려 보냈던가. 그건 자신의 행복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야 했다. 수단을 위해 목적을 파괴하고 살았으니 그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가정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사랑 안에서 희생도 의미 있는 것인데, 힘들게 일하는 가장에게 가족들이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대상으로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 가족일 수 없다. 그런 가정이 무슨 소용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니 그녀는 긴 한숨부터 쉬었다. 하소연이 길게 이어졌다. 시집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남편을 바로잡아 잘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그걸 잘 못하여 아들까지도 불행하게 했고 본인도 슬픈 인생을 산 것 같다고 했다. 가족의 불행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말썽 한번 안 부리고 착하게 자랐는데 못난 어미를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으니 어미로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요, 아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다. 그저 죄송하고 앞으로 어머니를 잘 모셔서 그동안 힘들고 아팠던 세월을 보상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검사와 변호인의 교차 진술과 증인들의 진술이 끝나니 두 시가 훌쩍 넘었다. 점심시간이 주어졌다. 배에서 울려대는 꼬르륵 소리가 배심원석의 고요함을 깼다. 법원직원의 안내에 따라 지하까지 내려가니 식당이었다. 된장국에, 도토리묵, 마늘종 무침과 김자반, 샐러드, 잡채 등으로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배심원 자리에 앉았을 때 법원에서 먹는 밥 한 그릇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했다. 숟가락을 놓기 바쁘게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배심원만의 평의·평결이 진행되었다.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가리는 토의. 만장일치로 유죄가 굳어지고 있었다. 자식의 입장에서 마음은 헤아려지나 자식은 아버지에게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다. 문득 나는 강원도 산골 마을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거긴 결혼하기 전까지 살던 고향이다.

지금 내 나이 쉰셋. 사십여 년 전 내 이웃에 동네 이장을 19년이나 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동네의 대소사는 물론 온갖 굿은일을 도맡아 했다. 어린아이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사람 좋기로 소문났던 그도 술만 취하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제집 때문에 들어설 때부터

작은 꼬투리라도 트집을 잡았다. 부인에게 손찌검하고 곤히 자던 자식들까지 깨워 밖으로 내 쫓곤 했다. 한겨울에 그들이 신발도 못 신고 우리 집으로 도망을 오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그때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떠나 대도시로 돈 벌러 나가는 것으로 아버지의 구타와 집안의 분란을 종식했다. 그 아버지에게 감히 대들거나 비난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 자녀들의 마음에도 원망과 울분이 가득했을 터, 매 맞는 어머니가 불쌍하고 본인들은 그런 가정을 갖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객지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고향에 돌아와 땅을 사는 것도 보았다. 나는 지금의 사건과 비교를 해본다.

군대까지 마친 아들이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오라는 곳이 없어 취업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무위도식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지금 이 나라에는 일자리가 없어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들 아우성이다. 그러나 막상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그곳들은 구인난으로 몸살을 앓는다. 나는 자동차 부품 하청 공장을 운영한 남편을 옆에서 지켜봐서 누구보다 그 사정을 잘 안다. 공장 운영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이 너무 많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고 모두가 편하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니, 하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온다. 회사는 말도 안 통하는 그들과 어렵게 소통하며 숙식까지 제공해준다.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공장 운영을 하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군대 가기 전에 PC방이나 백화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한 뒤로는 구직활동을 열심히 했음에도 온전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당시에는 구직활동도 포기한 상태라고도 했다. 아버지로서는 온종일 분주하게 일하고 돌아온 집에 서른이 넘는 아들이 빈둥거리고 있으니 속에서 불길이 솟아오르지 않았을까? 그러나 반드시 아버지가 옳았다거나 자식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오늘날 학력 과잉의 시대

에 이 나라의 청년들이 전공도 다르고 희망마저 쪼그라드는 일자리를 오래 지켜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몇 년만 잘 버티면 서로 다른 환율 덕에 한국에서 번 돈으로 고향에 집도 사고 땅도 살 수 있는 개발도상국 출신 청년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런데도 사지가 멀쩡한 젊은 아들이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내고, 택배 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늙은 아버지에게 덤벼들 핑계일 수는 없는 일이다.

배심원의 의견이 모였다. 중론에 각을 세우거나 특별한 소수의견을 제시하는 이는 없었다.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음이 사실이고 그것은 잘못되었고 유죄라는 것이었다. 쫓값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 그가 새로운 결심으로 세상에 다시 나올 때는 쉽고 편한 일만 찾지 말기를 바랐다. 힘들지만 정직한 땀을 흘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마다치 않기를. 나는 그가 가련한 어머니를 잘 섬겨 가정다운 가정을 이루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다. 양형에 관한 토의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존속살인의 경우 최소 7년부터 30년까지 구형이 된다고 들었다. 어떤 이는 변호인의 진술을 토대로 감형을 주장했다.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잦은 구타와 병든 어머니를 지키려 했던 아들의 딱한 심정을 참작해서 그럴 것이다. 그것에서 감형이 주어진다면 3년 6월부터 8년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검사의 구형은 12년이었다. 중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나는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감형 쪽 의견으로 마음을 바꾸었다.

5년. 다른 이들도 5년, 6년, 7년. 다수결로 5년이 많았다. 얼핏 보면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죽게 했는데 고작 5년, 6년, 7년을 거론할 수가 있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그에게 더 무거운 쫓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존속살인의 경우 7년에서 30년인 것이 감형된다면 3년 6월에서 8년이라니 내가 생각했던 정도에서 좀 낮은 편이었다. 변호인의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내 마음도 움직였

다. 죄는 지었지만, 인간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배심원들 사이에 살아 있는 자의 인생 또한 소중한 것이므로 그의 입장도 고려하자는 말이 나왔다. 그에게 앞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가 두 아버지를 둔 건 아니어서 재범의 우려도 없을 성 싶었다. 취중에 어머니를 때리는 또 다른 아버지가 나타날 확률이 있을까. 살인행위에 습관성이 붙는다면 또 모르겠으나 엄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의 젊음이 모두 사그라지기 전에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조금은 열어줘도 좋으리라.

여기서 잠깐. 예비배심원. 검정 양복을 차려입고 구레나룻을 멋지게 기른, 나를 재판과정에 집중하며 열심히 메모도 하던 중년 신사. 배심원 대표감으로도 충분했을 그는 허탈해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나며 불멘소리도 했다. 평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토의에서 차례로 의견들을 내는 데 그를 건너뛰었다. 입이 있으나 말할 수 없는 자리. 웃음이 나왔다. 예비배심원의 불평으로 인해 우리는 종일 굳어있던 얼굴을 스트레칭이라도 하듯 움직여 보았다. 배심원의 의견을 적은 평결서가 재판장에게 전달되었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잠시의 휴식시간, 경직되었던 분위기를 법원직원들이 풀어줬다. 법원에서는 관내의 만 20세 이상, 십이만 명의 인구 중에서 무작위로 백 스무 명을 골라 통지서를 보냈다고 했다. 서른 명이 오늘 출석했고 그중 열 명이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하였으니 배심원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선택된 중요한 자리에서 나의 의견을 반영시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뿌듯했다. 함께 있던 젊은 배심원이 “우리 오늘 돌아가는 길에 복권 한 장씩 샅시다.” 했다.

잠시 후 선고가 진행되었다. 예측한 대로 유죄였다.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이전에 전과가 없고 우발적이며 오랫동안 학대받은 어머니를 지키고자 한 아들의 의도가 정상참

작 된 듯하다. 징역 5년. 어머니도 울고, 피고인도 울었다. 배심원도 마음으로 울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사라질 수는 없었다. 죄보다 형량이 적었던 건 지금까지 심적 고통이 심했고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였다. 게다가 현재 아픈 몸으로 살아야 할 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었다. 평결에는 내려진 벌 달게 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모두의 바람이 담겨 있으리라. 배심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이므로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우리 배심원 열 명은 20대의 젊은 청년부터 60대의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과 남녀비율로 구성되었다. 어쩌면 검사와 변호인이 선정할 때 성비까지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다. ‘함께 하는 재판, 참여하는 정의’라는 국민참여재판의 구호가 더욱더 가깝게 다가왔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배심원에 대한 재판장의 말씀이 있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제도로 인해 변화가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소감을 들어주었다. 그가 감사의 말을 할 때 우울했던 긴장이 풀렸다. 하루도 안 빠지던 직장을 뒤로하고 온종일 배심원의 임무에 집중했던 피로가 스르르 풀어지고 있었다.

드라마에 출연한 듯 특별하기만 했던 배심원 경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서 나는 솔직히 무지했었다. TV 드라마에 나오는 소송에서 배심원의 의견으로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모습을 보는 정도였던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서보다니... 중범죄 사건을 두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모은 결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판결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법률적 판단에 민심이 반영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사법민주주의가 실천되는 현장에서 내가 증인이 되지 않았는가 말이다. 국민 개개인의 평등권을 실천하려는 노력에 감동했다.

오전에 돌려보낸 이들에게는 6만 원이,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던 우리에게는 기본 12만 원의 일당이 지급된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법원의 로고가 새겨진 감사장이 들어있는 액자를 기념품으로 받았다. 감사장을 오래 보관하며 특별한 날을 회상할 것 같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복권 한 장을 샀다. 배심원이 되기까지 나는 희박한 확률의 주인공이었다. 그 행운을 슬그머니 복권으로 재확인하고 싶었다.

법학도로서 경험한 국민참여재판... 그리고 나를 돌아보다

2016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우수상



늦깎이 법학도에게 온 선정기일 통지서

어느 날 집으로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법원으로부터 온 “국민참여재판 선정기일 통지서”.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우편물을 전달하며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했다.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설마 내가?’ 하는 마음으로 호기심을 억누르며 우편물을 열어보았다. “귀하께서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되셨으므로 아래의 기일·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인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간단한 내용과 함께 몇 장의 질문표가 들어 있었다.

내가 배심원후보자가 되었다는 내용에 설레면서도 제일 먼저 생긴 궁금증은 “내가 어떻게 해서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되었을까?” 하는 것이었다. 안내문에는 후보자는 관할법원 배심원 후보예정자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고 쓰여 있었다.

장마철에 접어들어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 아침 9시쯤 법원에 도착했는데 법정 안에는 40명에 가까운 후보자들이 앉아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배심원후보자가 와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중에서 9명의 배심원단에 선정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한 추첨이 시작되었고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공평한 평결을 위해 추첨된 배심원후보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서 사건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선입관을 보이거나 자신들의 변론에 불리할 것 같은 성향을 보이는 배심원은 기피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방청석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후보자가 기피 대상이 될지 예측하다 보니 배심원 선정과정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

기피신청, 재추첨의 과정이 3차례 가까이 되면서 마음속 한편으로 내가 뽑혔으면 하는 바람이 점점 강해졌다. 국민참여재판에 직접 참여하며 살면서 겪어보기 힘든 형사재판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고, 책으로만 공부했던 형법의 적용과 형사소송절차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꼭 배심원으로 선정되라며 응원해준 우리 딸에게 아빠가 오늘 배심원으로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해주고 싶었다.

이러한 바람이 통했을까. 3번째 추첨에서 나의 번호가 호명되었다.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잘해야지 하고 생각하니 나름대로 긴장도 되었다. 다행히 검사 측이나 변호인 측으로부터 기피신청이 없어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데 마지막에 재판장이 혹시 대학에서 법학

을 전공했거나 스스로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당당하게 손을 들어 그렇다고 하자 주변의 배심원과 방청석에 있는 사람의 시선이 주목되었다. 재판장은 나에게 자신의 법학 지식을 주장하지 않고 재판장의 지시를 따르며 배심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한 뒤 배심원 선정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률해석과 법이론 적용의 전문가인 법관들의 판단만이 아닌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 해당 사건에 대해 내리는 상식적인 판단을 함께 듣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당황스러운 재판의 시작과 나를 돌아보게 하는 증인신문

배심원 선정절차를 마치자 재판장은 잠시 후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퇴정했다. 순간 나는 당황했다. 배심원 선정기일이라는 사실만 알고 왔을 뿐 배심원 선정기일에 공판기일까지 진행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공판참여로 인해 배심원으로 선정된 기쁨은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회사 회의에 대한 걱정으로 대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오늘 회의 참여가 어렵게 되었다고 팀장에게 통보했더니 예상했던 반응을 보였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잘 모르는 팀장은 재판 때문에 회사 일을 못 하게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난리를 쳐댔다. 하지만 난 단호하게 대답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그리고 누구든지 배심원인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다행히 팀장은 불이익 취급의 금지라는 말에 꼬리를 내리고 회의를 연기시켰다는 문자메시지를 잠시 후에 보내주었다.

판사의 모두설명과 검사의 모두진술을 통해서 사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내가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었다. 쟁점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하는 피

고인의 우발적 살인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가'였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형의 면제나 감경을 주장했다. 나는 학교에서 공부했던 적법 절차의 원리와 실제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절차의 핵심원리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 노력하며 마치 내가 판사가 된 것처럼 검사와 변호인의 진술에 집중하고 또 집중했다.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양측의 증인들이 나와 증언을 했는데 사건의 원인이 부부관계의 불화이다 보니 질문과 답변의 초점이 부부간의 사생활에 맞추어졌다. 증인신문을 통해서 개인의 사생활과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안쓰러운 장면은 9살짜리 피고인의 딸에 대한 신문과정이었다. 증인이 어린아이인 점을 고려하여 신문은 신뢰 관계자인 할머니의 동석 하에 영상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자신의 엄마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답변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씩씩한 마음을 달래기가 어려웠다. 증인신문과정을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당방위 여부 즉, 유·무죄의 여부를 떠나 범죄를 저지르는 건 피해자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피고인의 삶도 돌이킬 수 없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만약 내가 피고인이었다면 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했을까'하는 생각이 스쳐 갔다. 법정을 나가면 이제라도 주변 사람에게 좀 더 선한 사람, 바른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하며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많은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다 보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어 있었다. 저녁식사를 위해 휴정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몇몇 배심원은 당혹스러워하며 약속을 연기하는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나 또한 공판이 이렇게 장시간 진행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대법원에서 지원 나온 직원들이 도시락을 챙겨주며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오늘 모든

공판절차를 끝내야 하는 사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배심원 모두 불평보다는 웃음으로 상황을 이해해 주었다. 심지어 국민참여재판 때마다 지원 나와 늦게까지 배심원과 함께 있어야 하는 법원직원들을 격려해 주는 배심원도 있었다. 평의실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먹고 있자니 법원에서 야근 아닌 야근을 하는 상황에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모두가 피곤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무죄 평결보다 어려운 양형 토의

길고 긴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그리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마친 후 드디어 배심원은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위해 평의실로 들어갔다. 평결과 토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심원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데 모두가 대표 역할을 고사하는 바람에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배심원 중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분께서 아무래도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대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나를 추대했고 모두가 동의하며 나를 대표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되었다. 워낙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밤 10시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내가 신속히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대표 역할을 수락(?)했다.

증거조사를 통해서 유죄라는 심증을 굳히게 된 나의 견해를 밝히고 나머지 8명의 의견을 순서대로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다행히 모두가 만장일치로 유죄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평결이 끝나고 양형에 관해 토론하기 전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이 들어와서 양형기준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평소에 권위적인 사람으로만 여겨졌던 판사들이 친절하게 질문에 답변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더운 여름 땀을 흘리며 판사들이 늦게까지 고생하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막말 파문 등으로 판사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부정적 감정을 사라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양형 토의에 들어가자 지금까지 오랜 공판절차에

피곤해하던 배심원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양형은 유·무죄 평결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배심원은 모두 양형기준에서 제시하는 형량과 이러한 형량으로 인해 피고인이 겪게 될 앞으로의 인생, 그리고 피고인의 어린 딸에 대한 인간적 연민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갈등하고 고민했다.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들을 때 종종 형량이 과소하다고 여길 때가 있지만, 양형 과정을 통해 형량은 우리가 생각하듯 법관의 재량으로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14시간의 재판을 마치고 부듯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평결과 양형 토의 결과를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나서 평결 결과 고지와 판결선고가 있었다. 다행히 판사들의 판결은 배심원이 내린 평결과 형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배심원의 평결을 법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에 마치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어낸 것 같아 부듯한 마음이 들었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재판장의 안내가 있었다. 감사패를 받고 법정을 나서며 시계를 보니 밤 11시... 법원 청사를 나와서야 비로소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재판 내내 법정과 평의실 사이만 왔다 갔다 했으니 14시간 만에 보는 하늘이었다. 비가 갠 여름밤의 날씨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그만큼 최선을 다해 내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해주는 듯한 기분 좋은 피로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내 마음이 지식과 보람과 교훈으로 채워져 있는 기분이 들었다.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야말로 형사소송절차의 기본 이념인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하니 딸아이가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법원에서 받아온 감사패를 보여주니 나보다 더 자랑스러워했다. 딸아이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판결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빠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마치 내가 재판장이었던 듯 눈을 반짝이며 하나하나 물어보았다. 그날 이후부터 우리 딸이 엄마랑 아옹다옹하면서 자신은 무죄라는 등 정당방위였다는 등 말하는 것을 볼 때면 웃음이 나오면서 대견하기도 하다. 하긴 나 또한 주요 강력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보도될 때에 직장 동료들이 형량의 많고 적음에 대해 비판할 때면 법원에서 형량을 정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곤 한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가지만 내 책상 한편에 자리 잡은 감사패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해 주는 경험이었다. 작은 감사패는 무엇보다도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고 바르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되새기게 해주며 자신을 성찰하고 성숙한 개인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매일매일 나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다.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배심원이여 영원하라

2016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장려상



법정은 나에게 멀기만 한 곳이었다. 법원과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수없이 봤지만 직접 법정에서 겪은 경험은 없기 때문이었다. 화면을 통해 느껴지는 법정의 긴장감, 전문성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나 ‘세븐 데이즈’와 같은 드라마나 영화와 같이 멋진 변호사나 검사가 되어보는 상상도 해봤으나 상상일 뿐이었다.

현실에서는 법률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범죄와 얽혀야 법정에서 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법원에 가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였으며 출입할 이유도 없었다. 더욱이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는 일원이 된다는 것은 나와 무관한 영역이었다.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관심도 없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묵직한 우편물 한 통이 나에게 배달되었다. 발신인이 법원인 등기우편이었다. 잠시 놀랐지만, 내용물을 읽은 후 안심되었다.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 날짜가 되었고 법원으로 향했다. 회색빛으로 우뚝 솟은 건물은 묵직함과 엄숙함으로 다가왔고 그것이 처음 마주한 법원의 느낌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로비에 걸려 있는 커다란 법(法) 문양이 눈에 띄었다. ‘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분위기를 더욱 엄숙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제야 법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실감이 났다. 이곳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무고한 사람은 결백함이 드러난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정을 함께 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법원에 가면 배심원이 꼭 되고 싶어진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판사님의 사건 호명으로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리고는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었다. 먼저 추첨을 통해 몇 명을 뽑은 후 인터뷰를 해서 배심원에 적합하지 않으면 탈락시키고 다른 배심원을 찾는 식이었다.

검사와 변호인 측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들은 짧지만, 개인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질문을 던졌고 배심원후보자들은 질문에 답했다. 검사와 변호인 측은 배심원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두 눈을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배심원 자리에 앉히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하나둘 제외했다.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던 인터뷰는 꽤 긴 시간이 흘러도 끝나지 않았다. 무작위로 추첨된 사람 가운데서 적정 수준의 소양을 갖춘 사람을 가려

내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았다.

나의 변호도 불리었다. 배심원석에 앉아 질문을 받았다. 법과 관련된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긴장되었다. 게다가 검사와 변호인이 나의 말을 신중히 듣고 있다는 사실이 긴장을 가중했다.

인터뷰 질문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딱히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많은 생각이 엉켰으나 생각의 잔가지들을 정리한 후 질문에 답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마음 졸였다. 오기 전까지는 귀찮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법정에서 들어와 보니 함께하고 싶었다. 다행스럽게 배심원석에 앉게 되었다. 기쁜 마음도 잠시 피고인의 인생, 혹은 피해자의 인생까지 나의 작은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자세를 고쳐 앉았다. 마냥 호기심으로만 앉아 있기에는 무거운 자리였다. 배심원이 결정되고 나머지 사람은 법원 밖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정리되고 재판다운 재판이 시작되었다.

판사님의 호명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섰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될 법한 나이로 보였는데 법정에서 서 있는 피고인의 모습이 왜인지 모르게 눈에 밟혔다.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와 피곤해 보이는 눈가 때문인 것 같았다.

하지만 법 앞에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중요했다. 유죄를 밝히려는 검사와 무죄를 밝히려는 변호인 측이 치열하게 승부하는 것 같았다. 그는 사건 현장에 있었고 범죄와 관련된 물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건을 정확히 유죄, 무죄라고 이 끌어갈 확실한 물증이 없었다. 검사와 변호인은 피고인을 유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들고 나왔다.

한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들은 하나의 상황에 대하여 정반대의 자리에서 각자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하나의 사건을 어떠한 각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색을 바꾸어 나갔다. 변호인의 말을 들으면 그가 무죄인 것 같았고, 검사의 말을 들으면 유죄인 것 같았다. 진실이라고 생각한 것이 상대편 입장에서는 거짓으로 비쳤다.

누구도 사건을 처음부터 보지 못했고, 정확히 알지 못했다. 사건의 진실은 피고인만 알고 있었다. 그는 사실을 말할 수도, 거짓을 말할 수도 있었다.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판사들과 배심원은 판단해야 했다. 배심원으로 앉아 있는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의 판단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혼란스러운 채로 남아있고 싶지 않았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정보를 듣는 역할을 넘어서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타당한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건을 어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선택해야 했다. 나는 그가 과거에 남긴 전과기록들과 초라한 행색이 주는 고정관념의 틀에 갇히지 않도록 조심하며 재판에 집중하였다.

재판 중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는 시간이 있었다. 유죄를 밝혀내겠다는 검사의 의지는 강해 보였다. 피고인을 향한 검사의 압박감이 배심원석에 앉아 있는 나에게까지 전해졌다. 앉아 있는 피고인과 서 있는 검사를 바라보았다. 자기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피고인과 많은 공부를 해 온 검사가 마주한 법정의 모습은 잊히지 않을 것 같았다.

어떠한 사건들과 상황들이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한 사람은 검사로 만들었는지 궁금했다. 검사의 삶도 궁금했지만 나는 인생의 흔적을 대부분 전과기록으로 남겨가는 사람의 인생

에 대해 더 큰 궁금증이 들었다. 막연한 동정심이라던가, 측은지심은 아니었다. 이해하고 싶었다.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그의 잘못을 눈감는다거나 형량을 줄여준다거나 하는 생각은 없었다. 죄를 지었다면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그가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법정에 섰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그런 나에게 기회가 왔다. 배심원이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직접 구두로 묻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점을 종이에 적으면 판사님이 물어보는 형식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궁금했던 점을 종이에 적어서 제출했다. 난 나의 질문이 재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후에 들어보니 다른 배심원이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대답을 듣고 자신의 의견에 확신이 들었다고 말해주었다. 하나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 창피하면서도 뿌듯했다.

만장일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던 시간들

증거조사, 검사의 신문,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진술까지 마친 후 배심원 평의가 진행되었다. 재판과정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조차 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던 배심원에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를 주춤거렸으나 한 사람이 시작하니 다들 참아왔던 이야기를 쏟아냈다. 많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다양한 사람이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된 결론을 내려야 했다. 각자가 자신의 의견만 말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각자의 의견을 배심원의 의견으로 합쳐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누구도 진실을 모르는 가운데 생각을 통일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서로를 설득했다. 시간이 흘러도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만장일치가 되지 않아 판사님의 설명을 들어야 했다. 판사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

도록 차근차근 설명해주셨다. 그의 말투는 온화했다. 그는 우리가 자신보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에서 우월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이라는 듯한 행동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가 배심원을 대해서는 태도에서 감명을 받았다.

판사님의 설명을 듣고 우리는 다수결을 통해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다. 사실 유죄라고 단정하기에는 석연찮았다. 모호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었다. 하지만 주어진 것이 적다면 적은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많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과반수가 유죄라고 생각했다. 무죄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표정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만장일치였으면 좋았겠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 없었다.

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양형을 결정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었다. 일반인은 판결을 내려본 일도 없고 받는 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을 하면 어떠한 양형을 받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또다시 각자의 의견을 나누며 양형 토의를 해야 했다. 의견을 나누는 동안 사람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느껴졌다. 유죄, 무죄를 결정할 때는 감정이 심하게 얽히지는 않았다. 자신들 나름의 분석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양형 토의를 할 때는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았다.

누군가는 선택지 중 가장 강력한 형량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장 적은 형량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무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피고인에게 가장 적은 형벌을 내리기 원했다. 치열했던 시간이었다. 게다가 다들 형량을 결정 내리는

것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나 또한 그랬다. 나의 판단으로 인해 그가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결정 나는 자리였다. 피고인의 삶 일부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므로 고심 끝에 내려야 하는 일이었다. 대화를 하고 또 했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사람의 의견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기진맥진한 채로 양형 토의까지 끝냈다. 긴 시간의 재판은 판사님의 판결선고로 끝을 맞이했다. 배심원은 오랜 시간 고생한 서로를 향해 인사를 하고 박수를 쳤다. 의견이 달랐던 사람도 재판이 끝난 뒤에는 머쓱하게나마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배심원을 하기에 부족한 국민은 없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판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다 ‘국민’으로 하루를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생활에서는 국민이라는 자의식이 흐려지기 쉽다. 국민이라는 것을 선거철에나 반짝하고 느낄까 말까 했다. 흐려졌던 국민의 권리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배심원 중 한 분은 국민참여재판에 관심이 많아 그림자배심원까지 신청했었다고 했다. 토의 시간에는 핏대를 높이며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던 그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배심원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와 같이 재판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열어두는 것도 사회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관심이 없는 개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처럼 귀찮더라도 참여해보면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은 참여한 사람보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들의 생각이 조금씩이라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도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몇 사람은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 역할을 하기에는 소양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 지식

이 부족한 만큼 감정에 휘둘릴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애초에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풍부한 지식을 요구해 올바르게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한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아직 미국같이 배심원의 결정이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질 부족을 걱정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국민이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든 것에 큰 의의를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판을 구성하는 여러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 사람들은 매체들을 통해 들려오는 전관예우, 결탁 등 법조계의 비리 소식으로 인해 사법부에 강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 나 또한 그랬다. 그래서 처음 판사님을 보았을 때 약간 벵벵해진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눈앞에서 바라본 법원의 풍경은 달랐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 있었다. 판사, 검사, 변호인뿐만 아니라 법정경위, 속기사 등 법정에 있던 사람이 각자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며 신뢰감이 생겼다.

아직은 국민참여재판이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아직 10년도 시행하지 않았다. 아직은 이것이 옳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여겨진다. 다만 옳은 뜻을 향해 옳은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옳은 곳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동안 법원에서 겪은 감정들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다.

소년의 꿈을 40년 만에 이루게 해준 배심원 경험

2017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대상



약 40년 전 초등학교 시절의 막연한 꿈은, 대부분의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아이들의 꿈이 그러하듯이 나 또한 법관이었으며 그 꿈이 더 구체성을 띠게 된 것은 어느 날 어머니께서 내 책상에 갖다 놓은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이란 책이었다. 아마도 당신께서는 세 아들 중 그나마 공부를 곧 잘하고 판검사 아들을 하나 갖고 싶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만한 둘째에게 뭔가 자극을 주고 싶었던 것 같다. 하여간 난 그 책을 밤새워 읽고 머나먼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의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교수의 그 모습에 흠뻑 반했었다. 그 감흥은 바로 이어져 당시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닭을 도매하는 어머니의 가게에 들러 어머니를 졸라 대신동의 부산

법원에 같이 가서 재판을 방청하게 해달라고 하였고 어머니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나를 데려갔었다.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구 경남도청의 건물을 개조해서 법원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그곳은 건물과 목조 복도에서부터 위압적인 느낌이 많았는데 재판을 구경하러 들어간 어느 법정에서 재판관이 들어오는 순간, 법원직원의 “일동 기립!” 그리고 재판관이 자리에 앉은 후에 “착석!”하는 외침에 따라 자연스레 몸이 뻗뻗하게 긴장되었던 느낌과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매여서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결과를 기다리던 사람의 모습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법복을 입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검사, 변호인, 피고인들에게 질문도 하고 선고를 하던 법관의 모습은 책에서 보며 상상하던 법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어린 시절 나에게서는 무의식중에 법원은 위압적이고 엄숙하며 또 무서운 곳이란 느낌으로 남게 되었다.

낮선 서류봉투가 전달되다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온 나에게 아내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낮선 서류봉투를 건넸다. 법원에서 발신한 등기우편물로 겉으로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려웠으나 왠지 불안하고 가슴이 콩콩거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 관련해서 상속 한정승인을 하여 받아들여졌는데 혹시 그게 잘못되어서 선친의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통보가 온 것은 아닐까 싶어 왠지 불안하고 초조해졌다. 얼굴에 그런 모습이 드러났는지 아내는 나보다 더 걱정된 목소리로 말하면서도 걱정하지 말고 우선 열어보라고 재촉했다.

‘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얼핏 한번 들어본 말 같기도 하고 또 생소한 이 용어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보내온 서류를 꼼꼼히 정독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내가 무슨 잘못에 연루된 것은 아니고 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으니 참여해달라는 공문이 며 불참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아내에게 해 주었다. 내심으로는 정말 흔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과 어린 시절 재판을 방청했던 그 경험이 서로 겹쳐지면서 가벼운 흥분과 기대감이 스며들었다.

성격상 어떤 새로운 일을 맡게 되면 사전에 그 일에 대한 조사를 꼼꼼히 해야 하는 스타일 인지라 그날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게 된 경위 그리고 대표적인 재판과정과 결과 또 배심원의 평결로 인해 재판의 결과가 유의미해진 사례 등을 접하며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막중함과 “정말 잘해야 할 텐데”라는 생각 등으로 재판 당일까지 긴장이 이어져갔다.

나는 배심원이다

오전 8:30까지 법원으로 오라는 글귀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차량을 갖고 오면 더 일찍 와야 한다’라는 문구로 인해 차를 이용해서 일찍 나섰더니 오전 7시경 주차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주차공간이 텅텅 비어 있었다. 흠... 이놈의 조급증은 어쩔 수가 없다며 자책을 하는 순간 몇 대의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하고 차 안에 대기하는 사람이 보였다. 아마도 나와 같은 목적으로 온 사람이리라.

법정에 나가면 이상 없이 모두 배심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었다. 배심원은 예비 배심원 1명을 포함해 총 8명이었으며 배심원 선정 대상자는 약 150명 그리고 법원에 나온 사람이 약 50명가량 되었으니 이 또한 경쟁률이 만만치 않았다. ‘아! 그동안 열심히 알아보고 하루 휴가를 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선정되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 또한 허탈하고 가족들이 놀릴 텐데’라는 걱정은 그대로 이어졌다. 1차 배심원을 선정하는 추첨에서 내 번호만 건너뛰더니 탈락

하였고 선정된 배심원을 상대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또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부적격자라고 판단되어 가려내는 과정을 통해 3차 선정에서 내 번호가 불리었다. 사실 그냥 이대로 돌아가기에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과정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속으로 꼭 선정되기를 기원했다.

재판은 10시부터 시작되었다. 피고인과 검사, 변호인이 자리를 잡은 다음 형사합의 재판이라 재판장과 좌우 배석 총 3분의 판사가 들어오는 순간 구령에 맞춰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웬걸 법원직원의 구령 용어가 바뀌어 있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 네 이제 앉아 주십시오.” 어릴 때 들었던 ‘기립, 착석’이라는 일제 용어의 잔재가 사라지니 법정 분위기도 훨씬 부드럽고 또 차분해 보인다. ‘참! 세월이 40년이나 지났지...’

배심원의 선서와 함께 시작된 재판은 그동안의 재판과정에 대한 설명과 관련 증거와 증인에 대한 채택으로 이어졌다. 재판은 사립학원의 설립자와 그 배우자 자녀들 사이에서 학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가족들 간의 반목과 다툼, 그로 인한 폭력행사가 원인이었으며 80세 고령의 부친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40대 딸의 고소로 인한 형사사건이었다.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불화와 대립 등은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막장극의 전형이었으나 그런 감정에 빠지지 않고 드러난 사실과 증거만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만 하는 것이 배심원의 임무였다.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피고인의 변호인은 국선변호인이었는데 통상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보다는 다소 소극적일 것이라는 통념과 너무나 달랐다. 재판을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피고인의 어쩔 수 없는 사정과 수형생활을 하기에는 고령인 점 그리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죄의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검사 측과 논쟁하고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인 딸과의 신문과정을 통해 피고인의 불가항력에 대해 입증하려고 노력했

다. 심지어 배심원의 분위기를 살펴보니 실제 폭력에 대한 명백한 사실과 피고인의 자백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딸의 잘못이 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과 고령의 피고인에 대한 동정적인 느낌이 들고 있었으며 이러한 생각의 흐름에는 국선변호인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호소가 큰 몫을 하고 있었다.

법관에 대한 편협한 고정관념을 깨다

법원 구내식당에서 배심원끼리의 오찬 후 이어진 오후 재판에서는 이미 채택된 증거자료 들인 CCTV 영상, 현장사진, 피해자의 진단서, 음성녹음, 그리고 피고인의 병적기록 등에 관한 공방이 있었고 피고인의 최후진술 및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 후 배심원의 평결순서가 이어졌다. 배심원 대표로 선정된 사람의 사회에 따라 각 배심원이 재판에 대한 의견 및 유·무죄 여부를 밝히게 되었는데 7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나왔다. 비록 고령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백을 한 이상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모든 배심원의 의견이 모아졌고 그 즉시 재판장에게 배심원의 합의된 결정을 알려드린 다음에 양형에 대한 논의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들의 참석 하에 다시 토의를 하게 되었다.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은 양형토의에 참석한 판사님들의 배심원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친절했다는 점이다. 판사님들은 국민참여재판의 탄생배경으로 ‘법관들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 다양한 사람의 일반적인 견해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 그리고 이 사건 여러 정황에 대한 요약과 이러한 죄의 경우 법정에서 선고 가능한 형량에 대한 설명 등을 친절하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이해주셨다. 통상 법복을 입은 상태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판사의 경우 다분히 권위적이고 고압적일 것이라는 잘못된 통념이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탓이리라. 하지만 마치 이웃집 아저씨 같은 편안함으로 배심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고 토론하는 한 명의 구성원처럼 본인의 의견도 이야기하시며 모든 배심원이다 수긍하고 한 결론으로 모일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주시는 모습에서 법관에 대한 나의 오래되고 편협한 고정관념이 조각나는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재판의 결과는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평결한 대로 유죄로 선고되었으며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정을 빠져나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과연 인간에게 재물이란 무엇인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절차를 통해 그 다툼을 해결하려는 사람의 속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모두에게 상처뿐인 이런 재판을 통해 그들은 과연 어떤 경험을 나누어 가질지에 대한 회한이 밀려들었다.

살아계셨으면 선친의 연배와 비슷한 80세 노인의 뒷모습이 유독 쓸쓸하게 보이는 것은 비단 나만의 감정은 아니었으리라….

국민의 높은 참여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던 국민참여재판

인생 후반전에 돌입한 50이 넘는 나이에 체험하게 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경험은 어릴 적 소중한 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대리만족을 하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 참여하며 간접적으로 접했던 타인의 생활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특히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이란 외국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는 줄로만 알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도입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로이 알게 되었다.

자영업을 하시는 아주머니는 차편이 좋지 않아 거의 3시간을 달려와 배심원으로 참여하셨

고, 취업을 위해 오후 내내 학원에 다니는 청년도 기꺼이 새로운 경험을 위해 함께 해주신 배심원이었다. 이런 분들의 높은 참여 의식이 국민참여재판을 더 풍성하고 알차게 만들어주고 제대로 정착하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본다.

도착해서부터 마지막까지 친절하게 잘 적응하고 배심원의 임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법원직원들에게도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다. 그분들의 밝은 미소가 법원을 향하는 일반 시민들의 위축되고 경직된 어깨를 풀어주는 든든한 힘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날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려는 법원의 이러한 노력이 점점 더 큰 결실을 보기를 응원하며 국민을 위하는 따뜻한 사법행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이 글로써 바치고자 한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힘내십시오!

배심원이 된다는 것은 복권 당첨의 행운과 맞먹는 일!

2017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최우수상



나에게도 이런 일이...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운동을 마치고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 낮익은 우체부 아저씨가 우편함에 우편물을 정리하고 계셨다.

‘어~ 이게 뭐지?’ 우리 집 우편함에도 커다란 봉투가 꽂혀 있는 게 아닌가?

“아저씨 이게 뭐예요? 나 뭐 잘못된 것도 없는데 법원에서 왜 이런 게 왔대요?”

“아~ 그거요. 국민참여재판 참석 통지서일 거예요.”

“네?? 그게 뭔데요?”

“그 왜 있잖아요. 배심원. 거기 가면 일당과 여비도 줘요.”

“아 네~.”

출근 시간에 쫓겨 우편물을 챙겨 들고 회사에 도착, 한가한 틈을 이용해 우편물을 개봉해 보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서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취지와 배심원 선정 과정, 배심원의 역할까지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된 인쇄물을 볼 수 있었다.

‘아~ 이게 국민의 의무였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마침 내가 배심원후보자에 선정되던 무렵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일리노이 주에서 배심원 소집 명령을 받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참여 예정이라는 뉴스를 접했다. 미국에서는 전직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배심원의 의무를 바로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무작위 추출로 선정되었다니, 복권 3등쯤 당첨된 행운에 버금가는 일 아닌가!!!! 하하하하

스마트폰에 출석 일을 알람 설정해 두고 우편물을 인증 사진 찍어서 동네방네 자랑했더니 소신껏 잘하고 오라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배심원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고 더러는 안 가도 된다고 잘못된 정보를 주는 사람도 있었다.

수많은 배심원후보자를 뚫고 배심원에 선정되다

아침 8시 50분까지 법원에 도착하기 위해 아침 수영 중간에 빠져나와 도로를 신나게 달렸다. 헐. 나도 제시간에 도착했는데 어림잡아 3~40명은 되어 보이는 많은 사람이 이미 배심원 후보자 자리에 번호표를 달고 앉아 있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후보라니~ 여기서 탈락하면 그냥 집에 가야 하는 건가? 회사에는 하루 결근한다고 미리 얘기했는데...’

난감했다. 배심원을 선정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 있을 줄이야!!!

9시 30분이 되자 판사님 세 분을 비롯해 검사 측과 변호인 측 그리고 피고인이 법정 에 모습을 드러냈다. 뭔가 비장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역시 법정이라 그런지 정해진 시간대로 착착 진행되었다. 정당한 설명 없이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경우를 하도 많이 봐서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신뢰가 갔다. 법복을 입으신 판사님께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는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고, 아울러 오늘 참여하게 될 재판에 대해서 사건의 개요를 설명해 주셨다.

그날의 국민참여재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형사재판이었다.

드디어 번호표 무작위 추첨 시간이 되었다. 처음 8명이 호명되었는데 그중 여덟 번째로 내 번호가 당첨되었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선정 심사가 시작되었다. 주로 교통사고 경험에 관한 질문이었고 최근 5년 내 형사처벌 경험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물었다. 뭐 나야 워낙 운전 모토가 늦더라도 속도 준수다 보니 무사히 심사에 통과하여 배심원 자리에 앉게 되었다. ‘야호~~~~’ 나처럼 배심원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스스로 거수하여 사정을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고 대부분 다 납득이 가는 이유였다.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어떤 분은 최근 가까운 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본인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심리적인 상황이 아님을 피력했고 그분은 배심원에서 제외되었다.

총 8명의 배심원이 선정되었고 그중에서 한 명은 예비배심원이라고 하는데 누가 예비배심원인지는 평의 시간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 예비배심원은 그러니까 실제 배심원 7명 중 재판 도중 불가피한 상황으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재판에 끝까지 참여토록 하는 배심원이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법정 공방

나는 평소에도 법정 드라마를 매우 즐겨 보는 편이다. 작년에 방영된 “굿 와이프”라는 드라마와 최근 방영 중인 “마녀의 법정”은 한 회도 거르지 않고 챙겨 보았다. 드라마는 ‘주인공이 사건에 승소하겠지’라는 전제를 깔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주인공 입장에서 감정 이입이 되어 보게 되는데, 이걸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였다. 또한 검사가 주인공도 아니고 변호사가 주인공도 아니었다. 검사와 변호사의 법정 공방이 계속될수록 누구의 편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법정에 앉아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증거물로 채택된 CCTV를 화면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도로교통 안전공단에서 제시한 사건 당일의 평균 속도 기록, 사고 차량 외에 그날 동 시간대를 지나가던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등 양측에서 제시한 여러 증거물을 토대로 머릿속에서 엄청난 갈등이 시작되었다. 내 평생 이렇게 몰입해서 어떤 하루를 보낸 적이 학력고사 이후로 없었던 듯싶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판사님이 휴정을 선언하려고 하는데 변호인이 검사의 마지막 주장에 자칫 배심원이 오해할만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잠시 설명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져 사건 지점에서부터 어떻게 차량 평균 속도가 산출되는지 재차 설명했다. 배심원의 역할이 새삼 중요한 것임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었다.

침묵의 점심시간

아침부터 배심원 관리를 맡았던 법원직원이 점심시간이 되자 여덟 명의 배심원을 인솔하여 직원 식당 한쪽에 별도로 마련된 자리로 안내해 주었다. 아마도 식사시간에 피고인 등 관련자와 마주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배려인 듯 했다.

아침도 못 먹고 부리나케 온 터라 가정식 백반으로 차려진 식당 밥이 꿀맛이었다. 여자 6명, 남자 2명의 배심원은 나이대도 달라 보였고 직장인부터 전업주부까지 직업도 다양했다.

모두 처음 만난 사람인 탓도 있지만, 배심원 자격으로 만난 사람이라 그런지 웃음기 없는 얼굴로 다들 밥만 조용히 먹었다.

피고인신문

오후 재판부터 피고인신문이 시작되었다. 화물 운전이 주업인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인 업무상과실치사인지 아닌지의 여부로 유·무죄를 심판받게 되었다. 검사 측은 과실에 방점을 찍고 신문을 했고 변호인은 신뢰의 원칙에 따라 무죄임을 주장하며 여러 판례를 들어 변론했다.

새벽에 발생한 사고였는지라 재판에 증인이 없었다. 모든 판단은 양측에서 제시한 증거와 피고인신문 과정을 보고 유·무죄를 판단해야 했다. 재판을 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운전과 관련된 사고였으므로 피고인의 몇 년간의 교통위반 사실도 참고 자료가 되었다. 한평생 살면서 송사에 휘말려 경찰서나 법원에 가는 일은 없는 게 최선이겠지만 자의든 타의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니 법질서를 지키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심원 평의 시간

마지막으로 배심원을 향한 변호인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피고인 측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재판이었으므로 배심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였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모든 증거와 정황 그리고 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줄 것을 호소했으며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 관련 배상을 받는다는 사실도 재차 강조했다. 최후진술이 끝나고 판사님께서 예비배심원이 누구인지 공개하셨고, 배심원 평의 시간에 예비배심원은 의견 발표 및 평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미리 고지해 주셨다.

배심원의 대표는 1번 자리에 앉아서 선서하셨던 분께서 맡기로 하고 대표 자리의 오른쪽 사람부터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다. 나는 짧게 재판에 참여한 소회를 얘기하고 내 의견을 약 5분에 걸쳐 소신껏 발표했다. 내가 유·무죄를 판단한 근거에 대해 재판 시간 내 정리했던 나름의 기준과 판단으로 성심을 다했다. 총 7명인 배심원의 의견이 나뉘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같은 공간에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이런 연유로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자 심리에 관여한 판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였고 판사님 세 분이 배심원 회의실에 들어오셔서 재판의 쟁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다.

배심원의 최종 평결은 처음과 다르지 않았다. 다수결의 의견으로 평결서를 제출하고 배심원은 다시 판결선고를 듣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판결선고

판사님께서 장시간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신 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셨다. 이 부분을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판사님의 판결은 내가 평의시간에 발표했던 나의 의견과 거의 일치했다. 이걸 팩트다! 나는 왜 범조인의 꿈은 한 번도 꾸어 보지 않았던 것인지, 물론 그것은 학교 성적에 비례해 내가 꿀 수 있는 꿈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것도 팩트다.

솔로몬 왕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아이를 나눠 가지라고 한 후 아이를 양보한 여인이 친모임을 판결했다.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 한 번이면 끝날 일인데, 그 당시 솔로몬 왕은 물증도 없이 심증만으로 매우 현명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명백한 증인이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모호하여 검사의 진술 시간에는 검사 말이 옳은 것 같고, 변호인 진술을 들어보면 또 변호인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았다. 과연 나는 솔로몬 왕처럼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내내 되짚게 되었다. 어찌 보면 살인사건과 같은 중범죄에 비해 업무상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니 비교적 가벼운 사건일 수 있을 텐데 후유증이 제법 있었다. 잠들기 전에 CCTV 사고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내가 그때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면 판사님의 판결선고가 달라졌을까 등의 잡생각이 들기도 했다.

만약 또 기회가 있다면

하루 동안의 배심원 경험은 뭔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범조인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었고 온종일 법정에서 아름답지 못한 일들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을 내리고 하는 결정이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중노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범조인이야말로 주기적인 심리치료와 건강관리가 필요한 집단이 아닐까 싶다.

나는 요새 좋은 운전 습관이 생겼다. 카메라가 있건 없건 운전속도를 지키게 되었고 신호 준수는 물론 뒤에 차가 없어도 방향지시등을 켜고 회전한다. 체험에서 오는 교육 효과일 것이다. 사람이 쉽게 내뱉는 ‘법대로 하면 된다’라는 말에는 긍정보다는 부정의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왜 그럴까? 이는 법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 법을 악용하거나 법질서를 무시하고 특권을 추구하는 행위가 여전히 많다는 방증일 것이다.

한 번의 배심원 경험으로 국민의식이 고취되고 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게 신기하

다. 지금 이렇게 수기까지 쓰고 있으니 말이다. 만약 나에게 또 배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사패를 또 받을 의향이 있다. 정말로 우리 사회가 법대로 하면 되는 상식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일상 밖으로의 특별한 시간 - 나의 배심원 체험기

2017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우수상



프랑스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파리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있을 시간이 3일밖에 없어서라고 한다. 하루 동안 나의 국민참여재판 체험이 이렇게 수기로 쓰이는 이유도 앞으로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 파리는 다시 갈 수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의 기회는 사는 동안 다시는 안 올지도 모르니까.

등기 왔어요~

“당신 앞으로 등기 왔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나보다 조금 먼저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부재중으로 다음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우체국 메모를 전달받았다. 뭐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며 무심히 넘기려는데,

“발송처가 법원이야. 뭐 잘못된 거 있어?”

순간 가슴이 콩닥콩닥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났다.

“당신이나 잘하셔!! 나처럼만 살아봐~.”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메모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우체국 메모를 잡은 두 손의 떨림은 그동안 내가 조금씩은 위반하고 살아온 나의 과오들을 되짚어보게 했다.

‘어? 나 잘못된 거 없는데... 참, 지난번에 부동산에서 말다툼 한 번 했었지, 그리고 예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살짝 닿은 거, 또 뭐 있더라~~ 한산한 도로에서 신호 위반한 거 블랙박스에 찍어서 누가 신고했나?’ 등등.

법원이라고 적힌 등기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했다. 지금까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 한 번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없었는지, 평소 융통성(?) 있게 운전하는 내 습관이 혹시 누군가에게는 불쾌감을 주지는 않았는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온하고 성실히 살아온 나의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였다.

“잘 생각해 봐~ 법원에서 등기 올 일이 없는데...”

안 그래도 후덜덜한 내 가슴에 남편은 자꾸 방망이질했다.

‘그런 일이면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오겠지~. 정신 차리자!!’

내일 다시 방문하겠다는 우체부에게 등기를 받기가 두려워진 나는 법에 대해 잘 아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데 혹시 무슨 일들로 법원 등기를 받는지 물어보았다. 다행히 특별히 잘못된 일 없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듣고 다음 날 등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다음 날, 등기 봉투에는 흑여 나처럼 놀라는 일이 있을까 봐서인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라는 문구가 아주 크~게 인쇄되어 있었다.

‘휴~~그럼, 그렇지~~.’

그제야 나는 한숨을 돌리고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에 대한 안내 책자를 훑어보았다.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법원에 들어서다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에게 평일에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라는 것은 적잖이 부담될 수 있었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석’이라는 흔치 않은 명분으로 당당히 출장을 냈다. 소문을 들은 동료 직원들은 ‘배심원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복권 당첨만큼이나 어렵다는 확률에 어떻게 당첨되었느냐?’, ‘배심원 수당은 얼마나 되느냐?’ 등등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즐겁게 출장을 가도록 배려해주었다. 나 역시 낯선 곳에서의 색다른 경험에 대한 설렘, 한편으로는 배심원을 협박했던 스릴러 영화 ‘주어러(The Juror)’의 장면이 떠오르며 흑여나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살짝 안고 법원으로 차를 몰았다. 법원 앞은 많이 지나다녔지만 직접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은 지나온 역사와 사건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듯했고 법 앞에 평등함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과 저울은 엄숙한 법의 권위와 신뢰를 느끼게 하였다. 안쪽으로 들어서니 청원경찰이 군데군데 서 있다가 정해진 동선으로 움직이도록 안내하며, 가방 속 소지품을 검문하는 등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모습에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위엄이 느껴졌다.

긴장되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배심원이 되기까지

드디어 안내된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은 TV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배심원, 법원직원, 방청객의 위치와 모습 그대로였지만 내가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은 무척이나 어색했다. 나뿐

만 아니라 지금 법정에서 모여 있는 사람 모두가 그런 듯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안내 사항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상기된 표정이었다. 드디어 판사님들이 착석하시고 모인 사람 중에서 추첨을 통해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로 들어갔다. 참석한 사람은 30명 남짓 되는 것 같았는데 배심원은 8명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돌아가야 한다니 나는 이왕이면 배심원으로 선정되기를 내심 바랐다. 추첨으로 한 명, 한 명이 호명될 때마다 이목이 집중되고 긴장감이 느껴졌다. 한편으론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봉사하러 온 건데 죄도 없이 괜히 긴장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드디어 내 번호가 호명되었다.

‘야호~~. 경품 당첨 한 번 안 되는데 오늘은 웬일이니~~~’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손을 들고 일어섰다. 모인 모든 사람의 이목이 나에게로 향하고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시선이 온몸으로 따갑게 느껴졌지만 무덤덤한 척 가방을 챙기고 배심원석에 앉았다. 변호 추첨이 모두 끝나고 배심원석이 채워졌지만, 또 하나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에 참석하는 판사님, 변호인과 검사님의 몇 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배심원을 가려내는 일이었다. 부적격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설명하셨지만, 이왕이면 배심원에서 제외되지 않으려고 눈을 반짝이며 참여하였다. 판사님의 질문이 끝난 뒤 이어지는 변호인의 질문, 변호인은 배심원 한 명, 한 명을 뚫어 쳐라 바라보았다. 사람을 대놓고 그렇게 뚫어져라 당당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재미있기도 하고 은근히 긴장되기도 하였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지 판사님께서서는 편안히 하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지만 큰 키에 꼭 다문 얇은 입술, 작은 눈에 힘을 잔뜩 주고 한 명 한 명을 훑어보던 변호인의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다행히 나는 이 어려운(?) 관문을 모두 통과하고 배심원 자리를 차지하였다.

‘앗싸~~ 드디어 배심원이다!!’ 마음속으로만 쾌재를 외쳤다.

까다로운 배심원 선정절차가 모두 끝이 나자 아침 일찍부터 법정에서 모였던 배심원후보자들은 못내 아쉬운지 배심원석을 바라보며 되돌리는 발걸음이 무척이나 무거워 보였다. 이렇게 나는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의 주인공이 되다.

판사님은 배심원을 위해 재판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셨고 덕분에 배심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숙지하였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고 피고인이 들어왔다. 피고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보는 것은 처음이라 무척 어색하였다. 변호인은 사건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변론을 시작하였다. 변호인의 논리와 증거에 따라 배심원은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피고인의 죄를 파악하였다. 아직은 gau똥하며 사건의 진위를 혼동하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검사의 진술이 시작되었다.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고 나서야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진 증인신문... 안타까운 사연과 증언이 이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하다고 여겨졌지만, 피고인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였다. 정의의 여신이 저울을 들어야 할 차례이다. 이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여 각자 생각을 정리하고 의견을 결정하는 평의 절차가 남았다. 배심원은 평의실에 모여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배심원은 당해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배심원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람으로 나이, 성별, 직업, 소득, 종교 등 전혀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증거와 사실관계를 따지며 재판을 지켜보는 가운데 선과 악을 느끼고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 한마음이 되었다.

신이 아닌 인간이 만든 제도를 통해 인간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 법의 집행이야말로 신의 영역에 가장 가까운 엄숙하고 신중해야 할 우리 인간의 영역임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다. 드디어 우리의 의견이 전달되고 판결이 내려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역할을 마무리 지었다. 또한, 이번 재판은 약식기소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지는 최초의 사례가 되어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 기자들과 카메라까지 동원된 다소 화제성을 띤 재판이기도 하였다.

그날 저녁 나는 배심원석에 앉아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TV 뉴스 전파를 탔다.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아무도 몰랐지만, 우리 아들(8살)과 딸(4살)은 엄마를 금세 알아보았다. 아이들이 엄마가 TV에 나왔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실컷 자랑하며 즐거운 저녁을 보냈다.

한 걸음 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다양한 가치관과 상식의 반영 등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한다. 나 역시 이번 배심원 역할 참여를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체험하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누구에게나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잘 알게 되었고,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이 틀림없다.

얼마 전 취임한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될 것임을 언급하였다. 사법부에서 시작한 국민참여재판이 국민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끄는 제도 정착의 모델이 되어준 것처럼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성숙한 법치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결국 사법 정의는 사람이 만든다

2017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우수상



갑작스레 날아든 등기

“땡동~~”

“누구세요?”

“등기 왔습니다.”

“예? 등기요?”

“네 법원에서 등기가 왔어요.”

“법원이요? 저한테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난 잘못된 것도 없는데 법원에서 뭘 등기가 왔지? 아니지 검찰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니까 관계없나? 집배원님이 등기를 건네는 짧은 순간에 여러 생각이 스친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조심스레 서류를 열어본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법원으로 출석하십시오.」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 만난 낯선 단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사건을 판단하는 것 아닌가? 미국처럼 배심원 제도가? 우리나라에?’

자연스레 인터넷으로 이것저것을 검색한다. 출석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댓글들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한다. 왜 내게 이런 생경한 일이…….

법원 찾아 삼만리

우리 집과 별로 멀지 않은 곳에 법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따라 그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다. 그리고 법원이 뭘 종류가 이리 많은지 가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머릿속이 복잡하고 길은 또 미로 같다. 이정표를 봐도 모르겠다.

여러 사람에게 묻고 물어 겨우 내가 오늘 가야 할 곳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법원의 부름에 응해 출석해 있었다. 그래도 늦지 않게 잘 도착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얼른 정리되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뿐이다.

두근두근 심장이 나대지마!!!

한 사람씩 호명되어 배심원의 적합 여부를 판단 받는다. 변호인이나 검사 측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늘 사건 배심원이 될 수 없고 그마저도 호명되는 순서가 늦어져서 배심원 정원이 다 마감되면 나머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제 거의 정원이 채워지고 있다.

‘아~ 나는 짧은 법원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어라? 그런데 왜 자꾸 거부권이 행사되어 배심원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거지? 안 돼~~ 얼른 정하세요. 변호사님 검사님! 제발 전 집에 가야 해요. 사랑하는 아이가 엄마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제발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댄다. 이제 정원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환청인가?’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나를 부르는 것이 맞았다. 이미 나에겐 내 심장 소리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발걸음 소리가 나면 혼이 나는 것도 아닌데 살금살금 고양이 발을 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한다.

이것저것 묻는 말에 대답하는 나는 마치 죄인이 된 듯하다. 취조하듯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취조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법을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하는 분들이 이렇게 상냥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긋하고 친절한 어조로 묻는 질문에 나는 혼자 취조 받듯 기어들이는 소리로 읊조린다.

“좋은 기회이고 재미있는 경험일 수 있지만,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불러

주신다면 그때 꼭 경험해 보겠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지껄였는데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들킨 걸까 딱하니 나를 배심원으로 지정하신단다.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나? 분명 오늘은 아니라고 내가 다음 기회에 경험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리고 저 범죄자 무서워요. 어흑’
선량한 국민이 울부짖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상황 종료! 내 뒤에 한 명을 더 채우고 나서야 기나긴 배심원 선정은 끝이 났다. 배심원이 모두 선정된 뒤 판사님이 우리 중 예비배심원을 무작위로 뽑고 그 사람은 오늘 모든 일정이 끝나면 발표하신다고 했다. 무슨 중대 발표마냥 뭘지 모르지만 기다려진다.

범죄자니까 무섭겠지?

드디어 피고인이 모습을 드러내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흉악범일까 봐 혹시 몰라서 내 모습을 숨기고자 안경을 준비해 갔지만 그걸 쓰려고 움직임을 보이는 게 더 튀어 보일까 봐 아까부터 안경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고개는 들지 못하고 계속 죄 없는 배심원석 테이블만 노려보고 있다. 변호인, 검사들의 서류가 오가고 속기사는 일련의 내용을 빠른 타자로 쳐내기 바쁘다. 그 속에 약간의 두려움에 긴장된 내가 있다. 사건은 다행스럽게 흉악 범죄는 아닌 것 같은 분위기다. 피고인도 사복 차림이다. 불구속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들이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 이후에서야 조용히 고개를 들어 피고인의 동정을 살필 여유를 얻는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 본 나는 그동안 내가 무슨 짓과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한심스럽다. 피고인으로 불러 나온 사람은 그냥 그저 평범한 소시민이었다. 시장 갈 때나 거리를 다닐 때 지하철을 탈 때 언제나 마주칠 수 있는 갑남을녀 중 한 사람. 아니 어쩌면 더 선해 보이는 인상

으로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죄에 대해 듣고 있다. 내가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생각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판사님이 휴정하신다고 했다.

국민 판사로 대접받는 기분이란

판사님이 법정을 나가시고 난 뒤 법원직원의 친절함 안내로 나를 포함한 배심원은 점심 장소로 향했다. 점심 장소는 법원 구내식당이었는데 조용하고 한적했고 우리를 위한 자리가 미리 마련되어 있었다. 음식도 깔끔하고 맛있었다.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도 거치지 않고 나는 오늘 일일 판사가 되어 호사를 누리고 있구나 생각하니 갑자기 웃음이 절로 난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국민에게 이런 행복한 기분을 느껴보게 하려고 제안된 제도인가 하는 생각을 아주 잠시 해 보며 살짝 웃는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오후 법정은 나른하지만 뭔가 질서 정연한 위엄과 기품이 느껴진다. 판사님 인상은 선해 보이시는데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 든다. 양쪽에 앉은 배석판사님들은 완전 동안이신건지 아니면 실제 어린 나이에 시험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신 것인지 나이가 몹시 어려 보인다는 생각을 잠시 해 본다. 처음에 출석했을 때 느꼈던 긴장과 불안은 이미 나를 빠져나간 지 오래이고 지금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부름에 응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느끼며 재판에 몰두하고 있다.

평의는 심사숙고가 최고

이제 배심원끼리 평의를 해야 한다고 하며 우리를 회의실 같은 곳에 보내준다. 그곳에서 배심원끼리 이번 사건에 대해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나누는데 솔직히 법률용어나 내용이 어려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평의를 진행하며 각

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했다. 용어는 서툴렀지만, 오늘 사건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보고 피고인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사명감 같은 것이 있는 듯했다.

긴 평의를 마치고 우리의 정리된 의견을 말하기 위해 판사님을 모셨다. 판사님은 이 사건에 대한 안내와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해주시는데 참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주셨다. 판사님께 간단하지만 쉬운 설명을 들으니 사건 이해가 더 쉬웠다. 고된 일에 시달리셔서 그런지 흰머리가 많이 눈에 띄었지만, 얼굴은 희고 온화한 모습이었다. 판사라기보다는 온화하고 인자한 학자의 모습이 보여 조금 놀랍기도 했다. 처음에 들었던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니 지금 보이는 법원은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기까지 한다.

겪어보니 모두 사람이었다

처음에 받아들였던 긴장감 가득한 등기 봉투에서 시작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법원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느낀 것은 거기에는 모두 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조직원도

범죄자라고 지명되어 출석하는 피고인들도

그들의 범죄를 판단하는 판사들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하루 판사 보조 역할을 하게 된 배심원도

결국에는 모두 대한민국의 하루하루를 열심히 채워나가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처음 느꼈던 긴장되고 적대심 충만하고 또 의구심 가득했던 내 마음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온화하고 따뜻하며 인정 넘치는 법원을 보게 되었다는 안도로 바뀌었다.

예전에 은사님께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고 자주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일부 선택된 자

만이 누릴 수 있는 조금은 특별한 경험을 끝내고 나니 그 말씀이 새삼 마음속에 성큼 다가온다. 요즘처럼 더 복잡하고 다양해진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인해 법원은 더 바빠질 것이고 관련 종사자들은 더 많은 업무에 치일 것이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법원은, 법원만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사람을 위한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최후의 허브”가 되어 끝까지 사람이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인공지능이 기승을 부린다 해도 끝까지 살아남아 주기를…….

나는 이제 국민참여재판 알리미로 다시 태어났다~~!

2017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우수상



법원에서의 등기 우편

“따르릉 따르릉~~~” 집에 계신 시어머님 전화다.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전화하시는 어머니가 웬일이시지? 하며 급하게 전화를 들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어요?”라고 물으니 다급한 목소리로

“애미야, 너 무슨 일 있니?”

“왜요? 어머님.”

“애미야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는데 ‘국민참여재판’이라고 쓰여 있는데 무슨 일이냐?”

나도 생소한 단어라 “글쎄요?”라며 얼른 검색사이트에서 찾아본 후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법원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들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정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배심원의 결격사유를 알게 되다

막상 나에게 닥치니 덜컥 겁이 났다. 평소 소심한 성격이라 과연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겁도 나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하나 둘 찾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제외 대상자가 있었다. 혹시 내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여 살살이 뒤져 보았다.

배심원의 자격, 결격사유, 또 직업 등에 따른 제외 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가 있었다. 그 중에 해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혹시 남편이 보호관찰공무원이라 안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의 회유

“여보~ 나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래요... 근데 나 이런 거 싫고 무서운데...”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남편은 대뜸 “축하해!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라고 말했다. 남편은 이미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고 있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니 나를 회유하기 시작했다.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등기가 온 이상 가야 하고 가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또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재판부가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을 내리는 형식이라고 아주 쉽게 설명해 주었다. 내가 가야겠다고 마음먹게 한 남편의 한마디가 있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형사재판에 오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지 않겠어?”

나는 남편의 그 말에 그래 한번 경험해보자고 생각하며 출석하기로 했다.

회사 동료들의 반응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직장에 공가를 신청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직장 상사 또한 “혹시 이거 본인이 신청한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했고 옆에 있는 동료들 또한 “남편분이 신청한 거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고 공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나도 몰랐지만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출석 그날...

드디어 그날이다. 출석하라고 한 날 늦지 않게 가려고 서둘러 법원을 찾아갔다. 아무도 없는 쓸쓸한 법정이었다. 법원이란 곳은 처음인데 웬지 많이 본 모습. TV에서 본 법정 드라마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 윤리에 대해 교육받을 때 모의법정을 해본 경험으로 많이 낯설지는 않았다. 하나둘 사람이 들어오고 직원들도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재판을 위한 검사, 변호인, 판사들이 입장하고 하나하나 질문이 시작됐다. 이곳에서는 이름보다는 변호로 나를 나타낸다.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추려지기 시작했다.

30여 명에서 하나둘 밖으로 나가고 20여 명이 남았다. 이제는 변호추첨이다. 나는 40평생 살면서 추첨이란 것에 당첨된 적이 없기에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기다렸다.

이제 배심원 8명에서 7명까지 호명하고 한 사람이 공석이다. ‘이제 난 집으로 가야지’ 하고 마음먹고 있는 순간 나의 번호를 호명했다. 어쩔 수 없이 배심원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나니 배심원으로 확정되었다. 8명의 배심원이 확정되자 재판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증인, 검사, 변호인의 의견 개진 과정을 다 지켜본 후 재판이 끝났다. 재판과정을 지켜보니 어

느 누구의 잘못인지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

이제 평의를 위해 배심원만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배심원 모두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해야만 평결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혹시 내가 다른 의견이면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지만, 다행히도 오늘 모인 배심원 모두 나와 같은 의견으로 만장일치 되어 평결하였고 그에 따른 양형도 결정했다. 재판장이 배심원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양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라고 이것저것 아주 쉽게 설명해 해주신다. 판사라면 굉장히 엄하고 딱딱할 줄 알았는데 다른 모습이였다.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하고 재판부에 보내면 마지막 판결만 남는다.

판결선고를 위해 재판부와 배심원,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가 내린 평의와 양형이 재판부하고 거의 동일했다.

‘역시 사람은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재판부의 판단이 혹시라도 잘못되었을 경우 국민참여로 판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새삼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참여재판 알리기

재판을 다 끝내고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에 국민참여재판 참석이라고 사진을 올려놓았다. 나를 아는 지인들로부터 모바일 메시지와 전화가 빗발쳤다.

‘어떻게 갔냐?’, ‘신청했냐?’, ‘본인도 하고 싶다’, ‘무섭지 않았냐?’ 등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나는 하나둘 설명해줬고 모두들 부러워하거나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며 매우 기뻐했다.

그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니 회사에서 국민참여재판 참여자가 처음이라며 직원들에게 직원교육 때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설명해주고 재판과정을 설명해주면 어떻겠냐는 교육 팀의 제안도 있었다. 또한 우리 회사 연말 시상식에서도 직원 최초 국민참여재판 참여상을 주도록 하

겠다는 상사의 진담 반 농담 반의 이야기도 들었다. 내가 새삼 나라에 큰일을 한 것 같았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국민참여재판을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 줄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내 경험을 활용해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알리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평범한 공대생이 난생처음 겪었던 법정 기억

2017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우수상



낮선 곳에서의 우편물

‘핑동’

“우편물 왔습니다. 본인 맞으신가요? 서명해 주세요.”

방학을 맞아 집에서 한가롭게 핸드폰을 보던 중 전혀 생각지도 못한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게 되었다. 평소 행실이 모범적인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떠오른 생각은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였다. 그래도 아직은 나에게 행운이 있는 건지 내 죄를 묻는 재판이 아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후보자로서 참여를 요청하는 우편물이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법대생도 아니고 평범한 공대생인 나에게 법원의 풍경이라고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도 역시나 평범한 공대생의 호기심으로 인터넷이라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한참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다가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배경을 알게 되었다.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열망이 높아짐에 따라 대법원에서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연구를 한 결과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전혀 사법참여에 관심이 없었는데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열망이 높아지다니?’ 법과는 답을 쌓고 지냈던 나이에 국민으로서 부끄러움과 민망함까지 얻게 되었다. 덕분에 배심원후보자로 참여하는 날까지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2017년 8월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 참석 일이 되었다. 몸도 마음만큼이나 깨끗하게 씻고 나서 단정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현관을 박차고 법원으로 향했다. 지도는 필요가 없었다. 법원이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이란 항상 근처에 있지만, 막상 가볼 만한 명분이 없는 ‘가깝고도 먼 당신’ 같은 존재였다. 분명 집에서 출발할 때는 발걸음이 가벼워서 날아갈 것만 같았는데, 사람들이 마치 나를 죄를 지어 법원에 가는 사람처럼 볼까 봐 걱정되었던 것일까? 법원에 가까워져 오자 괜히 주위를 둘러보면서 걷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재판에 참여한다는 생각에 너무 설렌 나머지 소심한 생각이 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다. ‘아직 배심원후보자면서 김칫국 마시는 아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슨 자신감이 있는지 나는 이때부터 내가 배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법원 정문을 지나왔지만 이내 나는 굉장히 당황하고 말았다. 법원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갈 곳 잃은 어린 양처럼 이리저리 돌아다

니기 바빴다. 그렇다. 나는 길을 잃어버렸다. ‘다 큰 성인이 무슨 길을 잃어버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원을 처음 방문한 나로서는 굉장히 어려웠다. 아니면 내가 심한 길치이거나.

법정의 마술

한참을 헤매다가 해당 층에 도착하니 내가 참여할 법정만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문 앞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고 배심원후보자 번호를 받았다. 생각보다 높은 번호를 받게 되어 ‘이렇게 배심원후보자가 많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무튼, 드디어 길고 긴 여정 끝에 법정에 입장하게 되었다.

나는 잠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법정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처음이어서 내가 내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법정을 지키는 장승처럼 가만히 우두커니 서서 법정의 적막함과 무거운 공기를 느꼈다. 그 때문인지, 우편물을 받은 순간부터 법정에 입장하기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가볍게 생각했지만, 법정에 입장하는 순간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자리에 앉아 다시 법정을 둘러보는데, 뭔가 친숙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보다는 굉장히 새롭고 ‘지금까지 네가 알던 게 전부가 아냐’라고 머릿속에서 말하는 것 같았다. 친숙한 느낌을 받았던 것은 아마 드라마나 영화에서 봐오던 모습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판사, 검사, 변호인 등 각 자리가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중에서도 판사의 자리가 생각보다 높게 있어서 무언가 신성한 느낌까지 받았다.

과연 나의 운명은?

법정에서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기다리는 동안 어느새 각양각색의 배심원후보자들이 주위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궁금했다. 그러는 사이 먼저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들어왔다. 재판에 대해 준비를 하는 모습이 비장해 보여서 마치 전쟁터

에 나가는 군인의 모습 같았다. 감상에 빠져있는 동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또다시 법정문이 열리고 판사가 들어왔다. 나만 느꼈을까 공기가 무거워진 느낌이 들었다. 곧이어 국민참여재판을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인지 판사가 자세히 설명해주는 시간이 있었다.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판사의 모습에 너무 높게만 느껴졌던 벽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작은 문 하나가 생겼다.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설명을 해주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달그락 달그락’ 시끄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추첨함으로 추정되는 박스가 내 눈에 들어왔다. ‘설마 재판인데 추첨해서 배심원을 선정할까?’ 언제나 그렇듯이 설마가 사람을 잡았다. 누군가 나에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추첨해서 당첨된 적이 있었는가.’라고 물으면 나는 당당하게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이때부터 나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추첨이 시작되고 역시나 처음부터 불리지는 않았다. 그래도 아직은 포기하기 이르다고 생각했다. 판사,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할 수 있고 사건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공정한 평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변호인 측에서 기피신청을 요청하게 되었다. ‘하늘이 도와주신다.’ 내가 종교가 있었던가. 신이 있다면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다시 추첨이 시작됐고 추첨 공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내 머릿속을 시끄럽게 울렸다. ‘00번 후보자, 00번 후보자’ 그러면 그렇지. 내 번호는 뽑히지 않았다. 포기한 상태로 다시 변호인 측의 배심원을 향한 질문을 듣고 있었다. 모든 질문이 끝나고 백지일 것 같은 배심원 기피신청 쪽지가 판사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내 예상을 깨고 1명의 배심원을 교체한다는 쪽지였다. 다시 한번 시끄러운 추첨 공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한 명인데 내가 선정되겠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미 내 머릿속은 포화상태였다. 소리

가 멈추고 후보자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00번 후보자’ 내 두 귀를 의심하고 두 눈은 내 가슴의 후보자 번호를 확인하고 있었다. ‘벌떡’ 드디어 내가 뽑히게 된 것이다. 앉아있던 자리에서 5미터는 될까. 배심원 자리까지 가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나는 내적으로 이미 일과를 마친 것 같았다.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끝마치고 나를 마지막으로 모든 배심원 선정이 끝나게 되었다.

성공적인 운명

‘0번 배심원’

재판이 진행될 동안 불릴 내 이름이다. 배심원후보자에서 배심원이 된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기쁘게 느껴졌다.

이제 배심원 신분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설렘보다는 진지해져야 할 때이다. 한 달 전 집으로 온 낯선 우편물을 받을 때부터 무슨 사건인지 무척이나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그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이 왔다.

내가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의 사건은 강간미수 사건이었다. 일명 호스트바에서 일하고 있는 남직원(피고인)과 여손님(피해자)의 관계였던 둘은 호스트바에서 술을 마신 뒤 손님이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다. 손님이 취한 것 같아 직원이 같이 가서 집 앞까지 갔고 손님이 집 앞에서 한 말을 듣고 직원이 집 안까지 들어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밖에 증거자료가 없다고 했다. 사건에 대한 설명만 들어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만 같은 재판이어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다. 그런 생각도 잠시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금방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다. 여기서 신기했던 점은 배심원 신분으로 있는 동안은 외부와 접촉을 하지

못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점심 또한 법원 내부에서 한다는 점이였다. 단지 식사를 하는 것뿐인데 법원에서 식사를 한다는 생각에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식사를 마치고 오후 재판을 위해 평의실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평의실에 배심원을 위한 여러 가지 다과와 치약, 칫솔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법원의 배려에 감탄하게 되었다. 식사하고 오후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이 많아 사건에 대해 깊게 생각했다. 오전에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긴장도 되고 경황도 없어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재판 진행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재판의 진행은 판결이 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모든 절차가 대부분 하루에 끝난다는 것이다. 배심원이 자주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법원이 배려해준 것 같다.

슬슬 기다리는 것에 지칠 무렵 시계를 보니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비장한 마음으로 정해진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자 판사가 들어오고 오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신중한 선택

착석 후, 판사가 배심원석을 보고 편안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 나를 포함해 배심원이 모두 처음 해보는 경험이어서 긴장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다. 가벼운 대화가 오고 가는 훈훈한 분위기를 시작으로 검사 측부터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가 시작됐다. 검사 또한 배심원을 위해서 친절하게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한 뒤 진행하였다. 피해자의 집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특성상 피해자가 증인이 될 수 있기에 피해자에게 신문을 했다. 검사의 주장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검사의 말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래 맞아.’ 고개를 끄덕이며 설득을 당하니 검사의 증거조사가 끝나게 되었다. 내 입장에서는 모두 옳은 말 같이 느껴졌다. 다음으로는 변호인 측의 증거조사 절차가 시작되었다.

‘내가 이렇게 귀가 얇았었나?’ 나는 당황하고 말했다. 변호인의 증거조사 또한 모두 옳은 말처럼 느껴졌다. 양측 모두 맞는 말을 해서 혼란스럽긴 했지만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마음의 저울은 약간 기울어졌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도망갔다는 주장을 듣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다. 그러나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말도 중요하지만, 피고인의 말도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보고 판단하자 생각했다.

한 편의 영화 같은 재판

‘판사님 지금 변호인은 검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재판에 대한 몰입이 증가하고 결국 견잡을 수 없게 되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몰입을 위해 검사와 변호인의 언쟁이 높아질 줄 알았는데,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보고 나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검사와 변호인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언쟁하는 모습이 마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물과 불의 싸움을 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몰입하고 있었던 것 같다.

판사가 이를 제지하고 배심원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일단 한고비는 넘겼던 것 같다. 검사와 변호인 모두 피고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고 검사와 변호인의 최종변론만 남아 어느덧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다. 나는 사실 이때 내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있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평의 절차를 위해 배심원 모두 평의실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논의하게 되었다. 배심원의 모든 의견을 듣고 평결을 하게 되는데 만장일치가 되면 평결은 끝나게 된다. 나 혼자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내 의견을 표출할지 걱정도 됐지만, 평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무죄로 평결됐다.

최종판결이 진행되고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순간 피고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내 몸에서는 소름이 돋았다. 내 몸에서 왜 소름이 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나니 시간은 어느덧 해가 지고 있을 시간이 되었고 나 또한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가자 다짐했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과연 나는 무엇이 아쉬웠을까. 생각에 잠겨 터벅터벅 걷다 보니 어느덧 집 앞에 도착해있었다.

아직도 남은 여운

내 머릿속에 아직도 변호인의 배심원 선정 시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시간에 했던 말이 남아있다. ‘만약 피고인의 죄가 무죄인 것 같으면 무죄를 줄 수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나의 처음 답변은 ‘아니요’였다. 그러나 재판을 모두 진행하고 나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피고인의 자리에 있어도 분명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마지막 무죄 판결을 받고 울음을 터뜨렸던 피고인의 눈물이 거짓 눈물이 아닌 진실의 눈물이며 내 평결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는다.

만약 내가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법에 전혀 관심이 없는 공대생으로 살았을 것이다. ‘내가 왜 이제야 법정에 들어가 봤을까.’라고 후회될 만큼 좋은 경험이었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해준 법원에 감사한다.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 재판의 진행 과정을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과연 시간을 내서 법원을 찾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나 또한 평소에 법과는 답을 쌓고 지내서 우편물을 받기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큰 숲만 알고 있었을 뿐 그 속의 나무 하나하나까지는 몰랐었다. 이 수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평생 겪어보기 힘든 자부심과 자랑스러운 시간을 만나다

2018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대상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이 시간에 지하철 타는 것도 힘든데 비는 왜 이렇게 와...’ 원래도 비 오는 날을 싫어했지만 오랜만에 타는 출근 시간의 지하철은 피곤한 하루를 예고하는 듯 덥고 습해서 숨이 턱 막혔다. 웬만하면 여기까지 오고 싶지 않았는데...

‘하아, 뽕히는 건 아니겠지?’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어.”

“법원? 법원에서 내 이름으로?”

“응. 국민참여재판 선정기일 통지서? 이거 뭐니? 형사부라는데?”

어머니께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이나 무슨 안내 책자 같은 것일 거라며 안심시켜 드렸지만, 집에 오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간 내가 법원에 불러 갈 만큼 잘못된 게 있나?’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라는 말이 적혀있는 우편물부터 내미셨다.

“배심원후보자? 이건 뭐지? 신중 보이스피싱인가?”

다정한 그림이 그려진 책자와 함께 들어있는 몇 장의 종이에에는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에 이메일까지 온갖 개인정보를 적게 되어 있었다. ‘흥! 이런 거에 속을 내가 아니야! 언제 적 보이스피싱이지?’라고 생각하며 인터넷을 뒤졌다.

‘요즘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인가? 아주 찾지만 해봐, 내가 이참에 투철한 국민의식 한 번 보여주겠어.’

하지만 한참을 뒤져도 예상과는 달리 배심원을 하고 온 이들의 경험담만 잔뜩 있었다. 내가 받은 것과 똑같은 책자와 A4용지들이 사진에 담겨 있었고 이번에 뽑혔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는 글들도 다수 발견했다.

‘어? 이거 진짤까?’라는 생각에 차근차근 우편물을 하나하나 뜯어 읽기 시작했다. 특히 ‘불출석 사유서’라는 것에 적혀 있는 이유를 빠짐없이 읽었다.

나는 ‘갑자기’라는 사건을 가장 싫어한다. 의외의 일로 내 스케줄에 갑자기 변동이 생기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또 며칠을 분주해야 하는 것. 기다리고 때론 서둘러야 하는 것은 평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이다. 게다가 ‘이틀간’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읽었던 인터넷의 글들

에선 밤늦게 끝났다 정도만 있었지 이틀이라는 얘긴 없었는데…. 이틀이나 시간을 빼야 하는 거라면 정말 피하고 싶었다.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이유를 찾아야 했다. 혹은 내가 생각한 이유가 적혀 있는지 찾아야 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었지만 내가 원하는 이유는 적혀 있지도 않았고 적을 자리도 없었다. ‘내일 전화해보면 된다고 할 거야. 뭐 사람이 다들 한가한 건 아니니까’라는 생각을 하며 안내문을 고이 접어 내려놨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약간은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신중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법원의 전화번호를 굳이 인터넷으로 찾아서 전화했다. “법원 맞나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라고 기재된 우편물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보내온 우편물이 맞는지 확인 좀 하려고요.”

‘아 이런….’ 우편물이 법원에서 온 건 확실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내가 무지했구나. 배심원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하는 생각에 잠시 부끄러웠지만 일단 정말 내가 가야 한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으니 전화를 건 진짜 목적을 수화기 너머로 살짝 건넸다. “아… 네 그럼 그날 꼭 찾아가야 되나요? 일이 바빠서 그러는데…. 그런 사유는 적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그 이유로는 거부가 안 되는… 건가요?”

“아, 바쁘시더라도 국민의 의무니까요. 회사에서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웬만하면 오세요. 오셔도 다 하시는 건 아니고 후보자 중에 배심원을 선정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시면 소정의 일당 및 여비도 지급됩니다.”

“아, 네. 그리고 여기 이틀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제가 찾아본 거로는 이틀간 했다는 후기는 없었는데….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이틀을 다 가야 하나요?”

“네. 이번 재판은 거기 적힌 대로 이틀 소요될 겁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시면 이틀 나오셔야 돼요.”

사실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서 회피할 목적으로 거듭 질문을 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두 번이나 들려온 ‘국민의 의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린 데다 ‘꼭 되는 건 아니니까’라는 기대에 결국 비 오는 아침 출근 시간에 만원 지하철을 타기에 이른 것이다.

긴장감 속에 배심원으로 선정되다

‘아... 그냥 못 간다고 적어 보낼 걸 그랬나.’

후회와 기대를 오가며 법원 입구를 찾아 들어섰다. 원래 길을 잘 찾는 편인데 비 때문이었는지 웬지 이름만 들어도 먼 법원이어서였는지 우편물에 적혀 있던 장소에 도착하기까지 한참을 헤맸다. 출근 시간 지하철에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감이 잘 안 오는 바람에 서둘러 나온 게 다행이었다. 법원을 이리저리 헤매다 적혀있던 집합 장소에 다다르자 사람이 의자마다 앉아 있었다.

‘다들 나와 같은 우편물을 받고 왔나? 아니면 혹시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인가?’ 이리저리 날뛰는 생각을 가다듬으려고 일단 자리를 찾아 앉았다. ‘아직 15분이나 남았네. 시간이 되면 누가 부르러 오나?’ 낯설기도 하고 장소적 특성도 있는 터라 앉았다 일어서서 서성였다. 누가 봐도 불안한 행동을 십분 쯤 했을까? 시간이 가까워져도 아무도 모이라며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의아하고 불안해졌다. 시계는 도착시간 5분 전까지 와 있었다. ‘아! 출입구 앞에 가면 누가 안내하나?’ 목이 타서 물 한 병을 자판기에서 뽑아 손에 들고 법정 출입구라고 위에 적힌 기계 앞에 서서 신분증을 내미니 법원 보안관리대원인 듯 보이는 아저씨는 내 얼굴을 쓱 보고는 “물과 우산은 두고 올라가세요.”라고 말했다. 아마도 내 눈빛이 이미 다 말했었던 듯하다. “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을 하러 왔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도 안내를 오지 않아 불안했는데 여기로 올라가면 되는 건가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헤매는 중인

데요...” 등의 이야기를 아저씨는 쓰윽 보고 아신 것이다. 아마 어제도 엇그제도 나와 같은 사람을 보셨을 것이다.

겨우 한 모금 마신 생수를 바꾸니에 덩그러니 내려놓고 뉴스에서 보았던 어느 누군가가 지나갔던 검색대 입구로 들어갔다. 아까 내가 앉아 있던 주변의 사람이 하나둘 일어나 내가 있는 곳으로 뒤따라 들어섰다. 다들 나처럼 잘 몰라 누군가 오겠거니 하고 앉아 있었던 모양이다. 법정이라는 곳은 아무 죄가 없이 들어서도 웬지 모르게 위축되는 게 있었다. 계단을 돌아 올라가니 줄 서 있는 사람이 보였고, 법원직원 두 분이 배심원후보자가 맞는지, 우편물은 기재해서 가지고 왔는지, 혹은 나처럼 미리 우편으로 보냈는지를 리스트와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있는 게 보였다. 그리고 줄은 더디게 줄어들고 있었다. 다들 전화만 안 했을 뿐 나와 비슷한 이유로 출석한 듯했다. 두 법원직원은 위축된 마음에 위안이 될 정도로 친절했지만 벌써 조금씩 지쳐 보였다.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언제 끝나느냐는 질문부터 후보자 선정에 참여하면 주는 여비는 당장 지급되는지, 지금 당장 가도 되는지 묻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질문이 무엇이든 대부분은 질문 끝에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나도 리스트 내 이름 옆에 체크를 하고 ‘배심원후보자 00번’이라는 이름표를 받아 가슴에 달고 법원에 들어섰다.

법정은 생각보다 꽤 컸다. 의자와 책상이 붙어있는 자리 몇 개와 그 뒤로 이어진 의자들이 꽤 많았는데 사람이 처음엔 드문드문 앉더니 십 여분쯤 지나자 의자 하나 건너 한 명씩 빼곡히 앉는 게 보였다. ‘40명? 아니 더 많겠네...’ 많은 사람 수에 일단 안심했다. ‘아!!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내가 선정될 일은 없겠네’ 안심 반 불안 반이었던 마음이 점차 안심되어 갔다. 이제 생각은 ‘얼른 끝나 집에 가서 한숨 더 자고 일하러 가야지’로 옮겨가고 있었다.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내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배심원후보자가 해야 할 일, 그

리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안내 같은 얘기가 반복됐지만, 웬지 모를 긴장감에 그 내용이 기억 나질 않는다. 나이 든 아주머니, 아주 젊은 남자와 어딘지 세련된 아가씨, 풍채 좋은 아저씨까지 사람은 정말 각양각색이었다. ‘정말 무작위로 뽑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갑자기 방송이 멈추고 사람이 부산하게 움직였다.

‘저 위에 판사님이 앉는 건가’라고 생각할 때쯤 판사님이 들어오셨다. 생각보다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셨는데 말투도 다정하고 친근하셨다.

“배심원후보자 중 배심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혹시 면제사유가 있는 분은 손을 들고 말씀 해주십시오.”

여러 명이 손을 들었고 “회사 일이 바빠서요.” “해외에서 변호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을 한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이유를 말했지만, 국민의 의무는 쉽게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조용히 수공하고 자리에 앉았고 특정 직업종사자라는 이유로 면제 신청한 몇몇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사실 오기 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나는 손을 들고 얘기하지 못했다. ‘그래, 내가 뽑히지는 않을 거야’라는 생각에 애써 안심하고 있었던 그때 추천한 변호를 부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인상이 너그러운 아주머니였다. 그리고 두 번째 변호... “다음 배심원후보자 00번입니다.” “00번? 안 계세요?” “아! 저... 접니다.” ‘이런, 뺏혀버렸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일을 어찌지 정말 뽑힌 건가? 이틀이나 여기 있어야 하는 건가?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우왕좌왕하고 앞줄에 옮겨 앉아 멍해 있는 사이 내 뒤로 8명의 변호가 불리고 나는 자리를 옮겨 여닫이 나무문 안에 있던 왼쪽 책상 안쪽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배심원후보자 중 배심원 10명을 선정하는 과정은 길었다. 우선 배심원후보자 중에 무작위 추천으로 10명

을 뽑은 뒤 질문을 통해 기피하는 배심원을 고르고 그 빈자리를 다시 추천하는 방식으로 뽑아냈다. 그런데 기피하는 배심원을 뽑는 질문이 아주 흥미로웠다.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를 잘 보시나요?” “평소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요?” 등의 질문이었다.

하필 변호인이 물었던 그 드라마는 내가 요즘 빠져 있는 드라마였다. 결국 나는 질문에 대답하고 기피당할 기회도 놓쳤다. 사실 배심원을 선정하는 모든 과정이 끝나고 점심을 먹기 위해 휴정하기까지 당황의 연속이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비 오는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법원에 들어와 변호표를 가슴에 달고 앉으면서도 내가 이곳에 내일까지 있을 거라는 기대는 조금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조정해야 될 이틀간의 일과와 그 후 보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복잡함이 흘러가지 않고 있었다. 대충 앉아 있다가 여비나 받고 돌아갈 거라던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내게 꼭 뽑히는 건 아니라던 수화기 너머 법원직원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그 당시에는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이 왜 그렇게 길었는지 검사와 변호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느끼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는데 왜 자꾸 기피하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재판이 끝난 후에 그 시간이 양쪽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했고 치열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배심원의 책임감이 커지다

나를 비롯한 10명은 어색함과 긴장감에 서로 말 한마디도 못 나누고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너도나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소리 없이 표정으로 전달됐다. 몇몇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내가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이 얼굴 가득 드러나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내 역할을 인지하게 됐을 때쯤 법원은 구석구석이 신기하게 보였다. 법정 드

라마나 미국 수사물에서 보던 풍경 안에 내가 포함된 느낌이였다. 판사님들이 줄지어 들어오던 출입문과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이 마주 보고 앉은 탁자까지. 철없이 생각에 잠겼던 나는 이틀간 스케줄을 빼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내일 이틀간 배심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일정은 다음으로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연락드릴게요.”라는 문자를 몇 군데 보내고 나서 급하게 앞에 놓인 재판 자료를 읽기 시작했다. 하고 싶지 않고, 할 리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왔지만 이미 나는 이 재판의 배심원이기 때문이다. 이미 저녁 시간은 훌쩍 지나 있었다. 법원에 남은 이들은 거의 없었고 건물 구석구석이 어둑해져 있었다. 그제야 나는 우산을 챙겨 들고 법원을 나섰다. 들어올 때와는 달리 왠지 법원과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으며 지하철역을 찾아 걸어갔다.

낮 동안 재판을 보며 열심히 메모했던 내용과 용어의 의미를 찾고 또 찾았다.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찾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내가 점점 배심원의 위치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인의 가치관과 배심원의 의견은 달라야 할 것 같았다. 검사의 얘기였는지, 변호인의 얘기였는지 잘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유죄와 무죄는 법리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던 얘기가 내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원래 싫고 좋음이 명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잘 구분지어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가능한 한 준법정신을 가지려고 했지만 살면서 단 한 번도 법리에 의해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일은 없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 깊이 고민했다.

상대방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하는 법을 배우다

배심원으로서의 둘째 날은 첫째 날보다 더 무거웠다. 법원 안에서는 단체행동을 해야 했

다. 어김없이 일찍 나온 데다 어제보다 길이 익숙해져 더 일찍 법원에 도착했다. 어제는 급한 마음 때문에 보지 못했던 변호사 사무실들이 법원 정문으로 올라가는 길에 내내 이어졌다. 하나같이 명쾌한 표정의 사진들이 벽에서 벽으로 건물에서 건물로 이어졌다. ‘아, 나도 저렇게 명쾌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 명 한 명 눈 맞추며 지나치니 벌써 모이기로 한 장소에 서 있었다. 꽤 긴 시간이 남았지만, 법원 현관에서 사진을 찍을 기분조차 들지 않았다. 문득 어제 받은 “멋있네요.”라는 답문이 떠올랐다. 배심원을 하게 되어 일을 할 수 없다고 보낸 문자에 온 답문 중 하나였다. “축하드려요. 멋지시네요. 옳은 결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힘쓰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아, 축하받을 특별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잠시 부끄러웠었는데…. 그 문자에 부담감이 하나 더 부끄러움과 책임감이 하나씩 더 얹어졌다. 그냥 잠시 앉아있다 집으로 돌아가 미처 못 잔 늦잠을 마저 잘 생각이었던 것이 솔직한 내 마음이었다. 무작위 추첨으로 앉아 있게 된 것이었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축하받을 일이고 배심원으로서 이들을 보내는 일이 멋진 일이라는 생각은 미처 못 하고 곤란해만 했던 것이 후회됐었다.

‘아, 법리. 법리에 의한 정답은 뭘까….’ 오늘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이다. 내 의견으로 유죄 무죄가 결정 나는 것은 아니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니 어제와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다. 그런 무게를 나만 느끼는 건 아니었다. 평의 전에 상의는 금지라고 안내를 받아 얘기는 못 했지만 하나같이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법원 로비로 들어서고 있었다. 아침부터 이어진 둘째 날의 재판은 지루하다가 또 화가 났다가 약간 놀랍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전날보다 더 열심히 듣고 적었다. 잠깐 명확했다가 다시 갈등이 깊어졌다가 긴 하루가 내내 고민에 쌓여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메모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조금이라도 더 공정하기 위해, 합리적이 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 질문도 할 수 있었다. 직접은 아니었지만 궁금

한 걸 적어 판사님을 통해 물었다. 그러고 나니 더 뿌듯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재판은 아주 아주 길었다. 양쪽 모두 한마디라도 더 전달하려고 했고 재판과정은 계속 늦어졌다. ‘조금 일찍 끝나면...’이라는 조금의 기대를 접고도 한참을 더 메모하고 듣고 고민하며 피고인들과 마주 앉은 그 자리에 있었다.

밤 11시가 지나고 나서야 재판과정은 끝났고 이제 나를 포함한 배심원의 평의와 이를 반영한 판결만이 남았다. 재판을 모두 마치고 나서야 배심원 10명 중 포함된 예비배심원이 밝혀졌다. 긴 시간 동안 함께 재판을 지켜봤는데 의견을 밝히고 토론할 수 없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결정의 무거움에서 한 걸음 비켜있을 수 있다는 게 또 부럽기도 했다. 그 간의 시간 동안 동지애가 가득 생긴 예비배심원을 위로하고 오늘 겪었던 일련의 과정이 힘겨웠음을 서로 나누며 명쾌하고 간결한 토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 자정 전에는 토의를 마치고 판사님께 가져다 드리자 다짐하며 회의실로 들어섰다.

우리의 대화는 길었다. 자정은 이미 지났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누군가의 인생에 유죄라는 도장 하나를 박아 놓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큰 짐으로 얹어졌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쉽게, 또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결정이 어려웠다.

그쯤 되니 처음 열 명이 배심원석에 앉은 후에 판사님이 살인이나 강도 같은 사건보다 오히려 결정이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하셨던 얘기가 떠올랐다. 배심원 중에는 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도 있었고, 이전에 배심원을 경험해본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진행은 상당히 매끄러웠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진지하게 돌아가며 자기 의견을 말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모두 타당한 논리로 자신의 의견을 펼쳤다. 유죄를 주장하는 쪽과 무죄를 주장하는 쪽은 검사와 변

호인의 변론보다도 치열하게 서로의 의견을 펼치며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상대측을 설득하려고 했다.

나는 그 가운데 앉아서 ‘상대방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았다. 평소에 늘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편이었고 대부분 받아들여져 왔다. 그 때문에 이렇게 긴 논쟁은 거의 필요 없었다.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시간을 들여 듣고 있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합의는 누군가의 인생에 큰 오점일 수도,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 무엇이기에 난 다시 열심히 열정적으로 들었고 또다시 생각했다. 길게 고민했다. 중간중간 끼어들어 그건 아니지 않냐고 하고 싶었지만 그 공간 안에서, 아니 이 건물 안에는 누구의 의견도 존중하며 들어주게 되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았다. 드라마에서 보듯이 서로 중간에 말을 끊거나 수궁이 안 된다며 서로의 말을 막는 등의 다툼은 거의 없었다. 내가 더 맞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기회를 주고 그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내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고 발언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틀간 본 재판이었다.

다시 기회가 와도 국민의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드라마를 보면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판사님들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어릴 때는 ‘판사가 되는 공부도 더 힘든가?’라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그 회의실 안에서 나는 재판에 임하는 모든 법조인과 그 안에 일하는 분들이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음을 봤다. 그래서 나는 그날 하고 싶은 말들을 참았고 주장하고 싶은 말들을 더 고르고 더 정제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자정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던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결론을 정하지 못했다. 결국 세 분의 판사님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다시 토의가 시작됐다.

우리는 궁금했던 질문을 쏟아냈다. 묻고 답변을 들었다. 법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일반인이었고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에 중요 요소가 되는 사안에 대한 궁금증은 토론하는 시간 내내 쌓여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의견으로 모이지 못했고 유죄와 무죄의 의견을 모두 적어 판사님께 전하게 됐고 그 의견은 판결에 반영되었다. 판결은 무죄였다. 피고인들은 긴 시간 동안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첫 번째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에 대해 감격하는 표정으로 연신 배심원 쪽으로 인사를 했다.

밖은 어두웠고 버스도, 지하철도 이미 끊겼다. 휴대폰만 부모님과 지인들의 연락으로 끊기지 않고 연신 울려댔다. 우리는 법원에서 나오는 마지막 사람이었다. 우리 뒤에 선 법원도, 정문으로 내려가는 길도 그리고 그 앞 도로도 어두웠다. 서로 수고했다는 인사 뒤에 우리는 다시 만날 기약은 하지 않고 서로서로 택시를 타고 또는 걸어서 헤어졌다.

아주 아주 긴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웬지 모르게 뿌듯했고 기분 좋게 피곤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이틀간 겪은 배심원 경험에 대한 무용담을 다양한 이들에게 펼쳐 냈다. 그리고 그동안 내내 그 자리에 있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특히 다음 날 재판에 관련된 기사들을 접했을 땐 문자로 받았던 ‘멋지다’라는 얘기가 가슴에 확 와 닿았다. 처음엔 귀찮았고 다소 부담스러웠던 그 일이 마치고 돌아온 뒤엔 내내 보람 있고 뿌듯했다.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해낸 나를 자랑스러워했고 서로 앞다퉈 경험하고 싶어 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정말 열심히 생각하고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옳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만약 다시 한 번 내게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서가 온다면 이제는 주저 없이 출근 시간 지하철에 올라타고 가벼운 마음으로 법원의 문을 열고 들어설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배심원을 통해 깨닫게 된 아버지로서의 역할

2018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최우수상



국민참여재판과의 첫 만남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를 들어 본 적은 있었어도 나와 상관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던 나에게 배심원후보자 참석이라는 갑작스러운 통지가 왔을 때 솔직히 썩 반갑지만은 않았다. 평소 법률적 용어를 접할 기회가 적었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여 재판부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람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생각 자체만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일 것

이다. 더구나 판사, 변호사처럼 법률적 지식과 특별한 자격조건도 없는 내가 재판에 참여하여 누군가에 대해 내 의견을 말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일 수 있다.

‘내가 한 사람에 대해 유·무죄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나 자신을 돌아켜 볼 때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껏 살아오면서 과연 죄 없이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피해를 주었던 적은 없었을까?’

국민참여재판 참석 통지를 받자마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다.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고민을 떨치기 위한 노력은 재판 당일 아침까지도 계속되었다. 결국 ‘설마 내가 배심원까지 되진 않겠지’하는 생각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법원으로 옮겼다.

나는 누구?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법정에 도착 후 느꼈던 분위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숙하고 경직되었다.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의 유·무죄 판결과 그들의 근심과 걱정이 오갔을 것으로 생각하니 이러한 분위기는 내 어깨를 더더욱 짓누르고 있었다. 배심원후보자로 참여한 다른 사람 역시 무거운 표정 속에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서로에 대한 말 한마디 없이 대기하고 있는 동안 초조해 보이기까지 하며, 다들 불편해 보였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어색한 침묵을 깨는 진행자의 말이 시작되고, 드디어 배심원 선정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동안의 생각들은 잊은 듯 현재 상황에 충실한 모습이 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설마 내가 배심원이 되진 않겠지?’하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과정에 참여하였고,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재판 시작 전 국민참여재판 관련 동영상을 먼저 시청했다. 동영상을 통해 국민이라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법원 안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재판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고민했던 나에 대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또한 내가 아닌 사회를 위해, 선진적인 배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면 국민참여재판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선진적인 재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설마 내가 배심원이 되진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며 과정에 임하던 중 그 설마가 현실이 되고야 말았다. 두 번째 추첨에서 배심원이 되어 결국 배심원 자리에 앉게 된 것이다.

갑자기 막막한 두려움 속에 변호인, 피고인, 판사 모두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매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귀로 듣고 손으로 적으며 눈으로 읽어나가야만 했다.

내가 배심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니...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고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을 때 그 안에 앉아있는 지금 내 모습이 과연 맞는 것인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잘하는 행동인지에 대한 생각은 더 의미가 없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 한 사람에 대해 내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후회 없는 배심원의 임무를 완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다행히 원활한 진행을 위한 판사님의 말씀 한마디 속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으며 공판절

차, 평의절차 등 모든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평정심을 되찾아가며 사건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고 이를 결론 내기 위한 생각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생각의 깊이를 더해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덧 내가 배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변호인과 검사의 오고 가는 말 한마디에 피고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었고, 증인의 말 한마디에 내 생각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더구나 이들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과 답변으로 한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며, 대화 속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확정적이지 않은 정보에 대해 객관적인 상황판단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생각과 노력을 쏟을 수 있었다.

쉽지 않은 배심원의 역할

어느덧 평의절차가 진행되고 평의 진행을 통해 배심원의 생각을 알아가는 과정과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토론은 계속되었다.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될수록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는 과정이 눈에 보일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될수록 어느덧 배심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 생각과 의견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으며, 때론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더 많은 논리와 요소를 제시하며 설득해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했다. 반나절 길지 않은 시간은 나의 삶에 반평생 이상 길게 남을 것 같다.

양형 토의를 비롯한 평의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판결선고만이 남은 상황. 법정 안은 적막감이 감돌며 판사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모두 귀를 기울였다. 재판 진행 과정의 한 일원으

로 참여했던 나 역시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되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었다. 드디어 모든 판결이 끝나고 함께 했던 배심원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과 인사를 나누며 법원 밖을 나오는 순간 내 눈앞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 들어갔을 때와는 달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일원으로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새로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TV 뉴스로만 보던 재판과정을 내가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자신의 길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죄스러운 맘이 한구석에 자리 잡았으며, 아직도 우리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씁쓸한 사건 현장에 대해 알게 되어 가슴 한편이 무겁기도 했다.

배심원을 통해 세상의 무게를 느끼다

처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끝나면 마음이 후련할 줄 알았지만, 막상 끝나고 나왔을 땐 가벼운 마음보단 책임감의 무게로 인해 더 성숙한 어른이 된 듯했다.

서로에 대한 입장과 상황을 들어보고 이를 통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고, 토의를 통해 서로 간의 입장을 알아갈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축소판이라 생각됐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의 나 자신에 대한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자신감은 앞으로 무슨 일이든 해 나감에 있어 많은 용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역할

내 나이 38살 두 아이의 아버지이지만, 이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과정을 통해 아직 더 배워야 할 것, 더 이뤄나가야 할 것, 자식들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배심원 임무 수행을 통해 받은 감사장으로 인해 아직 재판을 잘 모르는 10살, 8살 두 아들에게도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판사, 변호인, 검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이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을 알아가고, 나아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경험은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국민참여재판은 단순히 현재 올바른 사회를 위해,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의 참여로 완성된 선진화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지금 우리 세대만이 아닌 내 아이들과 같은 다음 세대에게도 올바른 법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지금 나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었고 정의로운 자신을 위해 다시 한번 뿔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었다.

끝으로 고생하신 재판 관련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짧은 글을 마치고자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꽃 피울 국민참여재판

2018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우수상



귀하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

일터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 그러나 마음만큼은 가벼웠던 7월의 어느 퇴근길. 우편함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포스트잇을 발견하였다. 뭘까?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다행히 과속이나 신호위반 교통 딱지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 보다 더한 감정의 후폭풍이 밀려 오니, 바로 법원에서 송달된 등기였다. 그 조그마한 포스트잇은 말하고 있었다.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데 내가 없어서 다음에 다시 가져다주겠다고. 뭘까? 34년 살아생전 경찰서도 심지어 파출소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나에게 법원의 통지서라니 웬 말이나. 순간 겁부터

덜컥 났다. 그렇게 깨끗하다고 자부해 왔는데, 아니면 그동안 잘 감춰왔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단 말이나. 집으로 들어왔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다음 날 등기를 받기도 전에 우체국에 전화를 걸어 등기번호를 조회하였다. 조회하자마자 바로 법원에 전화를 걸었다.

나: 법원에서 등기를 하나 보내셨던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법원직원1: 사건번호 2018고합### 관련된 내용이네요, 아마 선정기일 통지서일 겁니다. 관련 부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선정기일 통지서? 나의 상식이 부족한 걸까? 영어도 못하는데 이젠 한국어 능력도 떨어지는 것일까? 도무지 무슨 통지서인지 감이 안 왔다.

법원직원2: 사건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 2018고합### 입니다

법원직원2: 고합이면 형사재판에 관련된 사안이니 법원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심장에 전류가 흐르듯, 덜컥하는 마음에 이내 초조해졌다. 내가 형사재판에 연루되었다니. 대체 내게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 몸은 출근하여 회사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법원에서 변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우체국엔 내가 집에 도착할 시간을 미리 통지하였기에 드디어 집배원로부터 법원등기를 건네받았다. 그런데 그때 내 두 눈에 들어오는 드라마틱한 한 문장이 있었

으니 ‘귀하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

하… 순간 맥이 풀렸다. 그럼 그렇지 34년 내 깨끗한 과거에 그렇게도 스스로 확신이 없었던 말인가? 다시 한 번 여생도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다짐과 함께 조심스럽게 등기 봉투를 뜯었다. 형사부 선정기일 통지서. ‘귀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후보자이므로 선정 기일 당일 09:00까지 위 장소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원후보자? 일단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한 게 아니니 안도의 한숨을 내뿜었지만 ‘배심원후보자? 이걸 또 대체 무슨 시추 에이션이더냐?’

선정기일 통지서에 이어 내 상식에 대한 허점에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다. 그 순간 바로 현대인의 백과사전인 인터넷을 뒤지고 탐독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나의 배심원후보자 여정은 시작되었다.

888(8월 8일 출생한 나, 8명의 배심원에 뽑히다)

법원 출석 전 회사 인사팀에 선정기일 통지서를 전달하였다.

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되어 그날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국가 정책 관련된 건인데 공가처리 가능할까요?

인사팀 직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 그게 뭐죠? 일단 확인 후 연락드리죠.

회사 인사팀은 얼떨떨한 반응을 보였다. 회사 인사팀도 모든 제도를 아는 건 아닐 테다. 아마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았던 그 날의 나와 같이 현대인의 백과사전 인터넷을 열심히 뒤지기 시작했을 터이다. 몇 시간 뒤 연락이 왔다.

인사팀 직원: 000씨,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는 우리 회사 창립 이래 처음이네요, 이에 따른 공가 신청 내역이 따로 없어서 대표이사님까지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결론은 공가처리하시고 저희 회사를 대표하여 배심원 역할 잘 부탁드립니다.

가뜩이나 ‘0’씨의 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회사에서 나 하난데, 이번 사례로 회사에 단단히 이름을 날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넓지 않은 두 어깨가 무거워졌다.

드디어 재판기일, 법원에 들어섰다. 법원의 상징 ‘정의의 여신’이 눈에 들어왔다. 눈을 가린 채 한 손엔 저울을, 한 손에 법전을. 나도 오늘 하루만큼은 ‘정의의 남신’이 되어보련다.

법정엔 이미 많은 배심원후보자들이 귀한 시간을 쪼개어 출석해 있었다.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성별의 사람. 뭔가 정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는 듯한 인상이 들었다. 순간 우리나라 위상이 이 정도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뽐뽐 뽐어졌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도에 관한 간단 동영상을 시청 후 인터넷을 통해 입수했던 8명의 배심원을 선정하는 배심원 추첨이 시작되었다. 나는 원래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내 생일이 팔뽕, 8월 8일이기 때문이다. 나의 이런 8에 대한 애착이 통했던 것인지 공교롭게도 나의 배심원후보자 번호가 가장 먼저 호명되었다. 그리고 이어진 검사, 변호인의 간단한 질문 사항에 내 뒤로 호명 받은 다른 배심원후보자들과 함께 거수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였고, 결국 그렇게 난 배심원 선서문까지 읽어 내려가며 배심원후보사에서 배심원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잦은 절도 전과가 있는 70대 고령의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 같은 절도 행각을 벌이다 그를 경찰에 인계하려던 보안요원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고, 경찰서에 도착하고 나서는 경찰관에게 폭언,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

다. 이후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검사, 변호인의 지난한 신문이 이어졌고, 피고인의 최종 의견 진술까지 이어졌다. 시간은 어느덧 오후 6시를 넘어섰으며, 배심원 역시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여러 이해관계자의 기억과 판단에 의존해 자신만의 판단 근거를 열심히 설계하고 있었으리라. 이어서 바로 국민참여재판의 꽃인 배심원 평의가 진행되었고, 물론 여기서도 난 배심원 대표로 뽑혔다. 이날만큼은 난 뭐든지 '내가 제일 잘나가'였다.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걸작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구성은 40~50대로 보이는 남녀 각 한 분, 30대 후반의 남자 한 분, 30대 중반인 나, 20대로 추정되는 여성 두 분과 남성 한 분, 그리고 40대로 보이는 여성 예비배심원까지 총 8명으로 편성되었다. 임의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건강한 국민이 평의실에 동그랗게 모여 앉아있으니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배심원 대표로 뽑힌 나의 주재로 본격적으로 평의가 시작되었다. 다들 재판에 집중하느라 피곤했을 법도 한데 신중하게 본인들의 생각을 뽑아내기 시작했다. 다양한 배심원으로 구성된 만큼 모두의 생각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마치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에 출연 중인 배우들이 되어 서로를 설득하는 역할극 속으로 들어온 기분이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평의에 대입하여 가늠하기에는 과할 수 있겠으나,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정된 공간에서 논리적으로, 때로는 감성적으로 차근차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또 그를 편견 없이 들어주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주는, 강요가 아닌 양보를 선택하는 평의라는 작은 세상을 경험해보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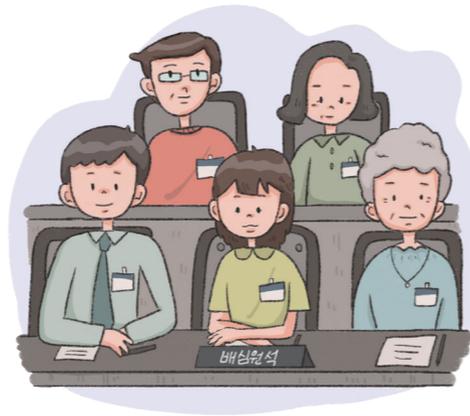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던 70대 고령의 남성은 최종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전문 법조인도 아닌 배심원이 내린 평결이지만, 정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냈고 모여진 결론이었다. 그리고 판사님 역시 국민 배심원단의 평결에 손을 들어 주었다. 물론 누군가의 앞날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었기에 결코 마음이 가볍지 않았다.

누군가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고령의 할아버지에게 너무 가혹한 형벌을 내린 게 아니냐고. 하지만 그 형벌을 내리기까지 그 치열했던 평의의 현장을 살펴보지 않은 이는 모른다. 유죄라 믿어 의심치 않는 근거들 속에서도 피고인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법망의 허점은 없는지, 법률 용어의 기준은 어떻게 정의되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당당하게 판사님과 같은 사람 대 사람의 위치로 재판장에게 설명을 요청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단순히 재판을 경험했다고 보기에는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중압감과 긴장감이 제법 뒤따랐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현상을 일방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었다. 물론 나 역시도 법조계 쪽에 깊은 관심이 없기도 했지만, 이제라도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내가 겪은 경험을 다른 일원들에게 글로나마 공유하고 싶다. 더 발전되고, 살기 좋은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꿈꾸며, 국민참여재판의 역사가 건강하게 지속되길 간절히 바라본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2018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장려상



법원에서 온 통지서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듯한 수험 생활 중 법원에서 통지서가 도착했다. 시험 한 달 전,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법원에서 온 서류는 부담이었다. 재판이라는 글자는 피하고 싶은 글자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열망이 올라왔다. ‘이 시험에서 아무것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의 소리가 뛰쳐나왔다. 어리지 않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 수험생활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나를 여유 없이 만들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되었다는 점이 한편으로 신선하고 신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국가가 내게 지우는 짐 같

기도 했다. 다행히 출석은 시험이 마치고 다음 주였다. 시험 후라는 점에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질문표를 보냈다.

시험 전까지 애써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궁금증을 눌러 놓으려 했으나 혹시나 신종 보이스 피싱이 아니냐는 지인들의 농담 섞인 우려에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형사소송에만 국민참여재판이 있다니 걱정이 더 늘었다. 형사재판은 살인, 강도 등의 잔인한 사건이 우선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보니 매우 개방적인 좌석이던데, 피고인이 본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다고 해서 복수심을 키운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지?’

소심한 마음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번 재판은 이틀로 예정되어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문이 나를 더욱 떨게 만들었다.

‘도대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무서운 사건의 재판이기에 이틀이나 진행되는 거지? 나는 피고인과 눈을 마주쳐도 괜찮을까? 한국은 의외로 좁은데...’

소심함과 두려움 속에서 재판을 기다렸다.

따뜻한 법정

8월 말, 비가 마구 쏟아지는 어느 날 아침, 법원에 첫발을 디뎠다. 온몸이 젖은 채로 법정에 도착해 보니 추적을 또 해서 뿔혀야 배심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잘하면 일찍 갈 수도 있겠는걸’하는 생각과 ‘여기까지 왔는데 재판을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 배심원이 되었다. 형사재판이라 하면 살인, 강도 등만 생각했는데 명예훼손 관련 재판이라는 점에 부끄럽지만 한숨 돌렸다. 그 외에도 처음으로 재판에 참여하는지라 장소도 절차도 모든 것이 생경했는데 법원직원들의 친절하고 안내와 판사님의 따뜻한 유머가 함께 한 재

판 진행에 마음이 놓였다. 딱딱하고 근엄하고 냉정하리라는 법정에 대한 나의 편견과 선입견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을 하면서 스르르 사라졌다.

역사적 인물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라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적 기본권의 충돌이 쟁점이었다. 재판 일주일 전 헌법과 국사 시험을 본 나에게는 무척 흥미로운 재판이었다. 그저 책과 문제집의 활자로만 접하던 내용들이 바로 내 눈앞에서 재판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사실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일 통지서를 처음 받았을 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강했다. ‘국가가 이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가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국민의 시간까지 뺏는 것인가’라는 생각과 ‘나 같은 법 비전문가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소송 참가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 그리고 ‘배심원 활동 이후 받게 되는 소정의 참가비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까지 했더랬다. 법, 재판이라는 개념이 일상생활과 너무 멀게만 느껴졌고 법이라는 테두리가 일반 국민과 동떨어지게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참여한 이틀 동안의 재판으로 나의 관점은 크게 바뀌었다. 법이라는 분야가 그리고 재판이라는 과정이 일상생활과 밀접함을 넘어서서 일상의 삶, 그 자체임을 느꼈다. 일상의 삶에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다툼, 충돌에 대한 사회의 규제와 틀을 제공하는 것이 재판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다. 다른 세계의 특별한 사람만이 재판의 당사자가 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공동체가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방향에 내 의견이 포함되고 이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내 결정이 포함되는 것이었다. 이는 엄청난 긍지를 느

끼게 했다. 의무감과 부담으로만 그리고 시간 빼앗김 등으로만 느껴졌던 배심원 활동은 국민의 의무임과 동시에 엄청난 권리이기도 함을 이번 배심원 활동을 통해 절감했다. 또한 배심원 역할은 내가 진정 대한민국의 구성원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정해져 있는 길을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가슴 벅찬 경험이었다.

치열하고 뜨거운 평의실

권리에는 의무와 부담감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배심원 역할 또한 그랬다.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뿌듯함과 함께 타인의 삶이 내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엄습했다.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재판 일정으로 인해 많이 지쳐 보이는 양측의 모습을 보며 재판과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수월하진 않았다. 첫날의 재판은 밤 10시에 마쳤다. 예상보다 늦게 마친 첫날 재판으로 인해 일정이 어그러진 배심원도 있었고 모두들 많이 피곤해했다. 그때까지도 미처 예상치 못했다. 다음 날 재판은 새벽 두 시 반에 마치리라는 것을... 하지만 이러한 피곤함 속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회 각계각층의 분들과 이틀 동안 온종일 함께한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높아지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이틀 동안 밥을 사 먹어야 했다며 자식들을 걱정하시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소송 양측 주장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뻑뻑하게 기록해 놓으셨던 두 아이의 어머니, 회사 때문에 지방에 홀로 생활하시며 가족과 떨어져 사는데 이번 재판 덕분에 가족들을 서울에서 이틀 동안 더 볼 수 있다며 행복해하신 중년의 신사분, 7개월 된 아이 보느라 인생이 행복하다는 아기 아버지 등 그 모든 분들이 새벽 2시 반까지 평의실에서 설전을 벌였다. 열심히 자신의 생각을, 논거

를 치열하게 내놓는 주위 배심원분들의 사명감과 열정에 뭔가 내 심장이 울컥했다. 왜냐하면 평소 자신의 이익이 결부되거나 창출되지 않는 일에 사람이 열정을 보이거나 노력하는 모습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은 내게 신선한 충격이자 벅찬 감동을 주었다. 그 늦은 시간 온몸으로 전해지는 피곤함을 이겨내며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를 펼치기 위해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구나, 우리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방향성에 조그마한 깃털 하나 또는 바람 한 점이라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니 밀려오는 피곤함에도 이 권리를, 이 기회를 허투루 날려 보내고 싶지 않았다. 잘 해내고 싶었다.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내 힘을 보태고 싶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경험은 당연하지만 평소 잘 생각하지 않던 사실을 일깨웠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재판을 마치고

내 인생에서 특별했던 이들이 지나갔다. 재판 첫째 날과 두 번째 날 모두 늦게 끝나서 내 몸도 마음도 너무 피곤했지만,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배심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법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다. 재판과정 동안 법원 직렬은 아니지만, 공직을 꿈꾸는 나에게 공직자의 활동을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는 내가 공직자가 되더라도 생각보다 더 힘든 업무가 기다릴 수 있다는 예감을 주었고 그러하더라도 꼭 내가 원하는 공직자가 되어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데 작고 미흡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재판을 마친 다음 날 재판에 대한 기사를 보며 생각했다. 나에게 특별했던 그 이들이 잘 잊히지 않겠구나.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래오래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로,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습니다.
-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2.

예비배심원,
그림자배심원,
배심원후보자 이야기

잃어버린 꿈을 찾다

2016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우수상



작년, 나는 휴학을 감행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다. ‘휴학을 가려고 하니, 고시를 준비할 거니, 그것도 아니면 왜 굳이 휴학을 하려고 하니?’ 나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휴학하는 것조차 스펙을 쌓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 나는 어쩌면 ‘돌연변이’가 아니었을까.

그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학교에 다니면서 전공과 꿈의 확신보단 의구심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몰아매고 괴로워했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학문에 대한 흥미도 떨어졌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방향의 시기였음에도 휴학을 결심하게 된 건 심리적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일 년이라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공부보다는 먼저 ‘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었다. 우연히 접한 법 과목에 흥미를 가지고 법조인의 꿈을 키워나갔던 고등학생 때의 그 감정과 포부를 다시 찾고 싶었다. 부모님의 뜻과 다른 진로와 전공을 선택했던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고 싶은 마음도 컸다.

법조인의 꿈을 되찾기 위해 그림자배심원 참여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던 때에 함께 공부했던 학회 선배의 추천으로 ‘그림자배심원 제도’에 대해 알게 됐다. 배심원 제도가 무엇인지는 뉴스 기사와 전공 서적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으나 ‘그림자’라는 수식어는 매우 낯설게 느껴졌다. 본래 배심원 제도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배심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님에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를 정하여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선배의 말이 처음에는 다소 의아하게 들렸다.

그림자배심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니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방식과 평결의 내용이 재판상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국민참여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하고 모의로 유·무죄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살면서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되고, 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배심원이 되는 것은 흔한 경험이 아니지 않은가! 자기소개서 한 줄을 채워 넣기 위한 스펙을 쌓는 차원이 아닌, 재판의 흐름을 이해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법조인의 길을 꿈꾸는 학생들이 한 번쯤은 거쳐가는 소위 ‘관문’같은 개념이라 하니 나 또한 신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배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그림자배심원을 신청하게 됐다.

법원에서 문자와 메일로 안내받은 날짜에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하러 법원으로 향했다. 혼자 가는 것은 처음이어서 헤맬까 봐 걱정했지만, 사전에 자세하고 친절할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수월하게 찾아갈 수 있었다. 법원으로 들어가 검색대를 통과하니 ‘그림자배심원 대기 장소’ 안내판이 나를 반겼다. 출석하고 해당 재판의 자세한 사실관계가 기재되어있는 인쇄물을 받아 읽을 수 있었다. 신청할 때에는 간략한 사건 내용과 죄명만을 알 수 있었는데, 실제 배심원과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미리 내용을 알고 재판을 참관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공판절차가 보통 하루 안에 이루어지므로 증인의 수나 법적 쟁점에 따라서 재판의 진행 시간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다.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의 선고까지 내려져야 비로소 끝이 나는 재판이기에 하루가 꼬박 걸리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참가하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이 그림자배심원의 대다수를 차지했고, 재판에 관심이 많으신 중년의 여성분들도 눈에 띄었다. 배심원이 아님에도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아서 나 또한 재판 참관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졌다.

재판을 참관하기에 앞서 배심원으로 선정되기까지의 시간 동안 배심원 재판 홍보영상을 보고, 공보판사님의 재판에 대한 소개와 주의할 점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기 편하도록 사건의 주요 쟁점과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어 나가는지를 알려주셨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인 만큼 배심원을 선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대기시간이 길어졌지만, 공보판사님의 배려와 친절함으로 그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었다.

정의를 실현한 것 같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

대기시간이 끝나고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장소를 옮겼다. 그림자배심원의 자격으로 방

청석에 앉자 맞은편의 배심원이 눈에 띄었다. 그들을 보니 전공 수업시간에 배웠던 ‘OJ 심슨 사건’이 떠올랐다. OJ 심슨은 돈으로 변호인단을 대거 고용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흑인이라는 점을 이용했다. 그는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적인 수사’라는 논리를 펼쳤는데, 흑백갈등이 극심했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12명의 배심원 가운데 9명이 흑인으로 구성되었던 것이 맞물려 결국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다. 나는 이러한 사례를 배우며 배심원 선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고,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어떻게 배심원을 조화롭게 선정할지 궁금했다. 변호인 측과 검사 측에서 심혈을 기울여 선정한 배심원은 연령대가 다양해 보였다. 남성보단 여성이, 젊은 분보다는 나이가 드신 분들의 비중이 더 높아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배심원이 선정되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없는 그들이 합리적인 판결을 도출해내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의문이 가지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배심원의 선서,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과정을 거친 후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진술이 이루어졌다. 뒤이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재판장의 쟁점 정리, 검사와 피고인의 입증계획 설명이 진행되었다. 전공 서적에서나 보았던 국민참여 재판의 과정을 직접 보게 되니 매우 흥미로웠다. 놀랐던 점은 배심원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이 쉽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가며 재판을 진행해나간 점이 었다. 배심원의 혼란을 막고자 파워포인트나 사진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대체하며 설명하는 등의 모습을 보며 배심원이 어려운 법적 쟁점을 잘 판단할 수 있을까 재판 시작 전에 의심했던 것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음을 깨달았다. 물론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이러한 과정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인의 입증계획 설명을 마지막으로 잠시 휴정을 하여 점심을

먹고 휴식시간을 가진 뒤 다시 오후 재판을 방청하였다. 오전 재판 때의 입증계획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가 이루어졌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재판부와 배심원단이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역시도 파워포인트와 사진 자료, 화상기 등을 이용해 배심원단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재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증인신문에서의 진실 공방이었다. 그 사건은 물적 증거가 없고 단지 목격자이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다. 사건의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증인신문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이었다. 게다가 수회의 절도행위로 징역형을 살다 나온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기소당했다는 사실은 그가 정말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증인과 시종일관 자신의 무죄이며 결백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두고 배심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매우 궁급했다.

침예하게 대답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문이 끝난 뒤 검사,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의 최종변론이 이루어졌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끝까지 처음의 주장을 유지하며 배심원으로 하여금 각각 3년의 구형과 무죄임을 관철하려 하였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하였다.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저는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를 반복해서 되뇌는 피고인을 보니 조금은 짝한 마음이 들었다. 그가 정말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도 됐다.

종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평의·평결 절차 전 재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셨다. 유·무죄의 판단은 재판상 객관적으로 제시된 증거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죄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면 피고인이 유리한 쪽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주시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들을 상기시켜 주셨다.

참관을 마치고 배심원의 평의·평결과 최종적인 양형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림자배심원도 별도로 모여 함께 사건에 대해 모의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심원 대표를 선출하고 공보판 사님의 도움을 받아 함께 자유롭게 재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같은 재판을 방청했음에도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법적 배경지식이 달라서인지 유·무죄 판단부터 의견이 많이 갈렸다. 아무래도 피고인에게 7회의 동종의 전과가 있었고, 출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로 기소를 당했다는 점이 미덥지 못하게 느껴지기는 했다. 그렇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물론 나는 배심원이 아니지만, 재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려 애썼다. 사건의 유죄를 확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웠고,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해자였던 증인이 신문에서 횡설수설한 점이 그의 말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배심원의 평의·평결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판결선고를 듣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다들 늦은 시간까지 재판을 참관하느라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 나 또한 지치고 힘들었지만, 직접 재판을 진행하시는 재판장님을 비롯한 판사님들과 실제적 진실을 위해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려 노력하는 검사님, 피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치는 변호인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몰라 온종일 불안에 떨고 있었을 피고인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 무죄였다. 배심원은 유죄를 내릴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과 검사의 입증이 부족했음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그 순간 피고인의 표정은 매우 밝았다. 경찰의

손에 이끌려 법정을 나서던 그는 배심원을 향해 허리를 숙이며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 그를 바라보는 배심원의 눈빛도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정의를 실현한 듯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 신기했다.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노력하는 법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

모든 그림자배심원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공보판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판결이 나올 때마다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 일반 국민은 정의롭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비난을 쏟아내지만, 법원은 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하면서 그것을 느끼셨다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나는 그림자배심원으로서 재판을 참관하기 이전에 뉴스를 볼 때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땅히 감내해야 할 책임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경우를 보았을 때 분노를 느끼고 법원의 판결을 마냥 비난했었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은 더 독립적으로 행해지지 않으므로 개혁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막상 법원에 가서 직접 재판을 방청하고 판결이 도출되는 과정을 지켜보니 법원은 일정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인 형량을 부과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다.

그림자배심원으로서 재판을 방청하기 전에 대학교 전공 과제로 친구들과 법원 견학을 간 적이 있다. 법원 견학과 방청은 비공개 재판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재판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홀로 재판을 참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장시간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쉽게 지루해지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힘들었다. 자의적으로 재판 방청을 하러 가도 뉴스로 사건 내용을 접하는 것과 별다를 것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림자배심원 제도는 그저 재판을 방청하는 것과는 달랐다. 사전에 원하는 재판을 선택하고 실제 배심원이 된 것과 같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미리 알고 재판을 볼 수 있었으며,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법원 측에서 배려해준 덕분에 편하고 안락한 환경을 누릴 수 있었다. 모든 재판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로스쿨 재학생이나 사법연수원생이 아니면 쉽게 접할 수 없는 경험인데 법조인의 꿈을 가진 학생들과 국민들을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법원 측에 감사하는 마음만 들었다.

막연히 법조인의 꿈을 꿨던 어린 고등학생에서 이상과 현실을 자각해야 하는 때가 왔을 때 방황했던 나는 그림자배심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금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정진해나가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림자배심원에 5번 더 참여한 후 서울고등법원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을 때는 직접 재판장 역할을 맡아 모의 형사재판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올해 대학교에 복학하여 형사소송법 강의를 들을 때는 그림자배심원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토대로 쉽게 공부할 수 있었다. 국선전담변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그런데도 지독한 슬럼프를 극복하게 해준 그림자배심원 프로그램을 통해 느꼈던 정의감은 오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재판은 끝났지만, 참여는 끝나지 않았다

2016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장려상



07:00 - 혼란스러운 아침

어젯밤 살짝 열어놓은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에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사실 이 떨림이 추위 때문인지 조금 뒤에 있을 재판의 참여에 대한 초조함 때문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는 동안 법과 얽힌 나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씻어내지 못했다.

‘이혼전문변호사라는 꿈을 갖게 된 이유는 부모님의 이혼이었다. 부모님 간의 불화가 시작된 지점은 아버지의 법정 공방 패소였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나는 법을 경외한다. 가족을 와해시킨 법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나의 꿈이기에 존경하기 때문이다.’

일련의 의식들이 머릿속에 떠다니는 가운데 샤워를 끝마쳤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서둘러 나가야 했지만, 나는 옷을 고르는 데 한참의 시간을 보냈다. 과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활동할 당시 재판 방청을 자주 했는데 그때 정장을 꺼내 입었던 것이 어렴풋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나 이외에 방청객 중에서 정장 입은 사람은 재판에 관련된 법조인 분들밖에 없었다. 이번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적당히 단정한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가는 도중 밤새 정리해 놓은 노트를 펼쳤다. 그림자배심원 신청 홈페이지에서 죄명이 ‘특수절도’라는 것만 명시되어있을 뿐 그 외 사건 내용이나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그 때문에 노트에는 특수절도가 무엇인지,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배심원 안내서, 법률용어 등을 검색·참고하여 정리한 것들이 있었다. 사건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많이 긴장되었지만 정리한 내용이라도 암기하기 위해 조그마한 목소리로 지하철에서 계속 웅얼거렸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항목에서 첫 번째,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두 번째는…”

노트에 흘겨 쓴 법률용어들이 나에게 닿지 않고 공중에 흩어지던 중에 드디어 법원에 도착하였다.

10:00 - 판사님과의 만남

그림자배심원 안내판을 보고 들어온 법정에는 20명 남짓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할 인원이 모여 있었다. 얼마가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긴장하던 중에 판사님께서 들어오셨다. 울

해로 3년 차 판사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다. 먼저 꺼내신 말씀은 우리가 이곳에서 몇 시간을 대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 본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는 한창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었다. 배심원을 고르는 절차도 상당히 복잡해 보였다. 임의로 뽑은 백여 명의 배심원후보자 중 출석에 응하는 배심원후보자는 보통 20~40명 정도이며, 변호인과 검사의 배심원 질문 및 기피절차를 거쳐 최종 배심원이 결정된다고 하셨다. 바로 지금 그 20~40명 중에 본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선정하고 있는 것이었다.

법에 관심 있는 나는 배심원에 선정됐다고 하면 발 벗고 나갈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직장이나 학업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재판이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일이 잦아 참여하지 않기도 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배심원이 선정되는 과정을 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배심원의 신상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정 과정이 장시간 지체되는 것은 변호인과 검사 측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배심원을 고르기 위해 각자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대기하는 동안 판사님께서 배심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주셨다. 피고와 피고인의 차이,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국민참여재판 특징 등에 대해서였다. 기억에 남는 것은 판사님께서 우리에게 던졌던 질문이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기를 바랄까요?”

모두가 아닐 것이라고 답했지만, 답은 그와 반대였다. 사법부는 참여 제도를 도입했으니 그것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좀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는 것이었다. 판사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금일 진행하는 재판에 대한 간략한 사건 내용, 쟁점 사항, 관련 판례, 진행 순서 등이 적혀있는 인쇄물을 읽어 보았다.

11:00 - '모두진술'로 시작된 오전 법정

배심원 선정 과정이 모두 끝나자 우리는 본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이동하였다. 평소에 방청했었던 법정과 비교할 수도 없이 넓은 대법정은 마치 교회의 내부처럼 보였다. 그래서인지 굉장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판사님께서 입장하셔서 자리에 앉자 재판이 시작되었다. 판사님께서 배심원에게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지 설명하신 후에는 배심원의 선서가 이어졌다. 비록 그림자배심원이었지만 나는 본 배심원인 것처럼 마음속으로 함께 선서했다. 그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그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이 이어졌다.

드디어 오전 재판의 가장 중요한 절차인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모두진술 및 입증계획이 진행되었다. 본 재판의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각자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였다. 인상 깊었던 점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법에 대해 무지한 사람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용어와 해설로 차근차근 설명하고자 했던 점이다. 앞서 인쇄물로만 피상적으로 재판에 대해 알고 있었던 내용이 그제야 깊게 와닿기 시작했다. 양측의 모두진술이 끝나자, 판사님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 후 쟁점에 관해 설명하셨고, 특히 배심원이 주목해야 할 점을 강조하셨다. 그러면서도 긴장되고 딱딱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가벼운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였다.

오전 재판이 끝난 후 점심시간 동안 오늘 재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기 위해 반복해서 인쇄물을 읽었다. 그중에서도 이해가 잘 안 되었던 것이 바로 강도와 준강도의 차이였다. 오후 재판에서는 바로 준강도임을 입증하여 강도에 준하는 처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따라서 그 점을 중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관련 판례들을 읽어보고 비교하다 보니 법정에 입장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13:30 - 같은 증거에 대해 엇갈리는 관점

검사 측의 증거조사로 본격적으로 오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사람의 핸드폰을 절도하여 성급히 나가던 도중에 목격자에게 발각된 후 사우나 관리인을 밀치고 도망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의해 체포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사건들을 저질렀지만,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사건에 있었기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피해자인 사우나 관리인을 밀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절도행위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에 따라 준강도인지 절도 및 폭행치상인지 나뉘는 문제였기에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담은 CCTV가 핵심적인 증거로 채택되었다. 검사님은 실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주었고, 직접 CCTV를 큰 화면으로 출력하여 사건의 정황을 알 수 있게 도왔다.

CCTV를 확인했을 때 육안으로도 피해자가 세계 밀쳐져 강한 충격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3분간 그 자리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이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서 재생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는 배심원에게 감정적으로 불쾌하거나 연민을 느끼게 할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검사님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가 3분간 항거불능이었다는 점에서 체포의 공격력이 억압되었다고 말하며 이는 준강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 하였다. 또한 양형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 피고인이 비록 만 19세이긴 하지만 성인이라는 점, 가출청소년이라는 불우한 환경을 이해하지만 강제추행의 전과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 배심원에게 그것들을 참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변호인 측의 증거에 대한 진술도 설득력이 상당히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은 체포의 면탈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밀치게 된 것이며, 그것은 그 상황에 부딪친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올 본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단순히 밀친 것이 살인죄보다 더 가중한 강도치상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배심원에게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였다. 나도 변호인의 말을 듣고 과연 저 상황에서 벌어진 범죄가 살인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였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14:45 - 증인신문과 관용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곧바로 증인신문으로 넘어갔다. CCTV 상으로만 보던 피해자가 직접 출석하여 증언하기 시작하였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번갈아 가며 질문을 할 때마다 CCTV 화면을 반복해서 재생하였고 이를 보는 피해자의 모습은 너무 힘들어 보였다. 특히 배심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란히 옆에 섰을 때 증인은 너무나도 무력하게만 느껴졌다. 상당히 차이가 났기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나는 피고인이 무의식중에 밀었다고 해도 충분히 증인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밀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비록 사건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그 사건에 대해 상기하는 것조차도 여전히 고통이 되는 듯하였다. 가해자의 한순간 행동이 피해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 증인이 그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초를 겪었던 점에 대해 눈물을 보이면서 토로하던 도중에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때 나는 놀랐다. 그렇거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상황에서 관용의 모습을 보여준 증인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없었다.

16:45 - 세 사람의 최후변론

증인신문 이후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진행되었다. 검사님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며 왜 강도치상의 죄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배심원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 후에는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증인의 처벌불원 등을 참고하여 3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다음에는 변호인의 최종의견 차례였다. 핵심 주장은 살인죄보다 가중한 강도치상죄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고, 피고인의 감경요소들을 강조하며 배심원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였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는 시간이 오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미리 써 온 글을 읽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뉘우치고 있으며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가 한 기억에 남는 비유는 수직으로 자라지 못하는 나무는 옆에 지지대를 세워주면 똑바로 자란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기도 했다. 나와 나이가 비슷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오랜 시간 있을 것을 생각하니 여러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리고는 재판장님이 최종적으로 배심원에게 오늘의 재판에 대해 요약하고, 평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사건의 쟁점, 증거, 적용할 법률과 판단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셨다. 그 설명을 끝으로 배심원과 우리 그림자배심원은 제각기 재판에 대한 평의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17:30 - 배심원 대표로서 주재한 평의

심리 종료 후 총 20명의 그림자배심원은 A조와 B조로 10명씩 나뉘어 다른 장소에서 모의 평의를 진행하였다. 얼떨결에 배심원 대표를 맡게 되어 평의 과정을 주재하였다. 배심원 대표로서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모든 배심원에게 동일한 발언권을 부여하고, 중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개인에게 차례로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이끌었다.

먼저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각자의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지만, 최대한 만장일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그 후에는 양형에 대해 토의를 하였다. 내가 속한 A조 모든 인원은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혔고, 이에 반대하는 인원도 있었다. 서로 간의 논쟁이 계속 이어져 다른 조보다 모의 평의가 늦게 종료되었지만, 그 과정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를 정도로 뇌리에 새겨져 뜻깊은 기억으로 남았다. 최종 모의 평결서를 판사님께 전달하자 판사님이 놀라시면서 A조와 B조의 모의 평결이 같다고 하신 말씀에 나 역시 놀라웠다.

19:00 - 재판의 끝, 참여의 시작

모든 평의가 다 끝나고, 최종 판결을 보기 위해 다시 법정으로 이동하였다. 재판장님은 배심원의 평결을 십분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셨다. 그 판결은 놀라우리만큼 그림자배심원의 모의 평결과 그 논리적 사고 과정이 유사했으며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했다. 그때 판사님께서 아침에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다.

“배심원의 평결이 최종 판결과 동일하게 가는 경우가 90% 이상 된다.”

그 정도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에게 재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그들만의 판결에 이르도록 하여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재판의 절차가 전부 끝났을 때는 벌써 해가 한참이나 떨어진 뒤였다. 그때야 그동안의 긴장감과 피로감이 일시에 느껴지기 시작하였다. 처음 법원에 도착했을 때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을 알지 못했다. 하나의 재판이 하루 내내 진행된다는 것에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그 걱정들이 무색해지기까지는 얼마 가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림자배심원 참가에 대한 감사장을 받았을 때 모조리 날아갔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참여에 대해 진지한 고찰을 해보게 되었다.

내가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배심원으로서 해당 재판에 참여하던 순간만이 참여인가? 아니었다. 배심원으로 인터넷에서 신청 버튼을 누르고, 재판과 관련된 사항들을 직접 찾아보고 정리할 때부터 참여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사실 참여는 처음부터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그림자배심원 활동을 계기로 깨닫게 되었다. 내가 내 친구들에게 은연중에 던진 말들, 주위 사람에게 주장한 나의 의견들, 그 작지만 수많은 말들은 여론으로 수렴되어 기존의 법에 영향을 미치고, 그 법은 결국 피고인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나는 평소에 법정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참여는 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법은 우리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존재였다. 우리 옆에서 우리의 의견을 듣고 지속해서 판결에 반영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이를 깨달은 후에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나 자신이 재판에 참여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창피를 당할 것이 두려워 정장을 꺼내 입고 방청을 나갔을 정도로 재판에 대해 그만큼 무지했던 내가 이제 조금은 그것에 대해 엿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재판은 끝났지만, 나의 참여는 끝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국민과 사법의 연결고리

2018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우수상



법정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국민참여재판. 극 중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가기까지의 일화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배심원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지는 크게 조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심원 자리에 앉은 이들은 실제로 치열한 경쟁률을 뚫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형사사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배심원은 관할구역 내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되므로 운이 좋아야 일생에 한 번 될까 말까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변호사 등 일부 관련 직업군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법조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안고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나로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될 것을 언제까지나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마침 법원에서 ‘그림자배심원 프로그램’에 참가할 인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학교로 보내왔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참가 신청을 완료했다.

법을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 그림자배심원 신청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그림자배심원은 배심원처럼 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하고 유·무죄에 대한 모의 평의·평결과 양형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배심원석이 아닌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참관하고, 재판부가 모의 평결 내용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의 과정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배심원과 다르다.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 사법부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사람, 그러나 아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이들에게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국민참여재판 당일 오전 10시 30분 법정에서는 배심원 선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바로 옆에 있는 법정에 들어가 그림자배심원 사전 교육을 받았다. 배심원을 위한 사건 설명서를 교부받고 국민참여재판 안내 비디오를 시청했다. 실제 배심원도 같은 내용의 설명서를 받는다고 했다. 비디오 시청이 끝난 후 배심원 설명서를 살펴봤다.

배심원 설명서는 법적 지식이 직업 법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배심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의 및 평결을 할 수 있도록 사건의 핵심 쟁점, 판단 법리, 관련 판결, 증거 법칙, 증거관계 등을 매우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배심원이 공판 중 수시로 설

명서를 살펴보며 증거를 평가하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정말 숙고하여 만든 자료라는 것이 느껴졌다.

이날 사건은 도내 유명 상권의 대형 건물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피해자는 지하에서 스크린야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어머니와 아들이었다. 이들이 미납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운영위원장이 수도 및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발생한 업무방해죄 사건이었다. 피고인이 실제로 수도와 전기를 차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사건의 쟁점은 관리비를 미납했다는 사실만으로 수도와 전기를 차단하는 것이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였다. 80여 개가 넘는 증거 목록, 그리고 검사와 피고인 측 증인이 총 8명이나 되는 등 시시비비를 다투는 복잡한 사건이 예상되었다. 교부받은 배심원 설명서가 길어 읽지 않도록 도와줄 나침반이 될 터였다.

그림자배심원 사전 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배심원 선정절차도 마무리되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후보자들이 아쉬운 표정으로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여율이 낮아 문제라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참여에 대한 열기가 상당한 것이 느껴졌다. 설레는 마음으로 방청석 제일 앞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재판부가 입장하고, 배심원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선서하였다. 긴장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국민을 위한 법원의 문턱 낮추기 노력 돋보여

선서 이후 재판장의 모두설명이 이어졌다. 배심원 설명서를 활용하여 공판절차, 배심원 유의사항,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원칙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짧은 시간 안에 배심원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의 비유를 사용하여 쉽게 설명하는 재판장의

소통 능력에 크게 감동하였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에 대해 설명할 때였다. 재판장은 “집에서 귀증품이 없어졌는데, 현관의 CCTV를 살펴보니 이웃 주민이 집에 들어왔다 나가는 장면이 찍혀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이웃 주민이 도둑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모든 증거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판단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을 때 유죄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매끄럽게 전달하였다. 이 밖에도 재판 내내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이끌어 나가는 재판부의 모습을 통해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이후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의 모두진술이 이어졌다. 배심원이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출된 증거를 적절하게 제시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사용하여 진술하였는데, 영화나 드라마에 나타나는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두진술이 종료되자 재판장이 한 번 더 증거조사 절차 및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집중해야 할 법리와 쟁점에 대해 신속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이 이후의 과정을 이해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부의 배려가 돋보였다.

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다시 법정에 들어섰다. 오후부터는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검사 측 증인 중 피해자 모자는 일관되게 관리비 미납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다. 자신들은 고지받은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였고 그에 대한 영수증도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반면 변호인 측 증인은 해당 호수에 관리비가 장기 미납되어 있었고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상반된 증언만 가지고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오랜 기간 상가건물을 둘러싼 많은 이들의 갈등과 오해를 짐작할 만했다.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이들은 배심원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여론이나 감성에 휘둘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우려가 무색할 만큼 이날 배심원의 역량은 탁월했다. 배심원은 우리네 이웃과 다를 바 없는 증인들의 격양된 목소리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는 듯 보였고 때로는 검사와 변호인의 것보다 더욱 정곡을 찌르는 질문들을 재판장의 입을 빌려 증인들에게 던지고는 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관리비 납부 문제,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부의 판단이 자주 충돌하는 부분인 어디까지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과 경험을 형사재판절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증인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무언가를 빠르게 필기하는 배심원의 모습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보다 더욱 극적으로 느껴졌다.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

증인신문 내내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시기적절한 증거를 프로젝터를 통해 배심원에게 보여주고, 증인에게 체계적인 질문을 던져 증언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거나 공고히 하였다.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는 진실들이 하나둘 등장하며 상가 관계자들 간의 오해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감정싸움과 돈 문제가 얽히어 복잡해 보였으나 고소와 재판까지 오지 않고도 양보와 이해로 충분히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배심원의 안타까운 표정에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이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엿본 순간이었다. 아울러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생활상 분쟁을 법치의 눈으로 재구성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다. 더불어 검사와 변호인이 최선을 다해 배심원을 설득하는 모습, 재판부가 배심원과 함께 진실을 판단하려 고민하는 모습을 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었다.

마지막 증인신문까지 마치자 오후 7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이후 서증조사, 피고인신문, 평의 및 평결, 판결선고까지 긴 여정이 남아 있었다. 충실한 심리 그리고 실제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하루 내에 평의와 선고까지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이었다. 재판부 측에서는 이날 재판이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될 수 있으므로 기숙사 통금이 있는 학생들을 배려하여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바로 모의 평의와 평결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처럼 실제 재판과 별개로 융통성 있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점이 그림자배심원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재판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것이 제기되고 있으며, 재판부는 정해진 시간 내에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의 수, 증거의 수, 쟁점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미리 소요 시간을 예측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모의 평의 및 평결은 모의 평의실에서 판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되었다. 실제 배심원의 평의 및 평결 절차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배심원 대표를 선출한 뒤 평의를 진행하였다. 총 7인의 그림자배심원 중 6인이 유죄, 1인이 무죄 의견을 내어 만장일치 평결은 나오지 않았다. 유죄 의견을 낸 6인은 사건의 세부 내용을 따져 보았을 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과거 판례 역시 비슷한 사안에서 관리비 미납으로 생명권에 직결되는 전기와 수도를 차단한 것은 업무방해죄이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무죄 의견을 낸 1인은 상가 관리 규약에 관리비 미납 시 단전단수 조치가 명시되어 있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다. 유죄 평결 이후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배심원 설명서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양형 의견을 제시하여야 했다. 7인의 그림자배심원 중 유죄 평결

을 내린 6인은 최대 30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까지 다양한 양형을 제시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한다.

사법과 국민의 진정한 상호작용을 경험

이번 그림자배심원 참여를 통해 무엇보다 실제 배심원이 엄중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하려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 당일 장시간 법정에서 고군분투하며 얻은 육체적 피로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인생에서 단 한 번 수행할 수 있는 배심원 역할을 통해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아울러 비전문가인 배심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판 내내 배심원의 관점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재판부의 모습을 통해 사법과 국민의 진정한 상호작용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배심원 제도를 통해 사법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욱 민주화되고 국민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에서 배우던 법 지식, 특히 형사소송법 규정 및 공판중심주의의 모든 원칙이 재판에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법의 숭고함을 지키려는 사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언제쯤 한번 선정될 수 있을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그림자배심원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없다면 재판 방청을 통해서도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의 관심과 사법부의 노력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국민의 삶에 더욱 확대되어 장차 사법부와 국민, 그리고 국민과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국민참여재판이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세상이 민주적으로 변했음을 명확히 느끼고 온 하루

2018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우수상



어느 이른 오전 시간 우체국에서 날아온 우편 봉투 하나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 학원에서 사회 교과를 가르치기에 누구보다도 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정작 한 번도 법원이라는 장소를 가보지 못한 저로서는 흥분을 느낄 만한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늘 말로만 앵무새처럼 법을 이야기하던 제가 직접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기회.

이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배심원 선정 자체에 기쁨마저 느꼈습니다.

당일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하여 법원으로 가는 길, 늘 화창하던 하늘은 갑자기 비를 뿌리기 시작하여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초조함마저 느끼게 하였습니다.

상상했던 법정과 너무 다른 모습에 놀라다

9시 30분까지 도착하라는 통지서.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하니 입구에서 직원분이 마치 영화에서처럼 금속탐지기로 몸을 검색하셨습니다. 순간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야릇한 기분마저 생겼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먼저 와 계신 분들이 약 25명 정도 보였고 TV에서와 같은 엄숙한 분위기를 예상했던 저는 의외로 굉장히 자유분방한 분위기에 놀라움을 가졌습니다. 옆 사람이랑 담소하는 모습, 자유로이 전화통화도 하시고, 경위님에게 질문도 격의 없이 하는 모습이 좀 새로웠습니다. 정각 10시가 되자 판사님 세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여성판사님 두 분과 남성판사님 한 분 이렇게 총 세 분이셨습니다. 교과서 내용대로 '아 세 분이니 합의부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놀라운 점은 판사님의 말씀. 영화 속, TV 속 판사님들의 권위주의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생각했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여성판사님이신 점도 생소했으나, 마치 옆집 아주머니같이 편안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궂은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했다는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절차에 대해서 옆 모니터를 이용하시어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검사님과 변호인 소개 후 배심원 선정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자리가 소중한 의무라는 것을 부각해주셨습니다.

곧이어 무작위 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25명 중 8명의 배심원후보자들이 선정되어서 검사님 및 변호인과의 문답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문답 자체가 아주 딱딱하고 법률에 관계된 이야기인

줄 알았으나 우리 주변의 이야기에서 본인들의 경험담까지... 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배심원후보자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예전에는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법조인들의 모습만을 보아왔기에 너무나 낮은 광경이었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질문하셔서 친구 간 대화 같았습니다.

특히, 변호인과 검사님이 본인 자신들의 음주습관까지 밝히면서 배심원후보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먼 나라 사례가 아닌 지금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사례들에 대해서 쉽게 풀어 설명해 주시면서 각자의 의견을 묻는 모습에서 법조인들에 대한 거리감을 완전히 떨쳐버렸습니다. 항상 법에 관계되신 분들과는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말을 아꼈던 배심원후보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심지어는 후보자들이 검사님과 변호인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장면도 연출이 되었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학창시절을 보낸 저로서는 늘 딱딱해 보이던 법원 풍경이 바뀌었음을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상하관계가 아닌 같은 눈높이를 맞춰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높은 분들이라 생각했던 검사님, 변호인들이 같은 입장에서 배심원의 속 깊은 이야기까지 들어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위에 앉아서 지켜보시던 판사님들의 모습 또한 의외였습니다. 배심원후보자들이 다소 엉뚱한 이야기나 과격한 이야기를 할 때는 같이 웃어주시고, 바라보시며 함께 한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후보자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2시간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너무 오래 진행되어 지켜보시는 분들 힘들지 않으나, 즐기고 싶은 분들 있으실 텐데 조금만 참으시면 빨리 마무리할게요.”라는 배려의 말씀은 생소하기까지 했습니다.

2시간여 정도 지난 뒤 검사님 및 변호인과 배심원후보자들의 질의 시간을 마치고 배심원 선정절차 중 기피절차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저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TV 드라마에서는 대부분의 판사님이 검사와 변호인을 법대 앞으로 불러서 의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간 법정에서는 판사님께서 “이번에는 배심원후보자 기피신청을 받겠습니다.”라는 말씀 후에 변호인과 검사님을 부른 후에 직접 법대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세 분의 판사님 모두 다 내려오셨고 같은 높이에 서, 변호인, 검사님, 세 분의 판사님, 이렇게 다섯 분이 서 계셨습니다.

“검사, 변호인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라는 광경만 보던 저는 민주화가 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96년부터 시작한 강사 생활에서 강의 소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많은 법정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선택’부터 ‘동네 변호사 조들호’를 거쳐서 최근에는 ‘친애하는 판사님께’까지 법에 관계된 내용의 드라마나 예능은 빠지지 않고 보아왔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제가 본 것은 이론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마치, 수능시험장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인터넷 검색으로 수능을 본 사람의 수기만 보고서 “수능 시험장 분위기는 이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단 한 번도 실제 재판이나 배심원 선정절차를 본 적도 없으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설명해 온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법원임을 절감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느끼었습니다. 미국을 글로 아는 것과 미국을 직접 가 본 것은 분명 다른데 저는 가보지도 않고 가본 척을 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법정의 모습, 재판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방청할 수 있는 재판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등등 단 한 번도 직접 눈으로 볼 생각 없이 입으로만 떠들었던 제가 많이 반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저를 새로 태어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두려웠던 법정이라는 공간이 이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공간이라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젠 주변에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혹시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된다면 반드시 참여하라고. 반드시 참여하여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느끼고 오라고.

대한민국의 법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느끼고서 많은 사람에게 신뢰받는 법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법원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 말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배움은 끝이 없다는 말처럼 실제 재판과정 전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달라진 법정의 모습에 신선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은 경험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해 다시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곁에서 국민을 보호해주는 파수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멀기만 했던 법원이 성큼 내 곁으로 다가왔던 국민참여재판

2018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장려상



다소 늦은 나이에 대학생이 되어 어느덧 법학과에서의 3학년 1학기를 끝마치고 맞이한 여름방학. 그 당시에는 전공에 대해, 앞으로 준비해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느라 여러모로 복잡했다. 처음부터 분명한 소신 혹은 명확한 목표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까? 법은 시험 기간 동안 잠시 담아두었다가 시험지를 제출하는 순간부터 곧바로 사라져버리기 바빴고, 학생 신분임을 밝히면 으레 듣는 전공이 무어나는 질문엔 무색한 기분까지 들곤 했다.

그렇게 학업에도 충실하지도 못하고 방황하던 무렵, 나는 과 동기 동생의 권유로 우연히 로스쿨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졸업한 로스쿨 선배들을 초대해서 마련한 설명회에서 선

배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이를 계속해서 자신의 미래로 이어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는 심히 대조적으로 느껴졌다. 또한, 저학년 때부터 전공에 대한 확신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한 선배의 후기나 열의 가득한 재학생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누군가에겐 소중한 시간이 나에게 목표 없이 그저 그렇게 흘러보낸 시간이었겠구나’라는 자책의 마음과 동시에 ‘그런데 나는 도대체 법이 무엇인지 알거나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떠올랐다. 그렇게 경험해 보지도 못한 법을 가지고 하는 답답한 고민을 품으며 지내던 나날 중, 나는 법원으로부터 뜻밖의 등기우편을 받아보게 되었다.

때마침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되어 날아온 등기우편

“귀하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라고 적힌 봉투 안엔 내가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질문표와 불출석사유 신고서 및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책자가 동봉되어 있었고, 출석해야 할 장소와 날짜가 기재되어 있었다. 내가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되었다는 것과 그 시기적절함에 신기해하며 인터넷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관한 사항을 검색해 보았다. 이미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되어 법원에 다녀온 사람의 꽤 많은 포스팅이 올라와 있었다. 많은 수의 사람 중에 과연 내 번호가 호명될까? 궁금해하며 나는 다가오는 재판 날짜를 기다렸다.

국민참여재판 출석 당일 및 배심원 선정 과정

드디어 재판 출석 당일이 되자 나는 아침 일찍 재판이 열리는 법원을 향했다. 후에 법원직원분이 말씀해주시기에는 배심원후보자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법원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들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정하는 방식이라 하셨다. 덕분에 많이 먼 거리는 아니었으나 초행이라 길을 조금 헤맨 탓에 정시에 딱 맞춰서 가까스로 도착하게 되

었다. 법정 안에는 이미 배심원후보자 번호가 기재된 명찰을 단 많은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나 역시 명찰을 달고 빈자리에 착석했다.

곧이어 시작된 배심원 추첨에서 판사님은 해당 재판 혹은 법과 관련이 있는 직무 혹은 친 인척이 있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손을 들라 하시고는 일일이 그 내용을 묻고 이를 참작하여 추첨을 진행하였다. 총 8명의 배심원을 뽑는 자리에서 세 번째 추첨을 진행하던 중 불린 번호는 내가 달고 있는 명찰에 적힌 번호였고, 내심 진짜 배심원으로 선정될 줄 몰랐던 나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배심원석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다.

총 8명으로 이루어진 배심원석이 채워지자 검사와 변호인의 배심원 최종 선정과정이 이루어졌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배심원의 대략적인 성향을 알아본 후 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이유부 기피신청뿐만 아니라 무이유부 기피신청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검사와 변호인의 경우, 해당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의견을 내는 배심원을 선정하고자 하므로 재판의 내용을 근거로 추상화한 질문을 던진다거나 혹은 이와 관련 있는 법언, 예를 들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격언에 대한 배심원의 생각을 묻는 방식으로 배심원의 견해를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나 역시 차례가 되어 내 의견을 밝혔고 그렇게 최종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재판절차에 참여하게 되었다.

공판절차

1번 배심원이 대표로 배심원 선서를 하면서 재판이 시작되자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정 안에 있다는 것이 실감 나면서 괜히 긴장됐다. 진행하는 사건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과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한 간략한 소개가 끝난 후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진술과 사건의 주요 쟁점 및 입증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촬영본을 스크린을 통해 여러 차례 돌려보며 확인했던 것과 사건이 일어난 주변 장소와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 측에서 직접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직접 장소를 검색하며 재판 내용의 이해를 도우려고 한 점이 기억에 남았다.

점심 및 휴식시간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자 재판을 잠시 멈추고 배심원은 법원직원의 안내에 따라 법원 내의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법원직원은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 중 배심원끼리 재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의견을 나누어선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당부하였다. 나를 포함한 여러 배심원은 생소하고 낯선 이번 경험을 남기기 위해 법정을 제외한 법원의 모습이 나 식당에서 나오는 메뉴를 카메라로 찍기도 하였다. 외부의 햇빛을 통해 비추어지는 법원 엠블럼이 근사하고 멋있었다. 따로 마련된 휴게실에서는 간식거리들과 더불어 식사 후 사용할 양치 도구까지 배심원의 인원수에 맞게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난 뒤에 법원직원의 안내에 따라 다시 법정에 들어섰고, 다시 시작된 재판 과정에선 꽤 긴 시간이 소요됐다.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과정에서 양측은 치열하게 대립했고 재판이 진행될수록 배심원을 기피하는 과정에서 던졌던 질문의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최종 의견 진술이라는 길고 긴 시간이 끝난 뒤 드디어 예비배심원의 발표가 있었다. 배심원은 다시 평의실로 가서 유·무죄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혀 토의를 통해 만장일치의 의견을 도출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호명된 이는 바로 나였다. 판사님은 ‘오랜 시간 재판에 참석했는데 토의과정을 참석하지 못해서 아쉽지 않으나’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네주셨다. 나 역시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배심원이 내린 평결이 내가 마음속으

로 생각했던 결과와 같았기 때문에 아쉬움을 덜 수 있었다. 재판의 최종 판결선고 과정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점은 판결의 결과와는 별개로 억울해하는 피고인의 마음을 들어주고자 하는 재판장의 인간적인 면모였다.

배심원 평의 및 양형 토의 결과를 기다리며

나는 형법 시간에 국민참여재판을 배우면서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고 들었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 참여권을 형식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배심원 평의 결과를 기다리며 법원직원에게 궁금했던 사항을 물어보니 친절하게 답변해주었다. 최종 판결이 배심원의 평결에 반할 때에는 그러한 판결이 도출된 논리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간단한 요깃거리로 샌드위치를 제공해주었다. 모든 과정이 끝나자 법원에서 감사패와 기념품을 받았는데, 국민참여재판의 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배심원을 세심하게 배려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기념품에 새겨진 문구를 보니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짧은 감상

재판의 원고 혹은 피고가 되어 재판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 이외에 일반 국민이 법원을 가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나 역시 그렇기에 법원을 떠올리면 엄격하고 보수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은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서두에 나왔던 고민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재판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나니 강의시간에 듣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되고 열심히 하고자 변해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긴 시간 재판이 진행되면서 분명 체력소모도 있고 정신적으로 지치기도 했지만 돌아서서 생각해보니 분명 그만큼의 가치가 충분한 특별한 경험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의 ‘암행어사’, ‘그림자배심원’ 출도야!

2018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장려상



어릴 적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암행어사 박문수의 영웅담을 읽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고을의 사정을 살피고, 부정을 목도한 즉시 번쩍이는 마패를 꺼내 “암행어사 출도야!”를 외치는 정의의 사도. 마치 그림자처럼 그 존재감을 드러내진 않지만 모든 수령이 그를 의식하여 스스로의 행실을 바로잡도록 하는 강력하고도 매력적인 존재가 바로 암행어사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시절, 그 매력에 푹 빠져서 할아버지께서 삼천 원에 사 오신 가짜 마패를 손에 쥔 채 동네를 누비며 암행어사 행세를 하고 놀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된 요즈음에도 나는 종종 암행어사 박문수를 떠올리곤 한다. 하루가 멀다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각종 비리를 접할 때마다 포졸들을 이끌고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버리는 그 통쾌함이 그리워지기 때문이다. 어쩌면, 법조인의 진로를 희망하는 내 심리의 기저에 그러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카드 뉴스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보도하는 ‘대법원 영블로거’로 활동하는 나에게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그림자배심원’이라는 기회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다. 비록 감투도 쓰지 않았고 마패도 패용하지는 않았지만, 배심원의 ‘그림자’로서 마치 암행어사와 같이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법원의 재판을 방청할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림자배심원’ 제도를 통해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을 방청하여 과연 법원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불신이 합당한 것인지, 혹은 필요 이상으로 과장된 우려인지를 암행어사의 심정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다.

그림자배심원 제도는 2011년부터 시작된 모의 배심원 프로그램이다. 배심원이 아닌 이들에게 배심원처럼 재판을 방청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배심원과 달리 자신이 그림자배심원임을 밝히지 않아도 되고, 유·무죄를 토의하는 모의 평의와 평결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재판부의 판결에 참고자료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혹자는 그림자배심원이 재판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용한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림자배심원으로서 하루를 온전히 법원에서 보낸 나의 생각은 다르다. 비록 재판부의 결정이나 배심원의 평결을 좌우하지는 못했지만, 그림자배심원으로 활동하며 ‘나 자신’이 지닌 편견과 오해를 수정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림자가 기억하는 두 가지 그림

내가 그림자배심원으로서 방청했던 사건은 아주 단순한 상해 사건으로 보였지만 막상 살펴보니 그 쟁점이 아주 복잡하고 애매했다. 오전 10시경에 시작한 재판이 열두 시간을 훌쩍 넘긴 자정이 다 되어서야 선고와 함께 막을 내렸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재판을 방청하는 내내 몸은 다소 피곤했지만, 내가 그동안 법원에 대해 지녔던 고정관념과 편견이 하나씩 부서지는 신선한 충격으로 인해 매 순간순간이 인상적이었다. 크게 인상 깊었던 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배심원단과 방청객을 향한 재판부의 ‘배려’가 감사할 정도로 충분하였다. 사실 그림자배심원 방청을 위해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에도 나의 마음속에는 ‘말이 국민참여재판이지 사실은 판사 생각대로 결론이 정해져 있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재판 아니야?’ 하는 의구심이 계속됐었다. 그러나 재판의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배심원단이 합리적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와 여러 법원직원들의 배려가 끊이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방청하기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절차를 친절히 설명해주신 것은 물론이고, 검사와 피고인 측 변론이 계속되는 내내 배심원단으로 하여금 감정이나 주관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시각으로 판단할 것을 환기해 주시는 모습에서 그 진정성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변론이 완료된 후 모의 평의와 평결을 진행할 때 전문지식이 부족한 그림자배심원단을 위해 판사님께서 양형 판단에 필요한 기준과 구체적인 법률 지식을 알려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판사님의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배심원단이 자율적으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양형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보조해주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허울 좋은 겉치레로 국민을 끼워놓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을 만들어가기 위해 관계자들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소 회의적이었던 나의 시각을 바꿔놓을 만했다.

둘째, 재판부의 '신중함'과 '인내심'이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사실 요즈음 드라마나 영화에서 비치는 판사들의 모습은 획일화되어 있다. 굳게 다문 입술에 고압적인 눈빛,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오만방자함이 바로 그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엉터리 사자성어가 마치 진리처럼 인식되는 현상은 사실 상당 부분 미디어에서 표현하는 이러한 이미지에 기인하는 것일 테다. 물론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림자배심원으로서 내가 접한 재판부의 모습은 이와는 정반대였다. 거의 20범에 달하는 전과를 지닌 피고인이 다소 논지에서 벗어난 주장을 한 참 펼치기도 하고,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이 법리가 아니라 배심원의 감성에 호소하는 변론을 이어나갈 때, 사실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그림자배심원은 진이 빠진 채 재판부를 원망하기도 하였다. '저런 이야기도 굳이 다 들어줘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변론 한마디, 증거 영상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집중하는 재판부의 신중함이 든든하기도 하였다. 방청석에 앉아 있는 내가 만약 검사석 혹은 피고인석에 위치하였을 시에 충분한 발언권과 항변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이다. 고압적으로 변론을 끊고, 무지에서 나오는 발언을 깔보는, 거만하고 인내심 없는 판사는 그날의 법정엔 존재하지 않았다. 다소 논지에서 어긋나고 감정적인 호소일지라도, 충분한 인내심을 발휘하여 수용한 뒤 신중히 판결을 내리고자 애쓰는 재판부의 모습만이 그날 그림자배심원이 목격한 그림의 전부였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림자배심원으로 완성되는 국민참여재판!

물론 아쉬운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오후 4, 5시쯤에는 모든 일정이 완료될 것이

라는 기존의 고지와 달리 이를 훌쩍 넘겨 자정이 다 되어가는 동안 예상되는 추가 소요 시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아쉬웠다. 그림자배심원이 이후의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옥에 티를 제외하고는 내가 경험한 '그림자배심원' 제도는 아주 유익하고 뜻깊은 체험이었다. 많은 국민이 그러하듯이 기존에 내가 법원에 대해 지니고 있던 불신과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우리 시대로 날아와 이날의 재판을 그림자배심원으로서 방청하였다면, 품속에 지녔던 마패를 꺼내지 않고 고이 넣어둔 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발길을 재촉하시지 않았을까?

물론 이날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므로 나의 경험을 모든 재판으로까지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아직은 재판부의 판결에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시해 줄 국민 배심원단이 존재하지 않는 재판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배심원' 제도가 꼭 필요한 이유이다. 아까 설명하였듯이, 그림자배심원은 본질적으로는 일반 방청객과 그 역할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 다만 암행어사처럼 그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국민들 스스로의 시각과 자율적인 토론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기회를 제공받았을 뿐인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라고 해도 방청객은 항상 존재할 수 있다. 국민 각자가 '그림자배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법원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국민참여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에 있어 재판부는 마치 '암행어사'의 시선을 늘 의식하는 듯한 자세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려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를 목격하고 경험한 국민이 오늘의 나처럼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고, 이 선순환이 계속된다면 무너진 우리 사회의

‘공적 신뢰’가 회복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림자배심원 제도가 앞으로도 활발히 운영되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을 완성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참여재판 참여방법

배심원	그림자배심원	방청
<p>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는 역할</p>	<p>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재판의 전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의견을 내는 역할</p> <p><small>※ 다만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내용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과정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small></p>	<p>배심원, 그림자배심원이 아니어도 재판 방청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참여 가능</p>

신청절차

- 배심원**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 그림자배심원**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그림자배심 참가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청**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국민참여재판 일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자세히 알기



3.

변호인, 방청객 이야기

나의 첫 국민참여재판, 17시간의 기록

2016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우수상



저는 2015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36살의 늦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는데, 로스쿨을 다니면서부터 기존 재판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인 조정과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름방학에 ‘YMCA 조정 캠프’에 참가하여 직접 조정을 해보고, 그림자 배심원으로 2012년과 2013년에 국민참여재판에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 가을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국선전담변호사님의 추천으로 함께 국민참여재판 변호인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자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방청석에서 지켜본 적은 있었어도 실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니 설

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특수강도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기에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선전담변호사님께서도 제가 느끼는 부담을 아셨는지 재판결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사기록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고 조언해주시며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수사 기록을 복사하여 검토해 보니,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혼한 전 부인에게 수시로 찾아가 경제적 도움을 받다가, 전 부인이 더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칼로 위협하여 돈을 강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고소인 겸 피해자인 전 부인의 증언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은행에서 돈을 찾는 CCTV 화면 사진,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타고 다닌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과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내놓은 것은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이용한 위협에 대해서 따지면서 물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전화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검찰의 증거에 의문을 품다

처음 수사기록의 증거들을 봤을 때만 해도 저 역시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여러 차례 검토해 본 결과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은행의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차를 주차시킨 곳을 조사해보니 경찰 지구대에서 매우 가까운 장소였고,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이후 곧바로 피고인이 운영하려고 봐두었다는 PC방을 함께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범죄사실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시한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녹음한 전화 통화 녹취록을 듣고는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고 갑자기 나타나서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부정하지 않으면서 ‘미안해’라고 계속해서 사과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단 이 사건 이후 통화가 몇 개 더 있었던 녹취록에도 대부분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구박하면 피고인이 사과하는 대화만 있었습니다. 이혼 후 수차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음에도 매번 실패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반복되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구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특수강도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라기보다는 부부싸움으로 들렸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후 교도소를 방문해 피고인에게 왜 이혼을 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냐고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와는 경제적 이유로 위장이혼을 했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이후에도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미술학원도 함께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미술학원의 수입을 모두 피해자가 관리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요청에 응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칼 이야기를 했을 때 왜 부인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 피고인은 “이혼 후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도움과 함께 매번 구박을 했는데 제가 반박하면 할수록 구박이 더 심해져서 언제부터인가는 아예 반박하기를 포기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식이며, 칼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딱히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피고인이 수습 장의 진술서를 변호인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아들을 출산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인 아내를 포기

하고 아이라도 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끝까지 아내를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려서 기적같이 피해자와 아들의 생명을 모두 구할 수 있었던 이야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잘못으로 하나뿐인 아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가 거짓말로 피고인을 고발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를 사랑하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심을 알았기에 교도소에서 나가게 되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홀로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록 검토와 피고인의 접견을 마친 저와 국선전담변호사님은 피고인의 특수강도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당시의 행적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번 반복된 반면에 피고인은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계속된 경제적 도움 요청에 지친 피해자가 더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기 위해 평소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박에 반박하지 않고 사과를 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칼 이야기를 하고 이를 녹음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국선전담변호사님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우선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반복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압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 스스로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시인하게 유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끝까지 시인을 하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혼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고도 피해자를 위해 희생하였던 일들, 그리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배심원단에게 이 사건이 특수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의 단순한 다툼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밤이 늦어도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준 배심원단에게 감동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절차로 시작되었고, 이번 재판에서 채택된 증인은 피해자 한 명뿐이었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는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신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을 100개 넘게 준비하였고, 그로 인해 재판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단 선정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저녁 시간에 용무가 있거나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집중해서 변론을 듣기 곤란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심원단에서 제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선정 계획을 세웠지만 늦은 시간까지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배심원후보자들이 알게 되면 배심원단에 선정되는 것을 꺼려서 배심원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걱정과는 달리 배심원단 구성이 빨리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배심원후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과 국민참여재판이 현재 사법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심원후보자들은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처럼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습니다.

배심원후보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오전에 배심원단 구성이 마무리되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모두변론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 본격적인 국민참여재판의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단의 신문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원래 계획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계속 반복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흥분한 나머지 ‘경찰관이 나의 진술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라는 대답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위 대답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의 계속된 압박 질문에 당황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잘못한 사람은 저기 있는데, 왜 나한테 이리시는 건가요?”라면서 변호인단에 화를 내더니 결국에는 울먹이면서 피고인에게 “내가 위증해 줄까? 그러면 되겠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엄마, 그러지 말고 묻는 질문에 똑바로 대답해요”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재판장님께서 직접 아들에게 경고를 하자 이번에는 피고인이 울먹이면서 피해자에게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 다시는 여보 괴롭히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을게. 우리 이리저 말고 여기서 우리 인연을 끝내자”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피해자, 그리고 아들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재판정은 잠시 소란스러웠고 배심원도 매우 당황해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애증 관계가 드러났지만, 피해자는 끝까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도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도 변호인단의 피해자에 대한 질문과 피해자의 답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변호인단과 격렬한 공방을 이어갔고, 결국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만으로 오후 재판을 마쳐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8시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으로 재판이 속행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생활과 이혼하게 된 경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생활을 함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는 무능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피해자를 사랑하기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할 사람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검찰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점,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차례 도와주면서 이번이 마

지막이라고 다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인간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것을 시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늦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신문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돌발 행동, 검찰의 계속된 이의 제기로 인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판 진행이 늦어졌기 때문에 변호인단 입장에서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변호인단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것인데, 배심원단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호인단의 걱정은 괜한 것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은 저녁 식사 후에 이어진 피고인에 대한 신문에서도 처음 재판이 시작될 때와 마찬가지로 집중해서 경청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질문 사항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을 따지지 않는 국민참여재판이기에 가능했던 판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끝내고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최후변론,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변론까지 마무리하고 나니 어느덧 시간은 밤 12시가 되어갔습니다. 저와 국선전담변호사님은 재판을 마치고 법원 근처의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국선전담변호사님은 지금까지 많은 국민참여재판을 해왔지만, 이번 재판이 가장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것이라면서 저에게 수고가 많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아쉬웠던 점을 곱씹어 보면서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예측해 보았는데, 배심원단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변호인단의 변론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변호를 했던 입장에서 재판결과가 궁금했고 끝까지 피고인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국선전담변호사님에게 재판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다고 먼저 가시게 한 후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무렵 판결이 나왔는데 변호인단의 예측과는 달리 배심원단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배심원단과 변호인인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수차례 하였고, 재판장은 재판을 마치시면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주신 배심원단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오늘과 같은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로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배심원단분들도 퇴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제부터는 아내분 괴롭히지 말고 남은 인생 아내분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라면서 피고인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본 변호인도 재판장님, 검사님, 배심원단, 그리고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새벽 2시가 훌쩍 넘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평소와 달리 오히려 몸에서 좋은 기운이 샘솟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11시만 되면 푹아떨어지던 제가 그날은 이상하게도 늦은 시간에도 졸리거나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4개월가량이 지나 수기를 쓰고 있는 지금도 그날 새벽에 느꼈던 기운이 그대로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재판이 막 끝났을 때는 재판장이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잘하지 못했지만 수기를 쓰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조금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증인신문 등을 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기에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결혼부터 이혼 이후의 일들까지 모두 살펴보면서 서로의 눈물을 통해 애증 관계를 밝혀

낼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애증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재판장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기존의 일반 재판으로 진행했다면, 당사자들의 애증 관계까지는 밝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참여재판과 같이 다양한 연령과 성별 및 경험을 가진 배심원단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젊은 판사님 또는 남성이나 여성 판사님들로만 구성된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판단하였다면 과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효율성보다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 있어

현재 일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비용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참여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일반 형사재판 시스템으로는 이번 사건처럼 정확한 실체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사건에 대해 내리는 변호인의 변호와 법원의 판결이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의 법원과 변호인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신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이 지금보다 큰 국민의 사랑과 법조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비효율에 대한 비판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정확히 선별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할 사건이 정확히 선별된다면 앞으로의 국민참여재판은 이번에 제가 참여했던 재판처럼 새벽까지 계속되는 재판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 각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의 추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새벽까지 진행하면서 다음 날 생업에 종사해야 하시는 배심원뿐만 아니라 다음 날에도 평소와 같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재판장을 포함한 판사님, 그리고 사무관님을 포함한 법원직원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국선전담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닌 저와 같은 청년 변호사들에게도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수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배심원, 너의 목소리가 들려

2016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우수상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저는 국민참여재판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어렵고 전문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 신기하기도 했고, 외국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의 소논문 주제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정하는 등 해당 제도를 공부해왔고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그 관심은 이어졌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평소 관심이 있었던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소논문 학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시행 상황에 대한 분석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조사를 진행하던 중 국민참여재판 건수가 최근 몇 년간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608건, 2015년 505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해 뉴스 기사 속 전문가들은 국민참여재판 건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피고인들의 신청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일반재판보다 국민참여재판의 형량이 무겁게 선고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실제 국민참여재판의 평균 무죄율은 7.8%로 전국 법원의 형사합의 사건 1심 무죄율인 4.1%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들의 ‘막연한’ 두려움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며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과정, 법정 분위기 등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두려워하는 피고인이 있다, 왜?

저는 7월의 어느 하루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했습니다. 배심원으로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제도의 취지와 과정을 미리 공부하기 위해 재판을 방청하러 가면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안내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중 평의가 시작되기 전, 배심원단이 미리 재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실제 재판부에서는 배심원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의 양심에 의거하여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지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재판의 중요성과 그 숙의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법정은 일반법정과 달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석이 놓여 있었고, 맞은편에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는 검사 2명, 국선변호인 1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의 방청객은 10여 명 정도였고, 그 분위기가 매우 엄숙하여 실제로 법정 드라마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검사님들은 증거 자료들을 열심히 검토하며 배심원에게 사건을 잘 설명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한편 재판 시작 전부터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은 휴지를 꺼내주시고, 종이컵에 물을 직접 따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법정에서 떨고 있는 피고인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변호인의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배심원은 9명으로 남녀의 비율은 거의 반반이었지만 나이는 대부분 40-50대로 제 또래의 젊은 층은 없었습니다. 이를 보며 ‘배심원의 나이대가 다양하다면, 평의 시간에 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재판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재판장의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

제가 참관한 재판은 이웃 간의 폭행 및 살인미수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히 11시가 되자, 재판장님의 사건 호명과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재판장님은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절차 및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반재판과 달리 재판장님은 이 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 등 어려운 법률 용어가 등장할 때마다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으며, 배심원이 모두 이해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양측의 모두진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님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기소 요지에 대해 진술해 주셨습니다. 잘 정리된 화면을 통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사건의 개요와 쟁점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로, 폭행의 여부와 살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님의 모두진술 후 재판장님은 배심원에게 폭행의 여부에 대해서는 증인이 진술하는 증거가 믿을 수 있는지를,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및 위험을 인식하였는지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한,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판단뿐 아니라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 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므로 공판절차 모두에 집중해 달라는 당부도 하셨습니다. 재판장님의 말씀은 어려운 용어와 긴 시간 속에서 자칫하면 놓칠 수도 있는 재판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좋은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사님이 제시한 쟁점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변호하셨습니다. 변호인은 검사 측과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진술해 주셨는데, 이는 배심원 및 방청객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보다 객관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는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며 쉬운 예시를 들어 주셨습니다. 가령, 칼을 휘두른 행위가 의심의 여지없이 외관상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면 살인미수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위협이나 폭행 정도의 의도로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 특수상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의 고의의 기준 또한 범행 경위나 동기, 흉기의 위험성, 공격의 반복성, 사망 가능성 등 대법원 판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살인미수인지에 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모두진술을 들으니 재판이 단순히 개인적인 가치 및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기준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법정에서와 달리 검사님과 변호인 모두 제자리에 서서 진술하지 않고 가운데로 나와 재판부뿐 아니라 배심원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검사님과 변호인이 사건의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신 덕인지 보통 오후 공판에 진행되는 증거조사가 오전 공판에 일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검사님은 첫 번째 증인으로 폭행 사건의 피해자이자,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의 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때 증인과 피고인이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이 설치되었습니다.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검사님이 증인신문을 진행하셨는데, 증인의 표정과 목소리를 섬세히 살피며 진행하는 모습에서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검사님은 증인이 사건을 떠올리며 힘들어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셨으며, 다시 신문을 진행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검사님의 신문이 끝나자 변호인의 신문도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신문이 시작되기 전, 피해자가 빠르게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위로의 말씀을 건넸습니다. 검사 측과 다른 각도로 증인을 신문하시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같은 사건임에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장님은 배심원이 증인에게 직접 신문할 수는 없지만, 메모지로 신문할 내용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면서 배심원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셨습니다.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여 재판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국민참여재판의 의의를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검사님은 폭행 사건의 목격자이자,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의 남편을 두 번째 증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고령이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 증인을 위해 검사님은 포박포박 큰 목소리로 쉬운 표현을 사용하시며 증인이 답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검

사님은 증인에게 피해자의 현 상황과 치료비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이를 통해 사건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신문 후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들도 검사님과 변호인이 신문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증인신문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은 신문 중 증인이 눈물을 흘리자, 재판장님이 증인에게 휴지를 건네주라고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법정 분위기는 매우 딱딱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국민참여재판에 직접 참여해보니 증인을 배려하는 판사님들과 검사님들, 변호인의 모습에서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2시 20분쯤 재판장님이 재판은 점심 후 오후 2시에 속행된다고 안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심원에게 식사는 법원직원들의 안내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식사 맛있게 하세요!”라는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저와 친구도 법원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사건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 커졌던 방청 시간

2시가 되자 재판이 속행됐습니다. 검사 측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시작됐는데 마지막 증인은 당시 살인미수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 경찰이었습니다. 오전 공판의 증인과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니기에 가림막 없이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증인은 오후 공판이 시작되기 전 미리 자리하고 있었으며, 검사와 변호인 측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검사님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한 후 스팀 청소기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무기를 확인하는 절차였는데, 동일한 스팀 청소기 모델을 가지고 나온 것이 배심원의 판단에 한층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후 피곤한 시간임에도 배심원은 적극적으로 메모지에 증인에게 질문할 거리를 적어 법원직원을 통해 재판장님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검사님과 변호인의

신문이 끝나자, 재판장님은 추가로 경찰이 출동한 당시 사건 현장의 피가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 피고인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해 질문하시면서 범행에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배심원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증인신문 후 증거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증거조사 또한 배심원이 잘 볼 수 있도록 슬라이드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님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임의동행 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살인미수 신문조서, 검찰에서의 양형조사서, 증인신문 때 잠깐 제시되었던 스팀 청소기와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사진 및 의사 소견서, 피고인의 이전 전과 및 보호관찰 요청을 위한 청구 전 조사서를 차례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했으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의 이전 전과는 형량과 관련된 것이지 해당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배심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살인미수 사건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간 것이 아니므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며, 스팀 청소기의 구조상 피해자의 머리가 가격된 것이지 피고인이 의도하여 머리를 때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시면서 검사 측 살인의 고의에 대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자 재판장님은 배심원이 증거로 제시된 스팀 청소기를 직접 들어보며 무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며, 배심원은 진지한 태도로 확인에 임했습니다.

이후 재판장님은 피고인을 증인석으로 불러 검사와 변호인이 신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피고인은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어서인지 검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엉뚱한 답변을 종종 하였으며, 재판장님과 배심원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말하며 큰 소리로 울기도 하였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사님은 침착하게 질문을 이어가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피고인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 질문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 달라고 부탁하시며 피고인이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시는 검사님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답변이 담당 경찰이나 검찰에게 조사받았던 것과 달라지자 검사 측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하였습니다. 방청 중 혼란스러워 고개를 가우뚱하고 있었는데, 재판장님이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판사가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검사님이 살인미수 사건 현장 사진을 사용하여 신문하시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님은 피고인의 요청을 즉각 받아들여 해당 사진을 피해 질문하는 등 피고인을 배려해주셨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확인을 받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스팀 청소기가 놓여 있던 위치, 휘두른 방법 등에 대해 직접 스팀 청소기를 들어 보이며, 검사와 다른 각도에서 꼼꼼히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정신감정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이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 가족과 연을 끊은 채로 가난한 생활을 해왔다는 점 등을 언급하시며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실물 화상기를 사용할 때마다 배심원이 잘 볼 수 있도록 화면의 밝기와 확대 비율을 조정하고, 법정 조명을 조정하는 모습이든지, 배석판사님들 또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을 통해 증인에게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반 재판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모습이겠지만,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가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은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한층 두텁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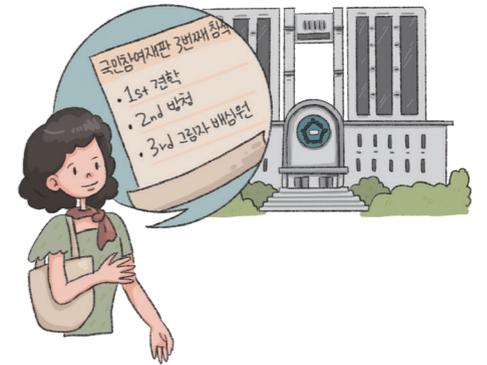
국민과 사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의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면서 느낀 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장님이 최종 설명 시간에도 언급하셨듯이 정확한 판결에 이르기 위해서는 판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함께 배심원으로 참여한 일반 국민의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재판절차와 법 제도를 가깝게 접할 수 있어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 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78%(226명)가 지인에게도 국민참여재판을 권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생활에서 사법 작용을 몸소 느끼며, 법에 대해 느꼈던 막연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했던 경험을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누고, 배심원과 방청객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판결을 위해 국민의 배심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법권의 영역에서 국민주권주의는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사법부와 국민이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올바른 정의를 형성해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희망이 가득한 국민참여재판

2016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우수상



외롭고 높고 쓸쓸한 - 첫 법정 방청의 기억

난생처음 법정에 들어서 본 것은, 대학 학부 시절 아주 우연히 법원 견학을 할 기회가 생긴 덕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었고 법학 관련 수업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야말로 ‘법 없이 살아왔던’ 문외한이었지만 범죄소설과 법정 드라마 마니아였던 저에게 형사 법정 방청 기회는 흥미진진하고 가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로 대표되는 검사와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속사포처럼 날아드는 변호인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답변이 자승자박 상태에 빠졌음을 깨닫고 당혹스러워하는 증인, 때로는 추상같이 호통을 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으로는 온화한 표정으로 피고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재판장,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으로 시작하는 한 편의 훌륭한 문학작품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화려한 최후변론, 그리고 끝내 정의가 승리하는 공명정대한 판결로 이어지는 그 드라마틱한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를 한껏 품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왠지 더 긴장된 마음으로 검색대를 통과한 뒤에 들어선 법정의 풍경은 그간 제가 상상해왔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두침침한 조명, 어쩐지 나를 짓누르는 듯 무겁게 내려앉은 천장, 그에 비해 높고 멀리 떨어진 법대, 방청석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두런거리는 방청객들… 이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 법정의 분위기를 한층 더 무겁고 위압적으로 만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두 일어서주십시오.” 법원경위의 목청 높은 외침과 함께 공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렵풋한 기억을 돌이켜보면, 아마도 이전에 몇 차례의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던 듯했고, 대부분의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되어 공판 과정에서 이렇다 할 공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어떤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잘 파악할 수 없었고, 법정 내에서 오가는 진술의 내용도 방청석에서는 잘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법정 방청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나는 것은, ‘외롭고 높고 쓸쓸한’ 법정의 풍경과 ‘우린 절대로 이런 곳에는 발도 들이지 말자’라고 종알거리며 함께 법정을 나서던 친구의 옆모습뿐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I - 국민참여재판 방청객의 이야기

그런데 사람 일은 참 알 수 없는 노릇이지요. 쓸쓸한 첫 법정 방청의 기억을 까맣게 잊어버린 저는 로스쿨에 진학하였고, 법학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두 번째 법정 방청의 기회

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수업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과정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시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한번 방청해보면 형사재판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청을 적극 권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법정 방청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일행이 법정 안으로 들어섰을 때는 이미 배심원 선정절차가 끝나 있었고 본격적인 공판절차에 들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이번에 보게 된 법정의 풍경은 예전의 제 기억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둡고 답답해 보였던 법정 안은 좀 더 환해졌고, 영상자료를 볼 수 있는 대형모니터를 비롯한 각종 기기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법정 방청으로부터 꽤 시간이 흘렀으니 법원과 법정 역시도 많이 변화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청하게 된 재판은 상습절도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지하철역 안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저질러서 법정에 서게 된 노인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 후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사실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것이 피고인 측 국선변호인의 주된 변론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검사와 변호인의 입증계획 설명은 대형 화면을 이용한 변론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후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증거들이 제시되고, 어떠한 쟁점에 대하여 배심원이 판단하여야 하는지를 논리적이면서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주요 쟁점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

악할 수 없었던 첫 번째 법정 방청을 떠올려보면서, 이러한 변론 방식은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공개재판주의에도 한층 더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어서 범행 장소인 지하철역 내의 CCTV 영상 재생을 통해 범행 당시의 상황을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쟁점이 되는 부분 없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되었고, 뒤이은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절차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CCTV 영상 재생, 증인신문,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등이 모두 마무리된 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검사의 구형을 들으며 그 당시 저는 내심 꽤 놀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고, 그것도 이미 여러 차례의 범행으로 처벌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니 무겁게 처벌을 받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출소 후 오갈 데 없이 곤궁한 상황에 내몰리다가 결국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징역 3년은 좀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역시 지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재벌 총수들에 대하여 마치 공식처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도 높았을 때라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법 ‘감정’이라는 것이 그랬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있는 다음 변호인의 의견 진술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하였습니다. 약간 어눌한 말투로 말을 이어나가는 피고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최종진술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조언을 해야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최종진술은 재판부와 배심원에 대해서 자신의 사정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사전에 잘 정리해서 진술해야 할 텐데, 피고인의 마음만 앞서서 그런 것인지 자신의 의사를 100%로 표현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조언자로서의 변호인 역할에 다소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절차가 모두 끝나고 배심원이 평의에 들어갔을 때, 저희 일행들도 법정 밖으로 나와서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거의 전 과정을 보면서 각자 느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눠보고, 배심원은 과연 어떤 평결을 내릴지 예측도 해보면서 판결선고를 기다렸습니다.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재판부와 배심원이 법정으로 돌아왔고, 드디어 판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이라 정확한 판결주문이 생각나지는 않지만, 검사의 구형보다는 많이 낮은 징역형이 선고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재판장님의 판결선고를 들으면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가 처했던 상황에 대한 고려 등에 대한 배심원의 생각 역시 검사의 구형을 들으면서 내가 했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법 감정’이라는 표현에서의 ‘감정’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범한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는 보편적인 판단기준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의 법정 방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는 첫 번째 법정 방청의 그 쓸쓸했던 기억은 모두 지우고, 미래에 법조인(그 역할이 판사이든, 검사이든, 변호인이든)으로서 법정에 들어서게 될 제 모습을 그려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II -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의 이야기

유난히도 뜨거웠던 이번 여름, 저는 세 번째 법정 방청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일반 방청객이 아닌 그림자배심원 자격으로 말입니다. 로스쿨 2학년 여름방학 동안 법원에서 실무수습과정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 참가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토바이 운행 중 지정차로 위반으로 경찰에게 적발된 운전자가 단속을 불만을 품고 오토바이에 경찰관을 매단 채 끌고 가다가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했다는 사실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지난번 국민참여재판 사건과는 달리 이번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된 실무수습생들은 배심원 평의실과는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 모여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교육 동영상 시청 후 재판의 개정 전까지 배심원에게 배부되는 사건 설명 자료와 양형 토의 참고자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료들에는 사건의 개요와 쟁점이 잘 요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 법률용어, 각종 증거법칙,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형사재판절차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제가 열심히 읽어본 항목은 양형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양형 토의 참고자료에는 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과 양형범위, 양형인자, 양형기준과 그 적용방법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되는 경우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되는 경우로 나누고, 각각의 가중·감경범위와 특별·일반양형

인자의 예를 세세하게 분류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각각 유리·불리하게 참작된 양형요소들과 실제 선고형이 제시되었습니다. 형벌에 관하여 법률로 정해진 가중·감경사유가 있고, 양형위원회가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고,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이제 개정 시간이 되어 그림자배심원도 형사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이미 다수의 배심원후보자분들이 자리하고 계셨고, 곧 입장하신 재판장님의 개정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배심원 선정절차부터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장님은 배심원후보자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배심원의 역할과 선정절차,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주셨고, 그 내용은 법정 곳곳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무작위 추첨 과정을 통해 선발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이분들에게 각각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진 뒤 그 답변을 토대로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하면 그에 따른 불선정결정을 하고 새로운 배심원을 추첨하는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된 후에야 최종적으로 배심원 선정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던지는 질문을 들으면서 그 의도를 헤아려보고, '이러저러하게 대답한 OO번 배심원은 기피신청 대상이 되겠구나'라고 짐작해보면서, '처음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치열하게 진행된 배심원 선정절차를 보니 오늘의 재판은 꽤나 뜨겁게 진행되겠구나'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후 배심원 선서,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장 낭독,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변호인의 진술, 검사와 변호인의 입증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계속되었고, 뒤

이어 검사 측이 증거 신청한 CCTV 영상을 재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검사 측은 범행 당시에 현장 부근 고층빌딩 옥상에서 촬영된 CCTV 영상과 피고인이 연행되어 온 교통센터 내부 CCTV 영상을 증거로 신청하였는데, 후자의 경우는 검사 측이 신청을 철회했으나 오히려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신청하여 두 영상 모두 법정 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옥상 CCTV 영상의 경우는 범행 당시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어서 사건 현장은 아주 작은 라이트 불빛으로만 보여 추가적인 설명 없이는 식별이 어려워 보였고, 교통센터 내부 CCTV 영상은 시간관계상 배속재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해도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된 이상 혐의의 입증은 크게 어렵지 않겠다고 짐작했는데, 실제로 확인해본 영상은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교통센터 내부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연행되어 온 이후의 상황인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상처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 피고인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장면, 피고인과 경찰관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점 중 하나는, 배속재생되는 화면을 보면 상해를 입은 경찰관의 움직임 역시 원래보다 빠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연중에 ‘이 사람이 입었다는 상처가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다른 형사재판에 비해 시간적인 제약이 더 많은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을 보완할 방안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로써 오전 재판 일정은 일단락이 되었고, 점심 후 다시 재판절차가 재개되었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는 이 사건 피해 경찰관과 사건 당시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증인들은 피고인 비대면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피고인 재정 요청을 하여 재판부는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차단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의 신문내용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끌고 갔다는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고, 변호인의 신문내용은 당시 경찰관이 행한 지정차로 단속 방법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 두 분의 국선변호인 중 한 분은 다소 공세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증인의 답변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차분하게 논리적인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협력 작업을 선보였던 장면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임을 떠올려본다면, 변호인들도 공판절차에서 효과적인 변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실감하였습니다.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피고인신문까지 모두 마친 뒤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등 지금까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무죄 취지의 의견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최종의견진술을 끝으로 심리절차는 일단락되었고 배심원은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림자배심원 역시 별도의 공간에 모여서 이 사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폭행의 고의는 인정할 수 있는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였고 볼 수 있는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라면 양형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등 많은 쟁점에 대해서 각자 나름의 생각도 정리해보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과정은 우리가 실제 배심원이 된 것처럼 진지하면서도 활기찬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재판절차와 배심원의 평의과정을 거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폭

행 사실 및 범의는 인정되나 경찰관의 직무집행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오래 보아야 예쁘다 – 국민참여재판 방청을 마치며

이 글을 쓰는 동안 제가 보았던 세 번의 법정 풍경을 수없이 많이 떠올려보았습니다. 그 세 번의 재판은 각각 사안도 달랐고, 쟁점도 달랐고, 결론도 달랐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법학 지식의 정도도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크게 달라진 것은 법원을, 법정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인 듯합니다. 그전까지는 ‘법정’이라는 곳이 어쩐지 멀게만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주눅 들어버리는 곳이라는 인상이었다면, 두 번의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후에는 훨씬 친화적이고, 개방적이고, 친절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림자배심원으로 참가했던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장님이 각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해당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배심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 고려해야 할 점 등이 어떤 것인지 세세한 부분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신 덕분에 오히려 제가 형사재판절차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받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후 실무수습과정의 지도 판사님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갖는 한계(시간적인 제약, 다룰 수 있는 사건 종류의 제한 등)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데에 들이는 비용과 노력이 매우 큰 것은 부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절차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효과도 크고, 실제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는 사법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는 좋은 제도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종종 보도되는 내용 중 하나가 법원의 판결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판결이거나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는 판결에 대한 내용이 주로 보도되지만 실상 더 많이 화제가 되는 기사는 이른바 말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에 대한 비판 기사일 것입니다.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다든가, 혹은 가볍게 처벌해도 될 법한 범죄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했다는 등의 보도를 접하게 되면 흔히들 ‘세상과 동떨어진 사법부’라고 혀를 끝끝 차면서 비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결과에 대해 ‘법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여론에 휩쓸려서 내린 판결’이라며 국민참여재판제도 자체를 폄훼하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판결의 주체가 법관이든 배심원이든 상관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고 세밀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에서 저는 단순한 방청객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해서 검사의 구형보다는 낮은 형이 선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지만 그 당시의 배심원은 상세하게 제시된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그 외에 고려해야 할 점들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제 개인의 생각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에서는 그림자배심원으로서 유·무죄 판단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유죄인 경우의 양형 관련 검토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고 들으면서 이 사건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할지 고심한 끝에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을 뿐이지만, 그 당시의

배심원 역시 이러한 자료들과 공판에서의 심리내용을 바탕으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결과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배심원의 판단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시다.

위의 두 사례는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단 두 번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은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법 감정과 법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임을 드러내는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응어리를 풀고 피해를 회복하여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형사절차의 기본상식은 일반인의 법 감정이자 우리나라의 형사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대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은 이러한 대원칙의 구현을 일반 국민들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벌써 8년째’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아직 8년밖에 되지 않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겨우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쯤 될까요? 아직 8살밖에 안 된 어린이는 가정과 학교, 사회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점차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아직 덜 자랐다고 해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고쳐나가면서 점차 완벽한 제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함과 동시에 우리 사법제도의 발전과 사법 신뢰 구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형사재판절차의 일부분으로서 유지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제가 직접 경험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느낌을 나태주 시인의 시구절로 같음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 나태주, 「꽃」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신뢰를 갖게 해준 배심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7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최우수상



사람은 같등으로 다투게 될 때 혼자 힘으로 과오를 판단하기 어렵다 싶으면 “길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자”고들 한다. 이 말은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명명백백하게 객관적, 합리적으로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의의 평범함이나 사람의 상식을 기대하며 하는 말일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이렇게 길을 막고 가는 사람에 해당하는 불특정인으로서 사건의 정의를 판단할 사람으로 대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형사재판의 피해자로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할 수 있었다. 피고인 측에서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는데 피해자인 나로서는 배심원의 편견과 지적 능력, 진지함이나 공정성에 회의가 들었다. 왜냐하면 나의 사건은 횡령, 사기 사건으로 피해액이 수십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돈 많은 사람이 욕심을 부리다가 사기당한 것’이라는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경험 많은 판사라면 사회적 편견이나 선입견을 떠나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 측에서도 굳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배심원의 이런 편견을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생각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었다. 이런 사실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선뜻 내키지 않았던 큰 이유였다.

과연 복잡한 사기사건 과정을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을까?

졸지에 남편을 잃은 나는 자녀만 남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던 집을 팔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직장인으로서 오랜 기간 일 해왔기에 세상일에 아무 경험이 없었던 내가 현금을 가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의 회사가 건축 자금 투자를 요청해 왔다. 상속세는 6년간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어 나는 건축에 투자하고 이익금을 받는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서 내용에는 건축을 위한 모든 대출에 내가 동의하여 건축에 지장이 없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건설회사는 내 이름으로 거액의 사채를 썼고 나는 계약서에 따라 이에 동의하는 인감을 주었는데 건설회사는 이내 부도로 도산했다.

건설회사 대표는 자신이 대표가 아니라며 정작 다른 사람이 횡령했다고 범인을 지목했으나 건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무자들의 고발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 나의 사건은 진행되었다. 부도가 났을 당시 나는 변호인을 선임할 비용조차 없이 전액이 건설회사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무작정 관련 서류를 들고 찾아간 경찰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다 졸도하고 말았다. 사채업자들이 집이며 모든 것을 압류하고 날마다 독촉이 왔는데 그 많은 돈을 가져간 건

설회사는 전혀 책임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되었는데 피해액과 피해자인 나의 지적 능력이 오히려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 같아 조바심이 났다. 무식하고 뭘 몰라서 사기를 당한 게 아니고 이익을 좇다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생각이 배심원에게 적용될까 봐 불안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지금까지의 설명만큼 간단하지 않아 많은 관련자가 있었고 빌린 과정, 용처, 용자 과정 등 문제가 복잡하고 건축용어, 은행에서 쓰는 경제용어, 법률용어가 어려워 배심원이 이 모든 과정과 내용을 제대로 숙지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기도 하였다.

내 재판은 8명의 배심원이 있었고 아침 9시에 시작했다. 난 국민참여재판은 한 번에 재판이 끝나고 그날로 구형과 선고가 이루어지는 줄 몰랐다. 안일하게 추후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재판 당일 아침에 판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알게 되어 적잖이 당황했다.

재판 진행 도중 아니나 다를까. 피고인 측에서 돈의 액수가 다르다는 주장을 해왔다. 물론 반증을 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내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때 나는 즉석에서 인터넷 뱅킹을 열 수 있으며 이것을 증거로 받아 주기를 청했더니 이내 받아들여졌다. 나는 휴대전화로 인터넷 뱅킹을 로그인하여 이체 결과를 제시하였고 판사는 이를 꼼꼼히 배심원에게 설명하였다. 증거채택에 권위적이던 영화 속의 판사와는 달리 매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사의 수용적 태도에 감동했던 순간이다. 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 못 한 피해자의 불찰을 감안하고 합리적 결과를 위해 증거를 그 자리에서 허용해준 민주적 판사가 있다는 사실은 권위적이고 비리가 많다는 법조계의 불의한 사건들이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

나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감동을 줬던 배심원의 진지한 태도

재판은 9시에 시작하여 두세 시간쯤로 휴식과 식사가 있었는데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배심원이 지치고 귀찮아하지는 않을지 조바심이 났다. 사건이 어렵고 복잡하며 길어지고 지루해지면 결국은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염려도 생겨났다. 재판을 지켜보는 당사자인 나는 배심원의 태도가 해이해지고 있지는 않은 지 수시로 그들의 동태를 살폈으나 이것도 기우였다. 흔히 설교를 듣거나 영화를 볼 때 조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세상의 모습과 달리 그들은 흐트러짐 없이 집중하였고 메모하며 기록하였다. 검사의 구형이 난 것은 밤 11시 경이었는데 재판 시작 후 몇 번의 휴식과 식사를 거친, 실로 상당한 체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의 자세는 시종일관 꼳꼳하고 진지했다. 게다가 배심원은 무작위로 뽑힌 사람인 만큼 성비나 나이도 제각각이었는데 사건 설명에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진지하게 몰두하는 모습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뢰를 갖게 했다. 밤 11시에야 비로소 시작된 배심원의 회의는 두 시간 반이 걸렸다. 이는 매우 심도 있는 회의를 했다는 추측을 하게 하며 배심원이 결론을 허투루 내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기에 매우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 늦은 시간에 남의 사건에 이토록 진지하게 성의를 가지고 갑론을박한다는 사실은 배심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성과 국민의 자질에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

배심원은 검사가 지목한 제1사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를 제2사안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무죄를 결정했다. 그런데 판사는 제2안에 대하여 배심원의 평결은 이러하나 법원 측은 제2사안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전문 판사가 판단한 사안으로 일반인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수정한 것이어서 더더욱 신뢰가 간 사례이다. 제2사안의 유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때 그 이유가 너무도 타당하여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판사는 쉬운 용어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다. 밤이 늦어 서둘러 끝내고자 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

있고 개인의 억울함을 위해 이 많은 배심원과 판사가 밤새워가면서 집중하고 일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감동을 주었다. 결국 국민참여재판은 비전문가들의 국민의 법 감정이나 법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믿게 되었다.

구형 후 선고가 되기까지 배심원이 회의를 하던 법원의 온통 환한 불빛은 판·검사와 배심원의 땀과 노고가 담긴 또 다른 증거라 여겨졌다. 지친 기색 없이 새벽 두 시까지 판결과 그에 대해 설명을 해준 판사와 검사 그리고 배심원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대가 없이 남의 손해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의논해 준 배심원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에 또 한 번 큰 믿음이 갔다.

적어도 나의 인생에 권위적이고 오만한 판검사는 없다는 사실이 내가 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체험한 가장 큰 결과이다. 믿을만하다. 성의 있어서, 진지해서,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던 경험이다. 판사와 배심원이 보여준 균형감과 공정함에 나의 기우는 사라지고 더 나아가 안심해도 되는 나라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 하루였다.

국적과 편견을 넘은 국민참여재판

2017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우수상



날씨가 쌀쌀했다. 더위가 걷히고 한기가 느껴지는 가을이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한기를 참았다. 반팔을 입은 채 닭살이 돋은 팔을 손바닥으로 감쌌다. 체포될 때 복장 그대로였다. 피고인은 수의를 벗고 사복을 입었다. 배심원에게 ‘죄인’이라는 선입견을 주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다. 검사조차 “보석으로 풀려났나요?”라고 물어보며 의아해 했다. 법정에서 구속 피고인이 사복을 입은 것은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이번 재판은 줄곧 선입견을 허무는 것이 과제였다. 피고인은 중국인 노동자였다. 보이스포싱에 연루된 중국인은 당연히 유죄일 거라는 예단을 극복해야 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팔시하는 편견도 이겨내야 했다. ‘무죄 추정’이

허울 좋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절차, 백지상태에서 피고인을 다시 보는 절차, 그것이 국민참여재판이었다.

‘안 되는 사건’을 만나다

변호인들끼리 흔히 ‘안 되는 사건’이 있다고 말하곤 한다.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으면 피고인의 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무죄는 어렵다. 피고인이 끝까지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꽤 씹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피고인의 이익을 진정 생각하는 변호인이라면 재판에 어떻게 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할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

공소장을 받으면 사건이 시작된다. 변호인은 공소장과 증거를 보고 우선 ‘되는 사건’과 ‘안 되는 사건’의 감을 잡는다. 유·무죄의 선입견을 갖는다는 말은 아니다. 정확한 조력을 위해 가급적 사건을 냉정하게 따져본다는 뜻이다. 검토를 마치면 피고인을 만난다. 서류에 담기지 않은 실체적 진실은 없는지 피고인의 육성을 귀담아듣고 표정을 살핀다.

2016년 8월, 사건 하나가 왔다. 전형적으로 ‘안 되는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었다. 피해자는 70세 할머니였다. 피해자는 어느 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통장에 있는 돈이 위협하니 출금하여 집 냉장고에 보관하라는 내용이었다. 피해자는 은행을 찾아가 현금 인출을 요청했다. 보이스피싱을 눈치챈 은행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은행에 도착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마치 돈을 인출한 것처럼 집 냉장고에 돈을 보관했다고 직원에게 알렸다. 경찰관들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현장에서 검거하기 위해 피해자 집에 잠복했다.

피고인은 이날 친구를 따라 춘천에 왔다. 친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일거리’가 생

겼으니 춘천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춘천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 집에 들어갈 때 피고인은 집 밖에서 기다렸다. 피고인은 친구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잠복 경찰관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지역 신문에는 “침입 절도형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되었다. 피고인의 친구는 자신이 인출책을 맡았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범죄수익금을 피고인과 나누려고 했다고도 진술했다. 피고인과 친구 모두 중국 출신이었다. 피고인은 끝까지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누가 봐도 ‘안 되는 사건’이었다.

무죄가 선고되기 매우 어려운 보이스피싱 사건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보이스피싱 피해가 2,922건, 피해액은 247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소탕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핵심 조직은 중국 현지에 있어 국내 수사망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 검거되는 사람은 대부분 인출책이다.

범죄는 범죄를 인식하고 행동했을 때 처벌된다. 범죄 고의는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이상하다’라는 의심만 있었다면 대부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몰랐다’는 변명은 잘 통하지 않는다. 사회 정책적으로 엄벌 필요성이 강조되어 ‘엄격한 증명’이 완화되는 느낌을 받는다. 형벌도 무겁다. 전과가 없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징역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흔하다. 월척을 낚지 못하니 피라미를 잡아 몽둥이를 휘두르는 모양새다. 변호인에게 보이스피싱은 변론이 어려운 사건에 속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친구는 여행가이드 경력이 있었다. 그 때문에 피고인은 친구와 곳곳에 함께 다니길 좋아했다. 피고인은 일자리를 알아보러 춘천에 간다는 친구 말을 듣고 동행했다. 그런데 친구가 정작 찾아간 곳은 회사가 아닌 주택가 골목이었다. 현장에서 도망치는 피고인을 보고 경찰은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만약 이 사건이 기계적, 형식적으로 판단된다면 유죄의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유사한 사건들은 거의 유죄로 판단되는 추세였다. 이 사건에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컸다.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호소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범죄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다. 범죄와 관계없이 ‘따라’ 온 것에 불과했다. 기존 범조인의 시각이 아닌 국민들의 시각이 필요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다.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설득하다

중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잇따르는 강력사건으로 반중국 감정이 일어나기도 한다. 2012년 수원 살인사건 오원춘, 2016년 제주 성당 살인사건 범인도 중국인이었다. 보이 스피싱 범죄조직을 풍자한 개그 프로 코너에서도 등장인물은 재중 동포라는 설정이다. 이처럼 중국인을 범죄자로 쉽게 여기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때 중국인에 대한 선입견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문제였다.

교도소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우진(이하 가명) 씨는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대로 재판하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커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방법을 고민해 봤어요. 한국에는 국민들이 판사보다 먼저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있어요. 국민들이 판단하면 판사도 그 판단에 따르는 게 보통이에요. 국민참여재판은 온종일 해요. 이우진 씨 말을 더 잘 들어줄 거예요. 변호인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요.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항소심에 가서 판사한테 다시 재판받아 볼 기회가 있어요.”

설명을 듣던 피고인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 싫어하잖아요.”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두려워했다. 아니 한국인들의 선입견을 무서워했다. 삶의 현장에서 한국인이 중국인을 무시한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도 중국인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체험으로 느끼고 있었다.

설득은 이어졌다.

“하나 약속할게요.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을 똑같이 봐 줄 사람을 골라줄게요. 재판에 들어오는 배심원은 10명이에요. 그런데 원래 10명은 아니고 50명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저는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법정에 가 있을 거예요. 이우진 씨한테 편견 없는 사람을 골라 놓을게요. 한국 사람이라고 중국 사람 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하고 재판에서 내리는 판단은 달라요. 믿어 봐요.”

피고인은 말없이 설명을 들었다.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 고민이 끝났는지 말을 이었다. “하겠어요. 시민 참여재판 하겠어요. 변호사님만 믿을게요.”라고 답했다.

피고인이 동의했으니 일단 다행이었다. 한편으로 어깨가 무거워졌다. 참여재판 준비는 만만치 않다. 일반 사건 10건 정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재판에 앞서 공판준비절차, 배심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판 후에는 배심원 평의도 이어진다. 재판이 12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흔하다. 통상 하루로 끝나지만, 소말리아 해적 사건은 장장 5일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1,972건이 열렸다. 그 중 78.9%를 국선변호인이 맡았다. 재판에 들어가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 때문에 비용상 제약이 있는 사선변호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선호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 이우진(가명) 씨

이우진 씨는 외국인 노동자였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국인이었으나 어머니는 중국인으로 중국에 정착했다. 하얼빈에서 나고 자란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가족들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2012년 친동생과 함께 한국을 찾았다. 취업비자를 받고 자동차 부품회사, 전자회사를 전전하고 막노동을 하며 생활비를 가족들에게 보냈다.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점은 한국인들의 멸시였다고 한다. “직장 많이 다녀봤는데 중국 사람을 깔보는 느낌이 들어요”라고 말하는 이우진 씨. 설 틈 없이 일을 시켜 피곤한 것은 참을 만했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인간 이하로 대하는 태도가 견디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우진 씨는 회사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들었다. 근로시간이든 아니든 언제든지 씨먹을 수 있는 ‘부품’처럼 취급받았다. 지금은 한국말이 늘어 필요할 때는 항의도 할 줄 안다. 처음에는 한국말을 못 해 온갖 무시와 비하를 당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한국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가족 때문이었다. 이우진 씨가 가장 걱정했던 건 유죄보다도 강제 출국이었다. 유죄를 받아 강제 출국당하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가 무너지는 상황이었다.

베일에 싸인 배심원 선정절차

반중국인 감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던 이유는 ‘배심원 선정절차’ 덕분이다. 이우진 씨는 훗날 털어냈다. “변호사님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자고 했을 때 걱정 많이 됐어요. 그래도 변호사님이 중국인 안 좋게 보는 사람은 빼주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결심했었어요.”

배심원 선정절차는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 검사, 변호인만 참석한다. 방청객이 들어올 수 없고 그림자배심원조차 선정절차를 경험하지 못한다.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원론적인 절차 안내가 대부분이다. 선정절차의 모습은 베일에 싸여있다.

배심원후보자 50여 명 중 소수의 배심원을 골라내는 선정절차는 본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진행된다. 선정절차의 평균 소요 시간은 1시간 15분 정도이다. 최장 기록은 4시간 30분이라고 한다. 물 위에 떠 있는 거위의 발이 바쁘게 움직이듯, 재판 시작 전 선정절차에서 변호인과 검사는 바쁘게 움직인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질문을 통해 선입견을 품은 배심원후보자를 걸러내는 기능을 한다. 변호인에게 본 재판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피고인을 위한 변론은 이때 이미 시작되는 것이다. 질문을 던지지만, 실제로는 변론의 밑밥을 깔아놓는다. 누구나 ‘그렇다’라고 답변할 만한 대명제를 활용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면 누구나 맞다고 답한다. “‘누구에게나’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니까?”라고 물어도 긍정적인 답이 나온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 “이 피고인이 중국인이므로 엄하게 처벌하겠습니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안 된다. 사람은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에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다. 단계별로 범위를 좁혀 묻는다. 결정적인 질문은 최후 변론 뒤편으로 남겨둔다.

선정절차에서 깔아놓은 밑밥은 최후변론에서 빛을 본다. 실제 이 사건 변론을 이렇게 시작했다.

“배심원 여러분들께서는, 배심원 선정절차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

다고 모두 동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국인들이 많이 저지른다고 하여, 이 사건 피고인이 중국인이라고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선입견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한국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이 사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심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다. 자신감을 얻고 힘 있게 변론을 이어갔다.

외국인의 한국 형사절차 경험

누구든 수사를 받으면 힘들다. 체포되어 경찰서로 압송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힘악한 분위기에서 신문과정이 진행된다.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지 신문과정에서는 그저 ‘피의자’일 뿐이다. 배려를 받는 자리가 아니다.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한마디 말할수도 조서에 담겨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피의자가 된다는 건 정신적 무장해제를 당하는 것과 같다. 한국인이 국내에서 체포되는 경우도 그 정도인데, 외국인 입장에서 타국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는 더하다. 피고인 이우진 씨는 체포되어 조사받을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다.

“보이스피싱 안 했고,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말하는 건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사건 재판은 이틀간 진행됐다.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다. 법정에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실은 집 안까지 들어왔었다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바람에 상황이 불리해지기도 했다. 둘째 날 오후 5시까지 이어진 재판과 평의 끝에 피고인은 결국 누명을 벗었다. 배심원 9인 만장일치 무죄였다.

무죄를 받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피고인의 친구가 보이스피싱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그 문자에는 ‘옆에 이우진도 있지만, 이번엔 나 먼저 할게’라는 내용이 있었다. 피고인 친구의 휴대폰 문자를 법정에서 제시하고, 그 친구는 이번 사건을 혼자 할 생각이 명백했다는 점을 배심원에게 설명했다. 피고인의 친구는 증인신문에서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았다. 수익이 나면 절반을 주려고 나 혼자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모든 공방이 법정에서 말로 이루어졌고 증거서류 하나하나 배심원 앞에 제시됐다. 배심원은 조심스럽게 경청하고 집중했다.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증거재판주의, 구두 변론주의가 실현되는 현장이었다.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검사님, 증거 없는데, 제가 알지도 못했는데, 유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인생이 달려있어요.”

비장한 표정이었다. 긴장이 풀렸는지 참아왔던 눈물을 보였다. 더듬거리는 한국말, 미리 준비하지 않은 듯한 투박한 말투가 오히려 신뢰감을 주었다. 이우진 씨는 훗날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시민들이 재판에서 제 말을 잘 들어줘서 좋았어요.”

국민참여재판, 한 단계 도약을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우려를 안고 시작했다. 전문가의 판단영역을 과연 비전문가가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있었다. 10년간 시행해 본 결과 그 우려는 기우였음이 확인되었다. 국민들은 사실관계는 물론 법리를 적용함에 합리적이고 섬세했다. 때로는 기존 법조인들과 시각이 일치하지 않기도 했다. ‘고의’나 ‘과실’과 같은 개념을 판단할 때 기존 판례와 다르게 인정하기도 했다. 배심원의 판단이 틀렸다고 단정할 순 없다. 상식에 기초한 배심원의 판단은 오히려 법조인들의 기존 시각이 사회통념에서 유리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할 기회를 제공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토크빌은 ‘배심재판은 민주주의의 무료학교다’라고 했다. 국민들은 배심원으로 참가하면서 사법절차를 배운다. 변호인과 검찰이 배심원에게 증거를 직접 제시하고 법적 개념과 판례를 설명한다. 국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측은 재판에서 패배한다. 범조인만의 어려운 용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설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민주주의도 체험한다. 자신들의 결정이 재판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사법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기본 명제를 주권자 지위에서 목격한다.

외국인이 피고인이면 국민참여재판은 의미가 더욱 크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지위에 있다. 그들에 대한 현실적인 편견이 존재한다는 건 불편한 진실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할 수 있다. 이번 이우진 씨 재판에서도 국민들은 피고인을 외국인이 아닌 ‘인간’으로 대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외국인은 우리 사법제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게 된다. 우리는 외국과 비교하여 부족하지 않은 사법제도를 갖추었다고 자부할 만하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화를 진전시키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왔다. 사법절차에 주권자가 참여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국민참여재판이 한 단계 도약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높아지고,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우진 씨의 한마디로 글을 마친다.

“주변 사람이 저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면 꼭 국민참여재판을 하라고 알려줄 거예요.”

사법 정의가 준 용기

2018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최우수상



어릴 적부터 내 꿈은 대학생이 되는 것이었다. 대학생만 되면 다 괜찮아질 거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시골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팔다리가 뒤틀린 장애인으로 태어난 나는 원치 않는 관심과 괴롭힘을 넘치게 받아야 했다.

특하면 넘어뜨리고, 때리고, 도시락을 뒤엎는 아이들 틈에서 괴물 소리를 들으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굶은 사지 때문에 걸을 때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나를 아이들은 집요하게 놀려댔다. 학교에 가기 싫다고 울면서 집에 올 때마다 어른들이 말씀하셨다.

대학만 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지금은 애들이 어려서 그런 거니 조금만 참으라고 말이다. 그

래서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 마침내 수능을 치고 대학 입학할 하던 날, 나는 남들은 모르는 다른 이유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는 사람 사이에 섞여 생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삶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어릴 때만큼의 노골적인 괴롭힘은 없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친구 하나 없는 고독한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러다 새로 옮긴 부서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도 몰랐다. 뒤에서 나를 밀거나, 내가 들고 있는 물건을 친다거나 하는 일이 유독 잦았다. 넘어진 나를 보고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웃으며 가버리는 뒷모습을 보며 그게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대항할 힘도, 여유도 없었다. 곧 사람이 뜸한 곳에서 마주치면 폭언이 시작되었다. 나는 사지뿐만 아니라 얼굴 근육도 뒤틀려 있어 발음이 어눌하고, 양쪽 눈도 비대칭이라 정면으로 눈을 떠도 옆을 보는 것 같다. 그 사람은 내 그런 모습을 자주 비웃었다.

그래도 뭐라고 저항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안 그래도 비웃음을 사는데 어눌하게 말을 해 봤자 놀림만 심해질 것 같았다. 내가 눈물을 참으며 무시하고 돌아서자, 점점 수위가 높아졌다. 그 꼴을 하고 밖에 나와 일을 하는 건 민폐 끼치는 일이라는 말을 들은 날은 조퇴했다. 안 그러면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엉엉 울 것 같아서였다. 계속 조퇴를 반복할 수 없어 관리자에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다. 그 사람은 관리자의 물음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일이라 관리자도 난색을 보였다.

괴롭힘은 날마다 정도가 심해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정말 없는가.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법’을 떠올렸다.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없었다. 어떻게 하면 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밀치고, 넘어지게 만든 것으로 고소를 하면 될까? 아니면 폭언으로 고발을 하면 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다 갑자기 정말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님 앞에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는 내 모습이 떠올랐다.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떠듬떠듬 말을 하는 내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트릴 것 같았다. 법마저도 희망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절망이 몰려왔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삶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살아야 했고, 직장도 다녀야 했다. 답답한 마음에 나는 법원으로 갔다. 실제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만인에게 공정한 법임을 실감하다

법은 만인에게 공정하다는 그 말을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눈으로 재판과정을 보고 나면 마음을 추스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저 재판과정을 보기만 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 앞에서 제재를 당하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하며 법원에 들어섰다. 재판은 특별히 비공개로 결정이 되지 않는 한,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텔레비전으로 보던 재판과는 달리 실제 법정에는 법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신기했다. 그날은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날이라 국민배심원단도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와 변호인은 증인의 말에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고, 냉철하게 반대신문을 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재판이라는 것이 단지 법전에 나오는 단어들로만 이루어

지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와 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판사와 배심원은 오가는 공방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들은 나의 우려와는 달리 증거에 입각한 사실을 살필 뿐 외적인 조건이나 사람의 차림은 보지 않았다. 그 과정을 통해 그간 내 모습이나, 어눌한 말 때문에 법마저 내게 등을 돌릴 거라는 걱정은 기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곳에선 법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다.

국민 배심원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조건이나, 모습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나처럼 어제까지는 직장에 다니던 이들이 무작위로 선정되어 오늘 이 재판에 참여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증거를 살펴보고,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판단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내게 힘을 주었다. 그동안 나를 가장 괴롭혔던 건 어쩌면 불의한 일이 아니라, 불의한 일을 겪는 나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는데도 모르겠다. 그런데 재판과정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나니 실제 없는 두려움을 이길 용기가 생겼다.

오후 2시 40분쯤, 휴정되고 잠깐이나마 쉬는 시간이 주어졌다. 나는 굳은 팔과 다리를 펴고 목도 이리저리 돌렸다. 그러던 중 오늘 재판과정의 일부분이 된 한 사람의 국민이면서 배심원인 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니 관심을 가지고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된다는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다. 어렵פות한 경험으로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불신하던 나는 늘 불안에 시달렸다. 그런데 막상 재판과정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나니 그런 불신이 사라졌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본 재판과정을 되새겨보았다. 공정하게 모든 자료를 살피던 이들이 떠올랐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나도 그러고 싶었다.

법에서 배운 공정함을 실천할 나를 준비하다

다음 날, 오전 일을 마무리할 때쯤 그 사람이 내가 들고 있는 서류를 손으로 내리쳤다. 평소 같으면 혹시나 다른 무슨 짓을 더 할까 봐 겁에 질린 채 허겁지겁 서류를 줍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었다. 그 사람에게 하려고 준비한 말을 하려고 하자 자꾸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발가락에 힘을 짝 준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런 물리적인 접촉과 강도 높은 수준의 폭언 역시 폭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는 참지 않을 것이며, 지속하면 송사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사람은 나를 쏘아보다가 해볼 테면 해보라고 큰소리를 치며 나를 스쳐 갔다.

그 사람이 안 보일 때까지 발에 힘을 주고 있던 나는 곧 바닥에 주저앉았다. 쏟아진 서류를 주워드는데 눈물 대신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작은 승리를 거둔 나 자신을 격려했다. 이후로도 그 사람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지만 나 역시 계속 맞섰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더는 목소리나 다리가 떨리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횡수가 현저히 줄어들더니 결국, 그 사람은 나와 마주쳐도 모른 척 갈 길을 가버렸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가 사라지자, 나는 쉬는 날이면 종종 법원을 찾게 되었다. 여러 분야의 사건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다시 꿈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내 어려움을 해결했듯, 언젠가는 곤경에 빠진 다른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아직은 그게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다. 지금은 내게 힘을 주었던 재판과정에 자주 참여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는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와 같이 불신의 벽에 갇혀 불의한 일을 당하고만 있는 이들에게 내가 목격한 법의 공정함을, 재판과정에서 정의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신뢰를 전해줄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한다.

국민 참여로 사법의 신뢰를 높이는 국민참여재판

2018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우수상



2013년,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실시하는지 아무것도 모를 때 그 드라마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이후 나에게 그 제도는 바쁜 생활 속에서 차츰 잊혀갔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나는 준비하던 시험에 떨어져 방황하고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이 나의 적성에 맞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던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를 고민하는 와중에 우연히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서 국민참여재판 참관을 안내하는 공지를 보았다. 그때는 막연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에 적당한 날짜에 맞춰 참관하기로 마음먹었다.

‘법원과 검찰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인생에 이롭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 것처럼 나는 법 자체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되는지는 잘 알지 못했다. 스스로 알려고 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검경의 조사가,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내 나이대 사람에게서는 송사에 휘말리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가 재판을 보러 법원에 간다고 했을 때 친구 중 한 명은 재판을 일반인(제3자)도 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그만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송사에 휘말린 사람이 평범하지 않게 살아간다는 의미는 아니다)에게 재판은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기자와 재판부, 피고인 및 검사, 해당 재판과 관련된 방청객들이 있는 법정에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법 집행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인식 때문에 나도 처음 재판을 보러 가려고 했을 때 제3자인 내가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을 방청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이라는 특별한 역할이 있었으므로 내가 방청객이 아닌 배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배심원은 국민 개개인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것이며 만약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나는 한 번도 배심원으로 선정된 적이 없어서 방청객으로만 세 번을 참관했다. 그렇게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법원이라는 엄숙한 공간에 대해 예의를 지키기 위해 웃은 어떤 것을 입어야 좋을지 사소한

것들까지 고민하던 나날이 지났다. 2017년 8월 어느 날 나는 난생처음으로 법원에 들어가 재판을 방청했다.

때는 여름이어서 저녁 7시가 지나도 밝은 하늘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날 재판은 상당히 긴 재판이었는데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기 때문이었다. 양형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 아니라 사건의 인과관계에 중심을 둔 재판이었고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이 몇 시간 동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재판에 재판부도, 검사와 피고인 측도, 배심원도 서서히 지쳐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도 재판을 여는 행위는 어떤 한 인간이 앞으로 살아갈 삶을 결정하는 것, 더불어 그 재판에 회부된 죄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었으므로 그 누구도 건성으로 재판을 이어가지 않았다. 처음 본 재판이었지만 재판의 진행 과정을 재판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셨고, 그 덕에 국민참여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렇게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피부로 직접 느낄 기회였다. 오후 여섯 시가 넘어서야 평의 과정에 들어갔고,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나는 그 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보지 못하고 귀가해야 했다. 하지만 그 늦은 시간까지,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모두 퇴근했을 오후 여섯 시가 넘은 시각까지 열성을 다해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새삼 그들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다

그날의 참관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사람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형사사건에 관여된 적이 없었으니 형사재판을 눈으로 직접 봄으로써 더욱더 인상에 깊게 남은 것 같다.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어떤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나아가 그 억울한 당사자 가족들의 설움까지 보듬어주는 것, 법치국가에서 법률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

에게 원칙적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자유에 대한 억압을 현행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가하는 것. 우리는 보통 기사로 접하는 재판결과들을 보며 형량이 너무 낮다고 분개한다. 물론 형량이 너무 낮은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 이면의 숨은 것을 볼 수 있는 눈, 피고인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내는 눈이 사실은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았다.

재판 자체는 표면적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과정은 사건의 표면을 떠나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당사자들의 감정을 보듬어주는 일종의 위로인 것이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일 경우 그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으로 한정되어 있겠지만,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재판과 크게 다르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이 재판의 결과를 떠나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참여재판 자체는 사실 피고인에게 더 이득이 되는 재판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금 슬펐다.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나는 다음에 있을 국민참여재판을 가야 하나 고민했다. 딱 한 번 방청한 재판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두 번은 봐야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게 무엇인지, 형량을 결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텐데, 누군가의 여생을 결정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사실은 조금 힘들었기 때문이다. 법관에게는 이미 그것이 직업이 되어 충분한 경험을 통해 당사자들에 대한 본인의 감정을 충분히 제거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을 테지만, 나는 처음으로 본 재판이었고 생각보다 법을 집행하는 것에 슬픈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중, ‘살인’이라는 죄목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는 공지를

보았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었을까’하는 분노의 마음에 같은 달, 다시 한 번 재판을 방청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재판은 내 예상과는 너무도 다른 재판이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한 이유(동기)를 타인이 왜 알아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재판이었다.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여, 사랑하는 아내의 병세에 절망하여 모든 것을 끝내고 무(無)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 법정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분명 나쁜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므로, 사유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말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말이 되었던 건 아니었을까. 죄목 자체는 너무나 무섭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지만, 아무리 비관적 생각으로 가득 차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어도 행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피고인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위로의 시간

그래서 또다시 나는 국민참여재판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본 사건에 관해서는 감형이 됐을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떠난 사람에게 드는 죄책감, 남겨진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이 공기를 떠다니며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었다. 행동의 결과는 너무도 큰 비극이었으나 그 행동의 이유를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까지 상처를 입히는 그 행동을 처음부터 막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그 법정 안에 있었다. 떠나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게 만든 사람도 확실히 있으므로, 아무리 동정심이 생겨도 무죄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벌

을 받아야 하고 생을 떠난 사람에게는 위로의 손을 건네야 한다. 하지만 이 비극을 처음부터 막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게 여러 사회적 장치가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에 나는 재판 내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돌아가신 분에게도, 그런 행동을 했던 피고인에게도.

법을 집행하는 행위에는 감정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하여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마땅한 벌을 주고 그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법치국가의 논리를 통해 사회적인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인간이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동물에 불과하고 벼랑 끝에 몰리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인간의 존엄을 스스로 저버린 때마저도 그 행동을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어야 한다.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슬픔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행위에는 어쩔 수 없이 인간 자체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스민다. 어차피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서 노력에 노력을 거듭할 뿐이다.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이 사회는 너무나도 각박해질 것이고, 각박함이 지속되면 비극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법조인이 아닌, 법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이 미처 보지 못한 사회의 일면을 마주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을 집행하는 행위에는 감정이 섞여서는 안 되지만 법을 집행하는 행위의 원인이 된 행위를 살펴보는 데에는 감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는 바로 대다수의 일반 국민이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마주 보고 함께 밝은 면으로 바꾸기 위함이 아닐까.

나는 더 많은 사람이 재판을 직접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의 여생을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왜 그들이 스스로와 타인의 존엄을 해치려고 했는지 들여다볼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재판을 이해하고 왜 그 재판이 열렸어야 했는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이 사회의 많은 비극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바라며 보내는 제언

2018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우수상



저는 2010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그해 3월부터 국선전담변호사로 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만 십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참여재판은 물론이고 일반 형사재판 실무 경험조차 전혀 없었던 변호사 첫해부터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재판이기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초창기부터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며 경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수기 공모전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총 18건의 형사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이어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국선전담변호사인 제가 선정된 경우가 많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재판보다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들에게 권유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상해치사 사건을 첫 사건으로 하여, 강도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준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흥기 등 상해), 특수상해, 준강간, 강간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다양한 사건들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보람과 자부심이 큰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은 먼저 변호인에게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재판입니다. 변호인으로서 일반 재판에 비해 대형 화면을 이용하기 위한 자료 등 준비할 것도 많고,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야 한다는 시간의 압박 속에서 재판부에는 요점만 간단히 말해도 되는 내용을 배심원에게는 용어부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언제나 이를 뛰어넘는 보람이라는 보상이 있었습니다. 일반 재판은 보통 10~15분 간격으로 사건이 지정되기 때문에 시간 내 충분한 구두변론을 하기 어려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배심원 만장일치 피고인은 무죄'라는 선고가 들을 때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짜릿함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진행한 사건 대부분이 피고인이 원하

는 결과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들은 충분한 변호를 받았다는 생각에 만족해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들 같은 일반 국민에게 재판을 받았기에 판결에 대한 수용력이 더 높은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던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사에 대한 불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변호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인식이 달라졌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제가 더 감동을 하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매달 수십 건의 비슷한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가끔 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내가 어렸을 적 꿈꾸던 변호사답다는 생각이 들어 개인적으로는 변호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부심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엄격한 배심원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 가능성 높여

이러한 변호인으로서 가지는 의미 외에도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재판입니다. 법률가로서 사건 처리 경험이 많다는 점이 어떤 때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선입견으로 인해 서인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까지는 기대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가 선고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배심원이 철저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증거를 살펴본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진술증거 또는 정황증거만 있는 사안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였던 2014년 준강간, 2017년 강간미수, 2018년 강간미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고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를 선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성범죄 사안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무죄가 선고된 것은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증거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어쩔 수 없었던 범행 동기, 어려운 가정형편 등 정상에 관해 배심원이 충분히 공감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통상재판으로 진행하였더라면 피고인에게 기존 전과가 많아 상습성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생계 곤란으로 건장했던 피고인이 엉덩이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르게 되었다는 여동생의 진술 등을 통해 절도 습벽의 발로가 아닌 생계형 범죄였음을 인정받아 상습성이 배제되어 단순 절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투표지를 찢은 공직선거법 위반 자백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인정하나 자신이 받은 투표지를 찢은 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률에 대해 일반인보다는 잘 알고 있는 법률가이다 보니 정말 모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배심원 선정절차에서 배심원후보자들에게 물어보니 8명 중 단 2명만이 투표용지를 찢으면 형사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배심원이 충분히 공감하여 주었고, 그 결과 배심원 만장일치로 법률상 최저형인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재판을 통해 2018년 1월 7일부터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도입되었음을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이 사법절차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 높일 수 있어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 배심원에게도 의미가 있는 재판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사법절차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실제 발견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신중하고 충분한 심리 과정을 통해 사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형량이 약하다는 등 판사가 어떻

다는 등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으나 국민참여재판에 직접 참여해 본다면 왜 그러한 판결들이 선고되는지를 직접 경험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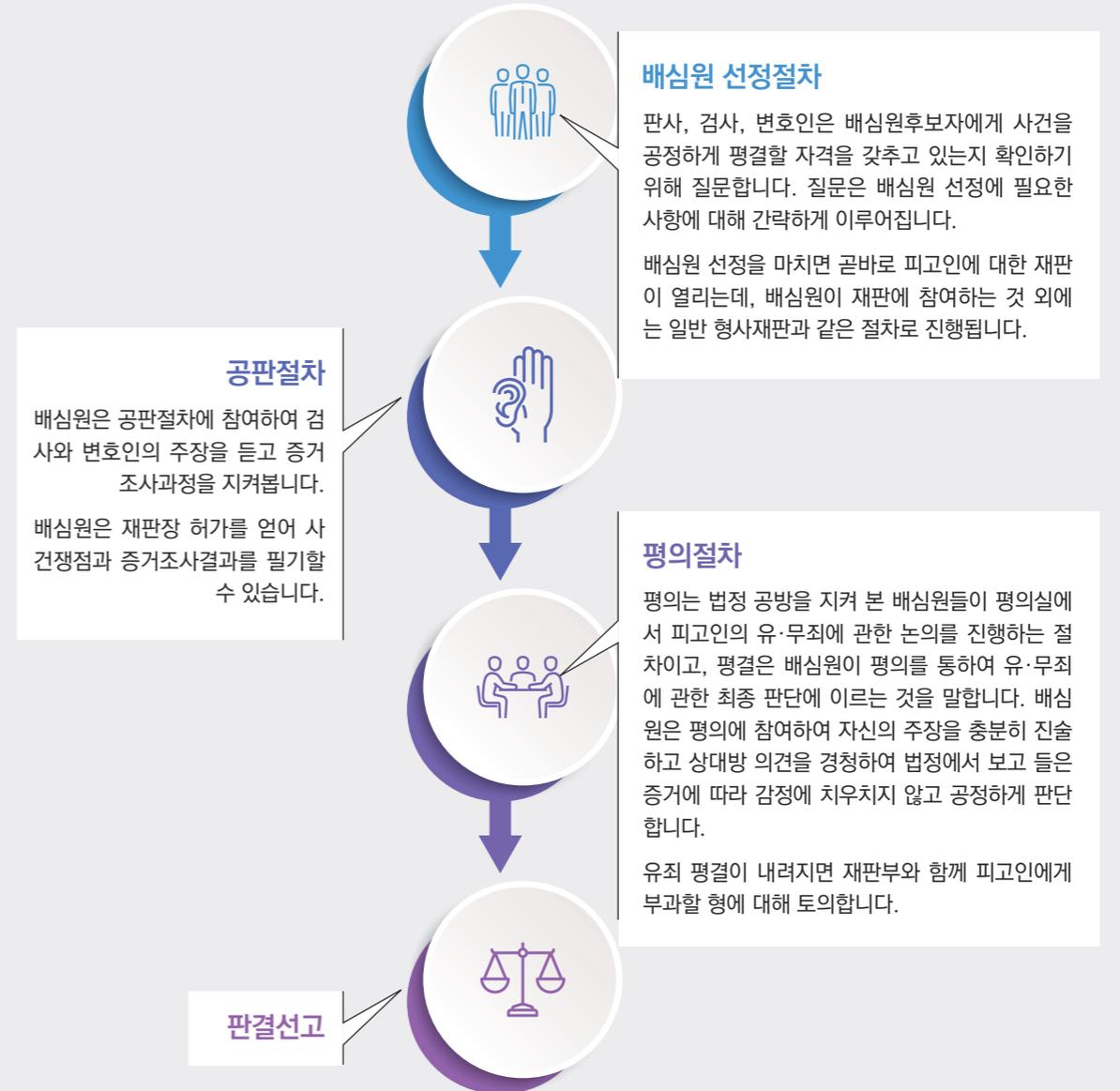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제도적 취지 외에 부수적으로 계도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에게 법을 배울 기회가 됩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합의부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단독 사건의 경우 오히려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배심원으로서 판단과 생활법률로서 배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적절하고 유익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구약식 벌금 사안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비용적인 면을 이야기하며 이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물론 비용만을 생각하면 비효율적이지만 일반 국민에게 더욱 밀접한 사안은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과 같은 벌금 사건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 초창기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노력해 왔는데 저 역시 작지만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큰 장점을 지닌 국민참여재판이 앞으로 더욱 보편화,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과정

-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며, 1~3일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운영합니다.



4.

국민참여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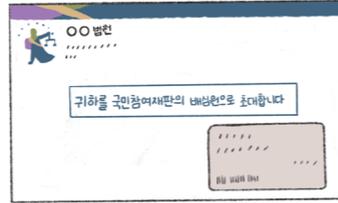
Q&A

국민참여재판 관련 Q&A는 수기공모전에 응시한 모든 분들의 사례 속에서 자주 언급됐던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배심원을 위한 Q&A

Q1. 배심원후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1. 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 예정자 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Q2.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나요?

A2.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Q3.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배심원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양육, 출장 등과 같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선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4. 법원에서 지정한 장소로 출석하더라도 선정기일이 끝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정한 배심원을 선발하기 위한 신중한 검토가 진행되기 때문이므로 양해와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Q5. 국민참여재판 참여로 인해 회사나 학교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A5.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에서는 배심원·예비 배심원 또는 배심원 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6. 법원에 출석하면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A6.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2만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6만원의 일당을 지급받습니다.



※ 배심원 선정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주의 안내
법원에서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전화, ARS 등으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또한 전화로 과태료 부과 안내를 하고 계좌로 납부하라는 안내도 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을 위한 Q&A

Q1.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1.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배심원들 앞에서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인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여 그 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Q2.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에 희망의사를 적어 법원에 제출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형편상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A3.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2명의 국선 변호인으로부터 충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국민참여재판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4. 국민참여재판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여 1~3일의 비교적 단기간에 끝나고 있습니다.

Q5.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A5.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배심원이 법정 공방을 지켜보고 토론을 거쳐 내린 평결과 양형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법률용어

| **공소사실** |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

| **공소제기** |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 **공판** |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소송이 종결된 때까지의 절차

| **공판중심주의** | 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

| **구두변론주의** | 구술주의(당사자 및 법원이 하는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의 소송행위를 구술, 즉 말로써 하여야 한다는 주의)와 변론주의(당사자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책임지는 주의)를 합한 것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구술에 의한 공격방어를 바탕으로 심판하는 것

| **누범**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

| **모두진술** |

- **검사의 모두진술** : 검사가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는 것.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피고인의 모두진술** :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익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는 것

| **무이유부기피신청**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도록 신청하는 것

| **이유부기피신청**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배심원후보자의 불공평한 판단 우려 등 특정한 이유에 기초하여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도록 신청하는 것

| **미결수용자** |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 **사전변호인** | 국선변호인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선임권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변호인

| **선정기일 통지** | 법원이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주소, 선정기일의 일시, 장소 등이 기재된 선정기일 통지서를 송달하는 것

| **평의** | 유·무죄에 관한 판단에 이르기 위하여 진행되는 협의

| **평결** | 당해 사건의 유·무죄에 관한 배심원의 최종 판단

| **피고인신문** |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그 정상(情狀, 구체적 범죄에서 구체적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정)에 관한 사항을 신문(말로 물어 조사)하는 것

| **합의부** |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 **현출** | 겉으로 드러남



발 행 처 | 법원행정처
인 쇄 일 | 2019년 7월 31일
발 행 일 | 2019년 8월 1일
디 자 인 | 주식회사 애드홀릭
인 쇄 | 주식회사 애드홀릭
편 집 | 이선민
일 러 스텍 | 조송희